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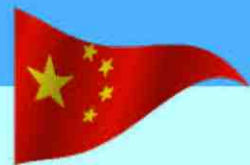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2018. 12



CHINA

중국 편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중국 편 -

2018. 12

연구총괄 정재현 부연구위원

연구자 김다량 관세사
박지우 전문연구원

목차

제1편 개관	1
I. 일반 개황	1
II. 경제 개황	3
1. 주요 경제 지표	3
2. 對세계 수출입 동향	5
3. 외국인 투자 동향	9
III.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14
1. 한-중 수출입 동향	14
2. 한-중 FTA	16
가. 개요	16
나. 한-중 FTA 활용 추이	18
IV.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21
제2편 통관제도	27
I. 통관행정 개요	27
1. 통관 관련 법령	27
2. 통관 조직	29
가. 개요	29
나. 부서별 업무	32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38
1. 관세의 신고와 납부	38
가. 관세의 신고와 납부 방법	38
나. 통관일체화 정책에 따른 변경사항	40
2. 수입물품에 추가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41
3. 관세 및 기타 세금 징수 규모	44
III. 관세평가제도	46
1. 개요	46
2. 관세평가방법	46
가. 일반적인 관세평가방법	46
나. 개정된 관세평가방법	51
IV. 관세율 및 품목분류제도	53
1. 관세율제도	53
가. 관세율의 종류 및 적용 범위	53
나. 관세율 분포	54
다. 협정세율 구조	59
2. 품목분류제도	60
가. 개요	60
나. 품목분류 사전판정제도	62
V. 감면 및 환급제도	63
1. 감면제도	63
2. 환급제도	67
VI 원산지제도	71
1.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판정기준	71
가. 원산지규정	71
나. 원산지 판정기준	74

2. 원산지표기	77
3. 한-중 FTA 협정상 원산지규정	80
4.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유의사항	85
 VII. 보세제도	87
1. 보세화물	87
2. 보세구역	88
 VIII. 수입규제제도	97
1. 중국의 수입규제제도	97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99
나.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101
다. 국가안보관련 제재	103
라. 수입금지 및 제한	103
마. 무역기술장벽(TBT)과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107
바. 인증	110
2.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123
 IX. 행정구제제도	128
1. 개관	128
2. 행정복의	129
3. 행정재심	132
4. 행정소송	134
5. 행정배상제도	135
 X. 벌칙	136
1. 관세형벌 관련 규정	136
2. 관세형벌 종류 및 제재조치	137
가. 밀수출입행위 및 관련 벌칙	138
나. 세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 관련 벌칙	140

다.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벌칙	144
라. 통관대행업체의 위법행위 및 관련 처벌	144
XI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147
1. 관련 법령	147
2. 인증 기준	149
3. 등급별 혜택	150
4. AEO MRA 현황	153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156
I . 수출통관절차	156
1. 개요	156
2. 수출관세	157
3. 수출규제	159
가. 수출금지품목	159
나. 수출제한	159
II. 수입통관절차	162
1. 전국통관일체화에 따른 수입통관절차 변화	162
가. 통관 전	164
나. 통관 후	168
참고문헌	171
부록 I . 중국 관세율 조회 방법	175
II. 중국 환급 신청서 양식(1)	178
III. 중국 환급 신청서 양식(2)	179
IV. 주요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화물목록	180
V. 중화인민공화국해관 기업신용관리방법	190

표 목차

제1편

〈표 1-II-1〉 중국 주요 경제 지표	3
〈표 1-II-2〉 중국 부문별 실질 GDP 지표	4
〈표 1-II-3〉 최근 5년간 중국의 對세계 수출입 추이	6
〈표 1-II-4〉 2016~2017년 중국의 수출입 상위 10개국 교역량	7
〈표 1-II-5〉 최근 5년 중국의 FDI 유입 및 유출금액	10
〈표 1-II-6〉 최근 5년 중국의 對한국 FDI 투자금액	11
〈표 1-II-7〉 중국의 FDI 투자부문 규제 내용	13
〈표 1-III-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입 추이	15
〈표 1-III-2〉 2017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입 품목	15
〈표 1-III-3〉 한-중 FTA 협정문 구성	17
〈표 1-III-4〉 2016년 한-중 FTA 수출 활용률	19
〈표 1-IV-1〉 2017년 중국의 FTA 추진현황	22
〈표 1-IV-2〉 2016년 중국 FTA 체결국의 관세 축소 범위	24

제2편

〈표 2-I-1〉 중국의 통관절차와 관련한 주요 법령	28
〈표 2-I-2〉 중국의 세관공무원 직급 표식	30
〈표 2-II-1〉 2017년 중국의 소비세 대상품목	42
〈표 2-III-1〉 중국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평가방법	47
〈표 2-III-2〉 중국의 과세가격에서 운송비와 보험료 계산방법	48

〈표 2-III-3〉 중국 과세가격의 가산/공제요소	49
〈표 2-III-4〉 특수 수입물품 과세가격 평가방법	50
〈표 2-III-5〉 개정된 보세물품의 관세평가방법	52
〈표 2-IV-1〉 중국의 수입관세율 종류와 적용 범위	54
〈표 2-IV-2〉 2013~2017년 중국의 관세율 구조	55
〈표 2-IV-3〉 2017년 중국의 품목별 관세율 구조	57
〈표 2-IV-4〉 2017년 중국의 협정세율 구조	59
〈표 2-VII-1〉 중국의 보세구역 유형	90
〈표 2-VII-2〉 중국의 보세지역 비교	94
〈표 2-VII-3〉 중국의 보세제도 개혁 사례(2015년)	95
〈표 2-VIII-1〉 중국의 수입규제 관련 법령	98
〈표 2-VIII-2〉 중국의 수입금지 및 제한 물품 목록	104
〈표 2-VIII-3〉 보건식품 CFDA 지정 검사기관(58개소)	112
〈표 2-VIII-4〉 중국의 CCC 인증 대상제품	121
〈표 2-VIII-5〉 중국의 반덤핑관세·세이프가드 조치 현황(2018년 8월 기준)	125
〈표 2-VIII-6〉 자의적 품목분류로 인한 고관세부과(HDMI 모니터 사례)	127

제3편

〈표 3-I-1〉 2017년 중국의 HS 류(Chapter)별 수출관세율	158
〈표 3-I-2〉 2017년 중국의 수출할당과 승인대상물품 목록	160
〈표 3-II-1〉 현행 수입통관 절차(2018년)	163
〈표 3-II-2〉 조세징수센터별 해당 심사 품목	169

그림 목차

제1편

[그림 1-II-1] 2016~2017년 중국의 상위 수출국 특징	8
[그림 1-II-2] 2016~2017년 중국의 상위 수입국 특징	9
[그림 1-II-3] 2015~2016년 중국의 국가별 FDI 유출금액	11

제2편

[그림 2-II-1] 1982~2016년 중국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수 규모	45
[그림 2-IV-1] 2013~2017년 중국의 양허세율 분포	56
[그림 2-VI-1] 중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76
[그림 2-VIII-1] TBT 통보문 공시 예시	109
[그림 2-IX-1] 중국의 해관구제 순서	129
[그림 2-IX-2] 행정복의 진행 과정	130
[그림 2-IX-3] 해관의 복의결정 과정	132
[그림 2-IX-4] 행정소송 절차	135

제1편 개관

I. 일반 개황¹⁾

- 정식 국가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으로 아시아 대륙 동부와 태평양 서안에 위치함
- 총국토면적은 960만km²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약44배에 달함
 - 14개국과 육지를 접경하며 6개국과 해상을 인접함
- 과거 지질환경과 지각 구조운동이 다양하게 나타난 결과로 자연경관과 광물자원이 매우 다양함
 - 지형학적으로 크게 저지대의 동부와 8,000m급 고산지의 서부로 나뉘며 그 사이 사이에 여러 개의 산맥과 평야로 이루어져 있음
- 기후는 최남단의 열대에서 서부의 건조, 동북삼성의 냉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상 다양한 기후가 나타남

- 총인구는 2017년 7월 기준 약 13억 9,008만명으로 세계 1위임

1)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h.html> 참고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18. 9. 11.

2 제1편 개관

- 중국의 민족은 한족(91.6%)과 55개의 소수민족(8%)으로 구성됨
- 행정구역은 4개의 직할시(直轄市), 23개의 성(省), 5개의 자치구(自治區), 2개의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로 구분되며 수도는 베이징(Beijing; 북경)임
 - 4개의 직할시는 베이징, 톈진, 충칭 및 상하이임
 - 23개의 성은 허베이, 산시, 랴오닝, 지린, 산둥, 윈난, 간쑤, 후난 및 대만 등이 있음
 - 5개의 자치구는 네이멍구, 광시장족, 닝샤회족, 신장위구르, 시장티베트임
 - 2개의 특별행정구는 홍콩과 마카오임
- 공용어는 표준어와 지방어(方言)를 모두 포괄하는 한어(漢語; Chinese)이며 표준어는 보통화(普通話; Mandarin)임
- 종교는 불교(18.2%), 기독교(5.1%), 이슬람교(1.8%), 민간종교(21.9%), 힌두교(0.1%), 유대교(0.1%), 기타(0.7%) 및 무교(52.2%) 등으로 조사됨
- 화폐단위는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이 발행하는 위안(元; Yuan)이며 인민폐(人民幣; RENMINBI, RMB)라고도 함
- 정부체제는 노동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²⁾로 정부 형태는 실질적 공산당 일당통치이고 단원제의 의회 형태를 지님
 - 최고 입법권을 가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중심으로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 최고감찰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인 사법재판기관, 최고인민검찰인 사법검찰기관,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로 구성됨
 - 실권자인 국가원수는 2013년 3월 취임한 시진핑(習近平)으로 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공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고 있음

2) 1993년 「헌법」 제1조 규정

II. 경제 개황

1. 주요 경제 지표

- IMF에 따르면 2018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둔화됨
 - 2017년 중국 GDP 성장률은 6.8%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반등세함
 - IMF는 2017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15년 10월 6.0%에서 2016년 4월 6.2%, 2017년 4월 6.6%로 상향 조정함
 - 1인당 명목 GDP는 2018년 1만 87달러로 만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함
 - 순수출은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며 부진했으나, 2017년 들어 회복세를 보임

〈표 1-Ⅱ-1〉 중국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¹⁾
명목 GDP(십억위안화)	59,696	64,718	69,911	74,563	81,204	88,282
실질 GDP(십억위안화)	60,073	64,457	68,905	73,514	..	..
1인당 명목 GDP(달러)	..	7,485	8,026	8,126	8,836	10,087
실질 GDP 증가율(%)	7.8	7.3	6.9	6.7	6.9	6.6
외환보유고(십억달러)	3,880	3,899	3,406	3,098	3,236	..

4 제1편 개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¹⁾
인구(백만명)	1,360.72	1,367.82	1,374.62	1,382.71	1,390.08	1,396.982
실업률(%)	5.0	5.1	5.1	5.0	5.1	5.0
고용율(%)	0.4	0.4	0.3	0.2	0.0	0.1
소비자물가 증감률(%)	2.6	2.0	1.4	2.0	1.6	2.3
실질환율(RMB/US)(%)	5.3	3.1	9.5	-6.5	-2.5	..

주: 1) 추정치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China*, WT/TPR/S/375, 2018. 6. 6, p.15;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8(검색일자: 2018. 9. 11)

- 2016년 들어 소비증가율은 실질 GDP 증가율의 약 ⅔를 차지했는데 특히 서비스 부문이 GDP의 50%를 초과함에 따라 소비증가에 크게 기여함
- 실질 GDP를 부문별로 농수산업, 제조업 등 산업, 건설업 및 서비스 등으로 구분 시, 2016년 기준 각각 8.9%, 33.3%, 6.7%, 51.1%임
 - OECD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 중 특히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광 서비스 수입 등이 강세를 보임³⁾
 - 도소매 거래와 금융 중개 서비스의 성장은 2013~2017년 동안 지속적 호황세를 누림

〈표 1-Ⅱ-2〉 중국 부문별 실질 GDP 지표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질 GDP 증가율	7.8	7.3	6.9	6.7	6.9
소비증가율	3.6	3.6	4.1	4.3	..
투자증가율	4.3	3.4	2.9	2.8	..
순수출증가율	-0.1	0.3	-0.1	-0.4	..
부문별 실질 GDP 차지 비중					
1차산업(농수산업)	9.6	9.3	9.1	8.9	8.2

3) OECD, *Economic Survey of China*, 2017.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차산업(제조업 등)	37.4	36.3	34.3	33.3	33.9
건설업	6.9	7.0	6.8	6.7	6.7
3차산업(서비스)	46.2	47.4	49.8	51.1	51.2
도소매거래업	9.5	9.7	9.6	9.6	9.4
운수·창고업	4.4	4.4	4.4	4.4	4.4
요식·숙박업	1.7	1.7	1.8	1.8	1.8
금융중개업	6.9	7.2	8.4	8.2	7.9
부동산중개업	6.0	5.9	6.1	6.5	6.5
기타	17.7	18.4	19.5	20.6	21.1

자료: WTO, 2018. 6, pp. 15~17.

□ 2018년 4월 IMF에서는 중국을 다음과 같이 평가함⁴⁾

- 중국은 세계성장의 1/3을 차지하는 만큼 지속적 고성장이 이어질 것임
- 중국 정부는 고성장에 머물지 않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등 양질의 성장에 중점을 둠
- 중국 시장의 막대한 자금규모와 초기 디지털화의 중국 정부 규제 및 감독은 중국을 전자상거래 글로벌 리더로 만들

2. 對세계 수출입 동향

□ 2017년 중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2만 2,792억달러, 수입은 1만 7,900억달러로 4,892억달러 對세계 무역흑자를 기록

- 중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2014년 2만 3,432억달러로 2013~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2만 2,108억달러

4) IMF, <http://www.imf.org/en/News/Articles/2018/07/25/na072618-chinas-economic-outlook-in-six-charts>(검색일자: 2018. 9. 12)

6 제1편 개관

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중국의 대(對)세계 수입은 2014년 1만 9,631억달러로 2013~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7.5% 증가한 1만 7,900억달러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중국의 대(對)세계 교역규모는 2014년 4만 3,063억달러로 2013~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4만 692억달러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중국의 대(對)세계 무역수지는 2015년 6,788억달러로 2013~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부터 흑자폭이 점점 감소 중임

〈표 1-Ⅱ-3〉 최근 5년간 중국의 對세계 수출입 추이

(단위: 억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22,108	7.8	23,432	6.0	22,804	-2.7	21,349	-6.4	22,792	6.8
수입	19,415	6.8	19,631	1.1	16,016	-18.4	15,229	-4.9	17,900	17.5
교역규모	41,523	7.4	43,063	3.7	38,820	-9.9	36,578	-5.8	40,692	11.2
무역수지	2,693	15.7	3,801	41.1	6,788	78.6	6,120	-9.8	4,892	-20.1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검색일자: 2018. 9. 13)

- 2017년 기준 중국의 최대수출국은 3,886억달러 규모의 미국이며, 최대수입국은 1,588억달러 규모의 한국임
 - 최대수출국인 미국에 이어 홍콩, 일본, 한국, 베트남, 독일, 인도, 네덜란드, 영국 및 싱가포르 순임
 - 최대수입국인 한국에 이어 일본, 대만, 미국, 독일,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태국 및 러시아 순임

〈표 1-Ⅱ-4〉 2016~2017년 중국의 수출입 상위 10개국 교역량

(단위: 억달러)

순위	국가명	수출 (전년 대비 증감률, %)		순위	국가명	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 %)	
		2016	2017			2016	2017
1	미국	3,886 (-5.2)	4,318 (11.1)	1	한국	1,588 (-8.9)	1,773 (11.7)
2	홍콩	2,924 (-12.1)	2,809 (-3.9)	2	일본	1,452 (1.8)	1,650 (13.6)
3	일본	1,295 (-4.7)	1,371 (11.1)	3	대만	1,398 (-3.2)	1,552 (11.0)
4	한국	957 (-5.6)	1,029 (7.5)	4	미국	1,324 (-8.0)	1,497 (13.0)
5	베트남	609 (-8.2)	716 (17.6)	5	독일	861 (-1.6)	966 (12.2)
6	독일	660 (-4.6)	713 (8.1)	6	호주	635 (-2.5)	861 (35.5)
7	인도	594 (2.0)	681 (14.6)	7	브라질	454 (2.3)	583 (28.4)
8	네덜란드	580 (-2.7)	675 (16.4)	8	말레이시아	490 (-7.9)	543 (10.8)
9	영국	566 (-5.1)	572 (1.1)	9	태국	387 (3.9)	418 (8.2)
10	싱가포르	474 (-10.8)	461 (-2.7)	10	러시아	318 (-4.0)	408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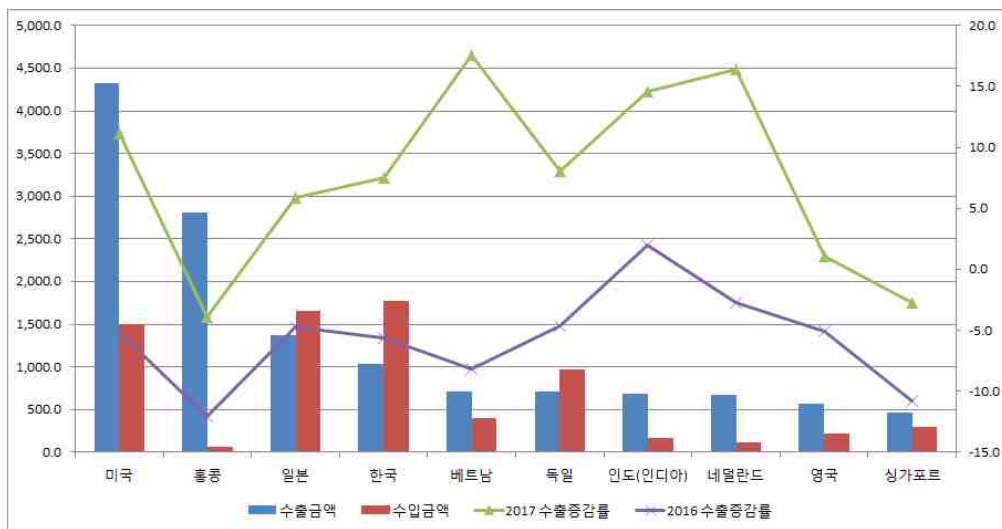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CtrlImpExpList.screen>(검색일자: 2018. 9. 13)

- 2017년 중국의 10대 상위 수출국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 홍콩 및 일본으로의 수출 규모가 10대 상위 수출국 전체 규모의 ⅔ 이상을 차지할 만큼 세 국가의 비중이 큼
- 미국으로 수출이 약 31%, 홍콩이 약 23%, 그리고 일본이 약 10%임
- 2016~2017년 중국의 10대 상위 수출국의 수출증감률을 살펴보면 2016년보다 2017년도에 눈에 띄게 수출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베트남과 네덜란드로의 수출규모가 확대됨

8 제1편 개관

- 2016년 베트남 수출은 전년 대비 -8.2%, 네덜란드는 -2.7%임에 반해, 2017년 베트남 수출은 전년 대비 17.6%, 네덜란드는 16.4%으로 크게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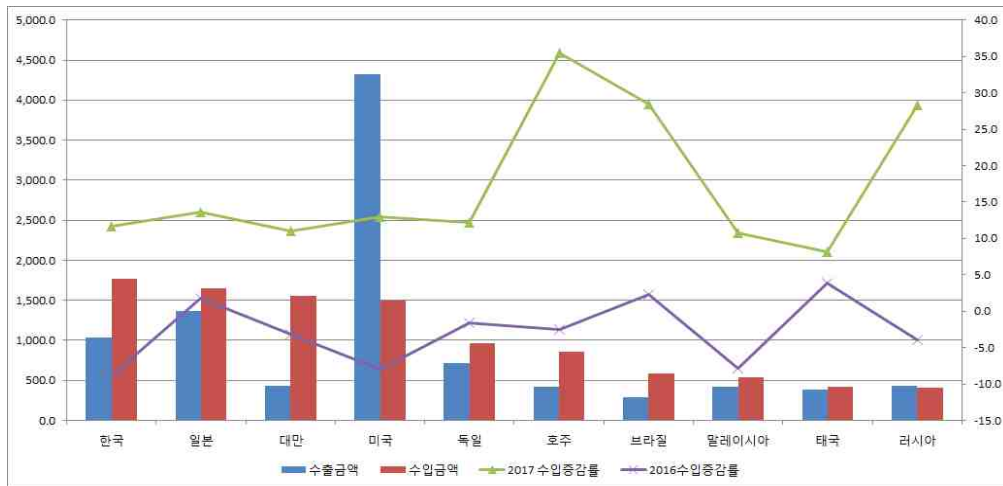
[그림 1-Ⅱ-1] 2016~2017년 중국의 상위 수출국 특징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CtrImpExpList.screen>(검색일자: 2018. 9. 13)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17년 중국의 10대 상위 수출국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부 국가의 수출로 편향된 것과 달리 각 10대 상위 수입국으로부터 적당한 규모의 수입이 골고루 분포됨
- 2016~2017년 중국의 10대 상위 수입국의 수입증감률을 살펴보면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수입이 확대되었고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위권인 호주와 하위권인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2016년보다 2017년 눈에 띄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
 - 2016년 호주 수입은 전년 대비 -2.5% , 러시아는 -4.0%임에 반해, 2017년 호주 수입은 전년 대비 35.5%, 러시아는 28.3%로 크게 상승함

[그림 1-Ⅱ-2] 2016~2017년 중국의 상위 수입국 특징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CtrImpExpList.screen>(검색일자: 2018. 9. 13)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외국인 투자 동향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는 1980년대 경제특구를 활용한 실험적 단계를 거쳐,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큰 폭으로 증가함⁵⁾
- FDI 유입액은 1990년 35억달러에서 2000년 407억달러, 2010년 1,147억달러 및 2016년 1,337억 달러로 증가함
-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대(對)중 FDI는 최근 5년 동안 증가세가 둔화됨⁶⁾

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투자 현황과 신창타이 시대 우리의 대응 방안』, 2017. 8, p. 2.

6) 상동

10 제1편 개관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2013년 2.3%에서 2014년 3.7%, 2015년 5.5%, 2016년 -8.1%, 2017년 1.9% 증가율을 기록

□ 반면 중국의 대(對)전세계 FDI 투자는 2013~2016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전년 대비 -36.5%를 기록함⁷⁾

○ 중국의 FDI투자는 2013년 22.8%에서 2014년 14.1%, 2015년 18.3%, 2016년 34.6% 및 2017년 -36.5% 증가율을 기록

〈표 1-Ⅱ-5〉 최근 5년 중국의 FDI 유입 및 유출금액

(단위: 억달러, %)

연도	유입	증가율	유출	증가율
2013	1,239	2.3	1,078	22.8
2014	1,285	3.7	1,231	14.1
2015	1,356	5.5	1,457	18.3
2016	1,337	-8.1	1,962	34.6
2017	1,363	1.9	1,246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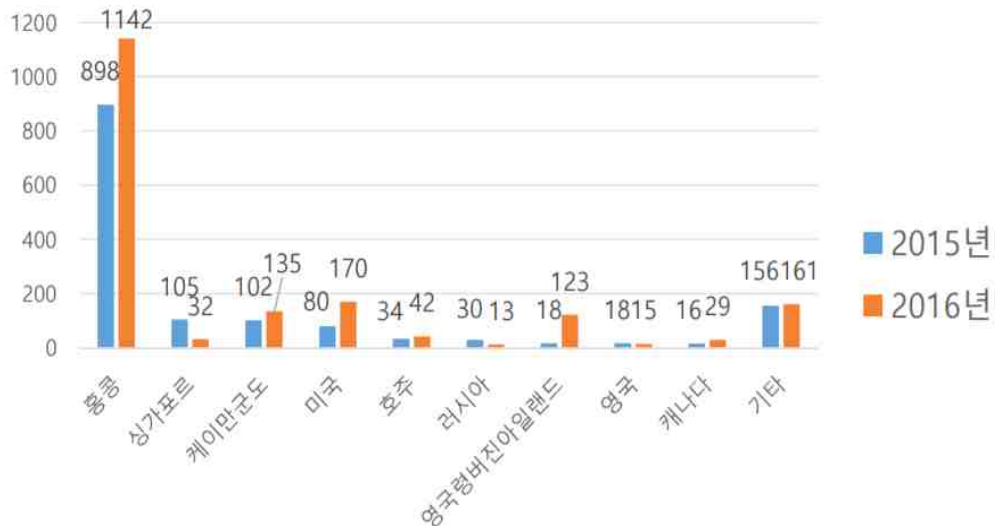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2018. 6, p. 187.

□ 중국은 160개 국가(지역)의 5,410개 해외기업에 투자하였으며 주요 투자 국가는 홍콩으로 독보적 1위임

○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 케이만군도, 미국, 호주, 러시아,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및 기타 순으로 나타남

[그림 1-Ⅱ-3] 2015~2016년 중국의 국가별 FDI 유출금액

(단위: 억\$)



자료: 최강록, 『2018 중국 투자유치 전략』, KOTRA 청다오무역관, 2017. 12, p. 9.

□ 중국의 對한국에 대한 FDI 투자는 전체 FDI 규모 중 약 1% 내외 남짓이며 주요 투자분야는 비즈니스 서비스업, 문화·오락, 화공, 도소매 유통 등 서비스 업종임

〈표 1-Ⅱ-6〉 최근 5년 중국의 對한국 FDI 투자금액

(단위: 억달러,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중국 對전세계FDI	1078.4	1231.2	1456.7	1961.5	780.3			
중국 對한국FDI	4.8	11.9	19.8	20.5	6			
비중	0.4%	1.0%	1.4%	1.0%	0.8%			
부문별 FDI 금액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서비스업			17.4	88	10.2	50	4	66
제조업			2.4	12	8.7	43	1.9	33

부문별 FDI 금액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SOC	0.0	0	1.5	7	0.1	1
합계	19.8	100	20.4	100	6	100

자료: 최강록, 2017. 12, p. 13.

- 중국기업의 FDI 투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및 외환관리국 등 4개 주관부서의 심사·감독을 거쳐야 함⁸⁾
 - 주관부서에서는 투자기업의 경영현황, 기업규모, 해외투자분야의 투자 적합성 및 업무연관성,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주관부서 심사 통과 후에도 실제 송금 시 강력한 규제를 적용 받음
 - US\$500만 이하의 투자금 해외송금은 관련 은행에서 외환관리국에 사후보고
 - US\$500만 이상의 투자금 해외송금은 외환관리국에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외환관리국의 검토결과에 따라 송금 가능여부 판단

- 2016년 12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아래 4종의 중국기업에 대해 해외투자 심사강화 방침을 발표함⁹⁾
 - 설립기간이 짧고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없는 기업의 해외투자
 - 해외투자규모가 모회사의 등록자본금보다 현저히 크고, 모회사의 기업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경영상태가 해외투자의 규모를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외투자업종이 중국 내 모기업의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투자자본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개인재산 해외불법이전 또는 불법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 2017년 1월 외환관리국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진실성 및 규범성 심사 강화 정책을 발표함¹⁰⁾

8) 최강록, 『2018 중국 투자유치 전략』, KOTRA 청다오무역관, 2017. 12, p. 21.

9) 최강록, 2017. 12, p. 22.

- 중국기업이 소재지 은행에서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송금 시, 자금 출처 및 자금 용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자료 제출 필요
 - 은행 및 기타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기업의 경영현황, 기업규모, 투자 진실성, 해외투자분야의 투자 적합성 및 업무연관성,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함
- 2017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외투자의 방향성 진일보 제시 및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이라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규정을 제정함¹¹⁾
- 해외투자분야를 장려, 제한, 금지 등 3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자 함

〈표 1-Ⅱ-7〉 중국의 FDI 투자부문 규제 내용

구분	분야
장려	- 일대일로 건설과 인프라시설 구축 관련 투자 - 산업 고도화에 유리한 제조 및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 하이테크 및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 - 에너지 자원 개발, 농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	- 해외 부동산, 호텔, 극장, 엔터테인먼트, 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투자 - 구체적 투자 현안이 없는 투자펀드 및 투자 플랫폼 설립을 위한 투자 - 투자대상국의 기술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낙후된 생산설비를 사용하는 투자 - 투자대상국의 환경·에너지·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금지	-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군사핵심기술 및 제품의 수출과 관련 있는 투자 -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기술, 공예, 제품과 관련된 투자 - 도박업, 음란퇴폐업 등에 대한 투자 - 중국이 체결, 참여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금지 영역에 대한 투자 - 국가 안전 및 이익을 위협하거나 또는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투자

자료: 최강록, 2017. 12, p. 23.

10) 상동

11) 최강록, 2017. 12, p. 23.

Ⅲ.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1. 한-중 수출입 동향

- 2017년 기준 중국은 수출입 모두 우리나라 제1위 교역대상국임
- 2017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은 1,421억달러, 수입은 979억달러로 양국 간 2,400억달러 교역규모에서 442억달러 對중국 무역흑자를 기록
 - 수출은 2013년 1,459억 달러로 2013~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전년 대비 -9.3% 감소한 1,244억달러를 기록
 - 수입은 2013~2015년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6년 전년 대비 -3.6% 감소한 870억달러를 기록하고 이후 2017년 979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
 - 교역규모는 2013~2016년 기간 동안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3.5% 상승한 2,400억달러를 기록
 - 對중국 무역수지는 2013년 628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4~2016년 동안 적자가 소폭 증가하다가 2017년 전년 대비 18.2% 증가한 442억달러를 기록

〈표 1-III-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억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459	8.6	1,453	-0.4	1,371	-5.6	1,244	-9.3	1,421	14.2
수입	831	2.8	901	8.5	903	0.2	870	-3.6	979	12.5
교역규모	2,290	6.5	2,354	2.8	2,274	-3.4	2,114	-7.0	2,400	13.5
무역수지	628	17.4	552	-12.1	468	-15.2	374	-20.1	442	18.2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검색일자: 2018. 9. 13)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중국 상위 수출 품목은 크게 HS 제84·85·90류 기계류, 전자기기 및 광학기기, 제29류 유기화학품, 그리고 제27류 석유와 제87류 승용차 부분품 등으로 이루어짐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중국 상위 수입 품목은 수출과 유사하나 HS 제72류 철강압연제품이 추가로 포함됨

〈표 1-III-2〉 2017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전자집적회로	35,188	67.3	전자집적회로	10,211	21.9
2	액정디바이스, 레이저기기	9,753	-21.3	전화기	7,060	6.5
3	환식탄화수소	8,204	27.7	자동차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	5,367	46.6
4	석유와역청유	5,271	37.9	절연전선·케이블 등	2,286	3.1
5	송신기기 등 전용부분품	3,764	110.7	반도체디바이스, 광광성반도체디바이스 등	1,975	11.3

순위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6	일차전지와축전지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등	3,351	42,860.4	액정디바이스, 레이저기기	1,935	28.8
7	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와 부분품 등	3,116	30.4	기타 사무용기기 등 전용 부분품	1,265	-9.7
8	승용차 전용 부분품	2,751	-42.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이상으로 도금 등에 한정)	1,230	28.9
9	반도체디바이스,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 등	2,486	17.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이상으로 서열간압연에 한정)	1,133	-8.5
10	비환식탄화수소	2,375	25.6	승용차 전용 부분품	1,109	4.1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lItemImpExpList.screen>(검색일자: 2018. 9. 13)

2. 한-중 FTA

가. 개요¹²⁾

□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처음 양국 간 협상이 시작돼 2015년 6월 1일에 타결됐고 2015년 12월 20일 정식으로 발효됨

□ 한-중 FTA 협정문은 서문과 총 22개 챕터(부속서를 포함)로 구성됨

12)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상세 설명자료』, 2014. 11, pp. 4~12.

- 한-중 FTA와 비교하여 한-미 FTA는 24개 챕터, 한-EU FTA는 15개 챕터로 구성됨

〈표 1-III-3〉 한-중 FTA 협정문 구성

상품관련	서비스와 투자	규범과 협력	총칙
① 상품	⑦ 서비스	⑫ 지재권	⑮ 최초규정 및 정의
② 원산지(PSR 포함)	⑧ 금융 ¹⁾	⑬ 경쟁	⑯ 예외
③ 통관 및 무역원활화	⑨ 통신 ¹⁾	⑭ 투명성	⑳ 분쟁 해결
④ 무역구제	⑩ 자연인의 이동	⑮ 환경	㉑ 제도
⑤ SPS(위생 및 검역)	⑪ 투자	⑯ 전자상거래 ¹⁾	㉒ 최종조항
⑥ TBT(무역기술장벽)		⑰ 경제협력	

주: 1) 중국의 FTA 중 최초로 별도 챕터로 채택(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상세 설명자료』, 2014. 11, p. 4.

- 상품분야의 경우 양국은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 농수산물에 대해서 대중 수입액의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를 최대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품목수 71%, 수입액 66%(1,105억달러)를 10년 내 철폐함
- 한국은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기준 91%를 최대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품목수 79%, 수입액 77%(623억달러)를 10년 내 철폐함
- 서비스와 투자분야의 경우 포지티브 자유화방식을 채택하여 협정문과 양허내용을 작성하였고 투자보호요소를 포함하였으며, 향후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통해 추가 양허와 투자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임
- 중국 FTA 최초 금융과 통신 부문을 별도 챕터로 합의하였음
- 금융 챕터의 주요 내용은 금융 투명성제고, 금융 서비스 위원회 설치를 통한

별도 협의 채널 확보 등이 있음

- 통신 챕터의 주요 내용은 투명한 경쟁보장 장치 확보,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 완화를 통해 양국 간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의 조성 등이 있음

□ 규범과 협력 분야의 경우 22개 개별 챕터로 중국의 FTA 중 가장 포괄적인 규범과 협력 내용을 포함했으며 각종 비관세장벽(NTB) 해소에 주력함

- 중국 FTA 최초 전자상거래 부문을 별도 챕터로 합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유지를 명시적으로 합의, 전자인증 및 서명, 개인정보보호, 종이 없는 무역 등 실체적 요소들은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 등이 있음
 - 비록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발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향후 양국 간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 마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 2018년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양국 간 서비스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함

- 2017년 12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2018년 3월 22일 서울에서 1차 후속협상을 진행하여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협상구조 및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함
- 2018년 7월 13일 베이징에서 2차 후속협상을 진행하였고 본격적으로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함

나. 한-중 FTA 활용 추이¹³⁾

□ 코트라는 2016년 한-중 FTA 활용률을 분석한 결과 대(對)중 수입 시 FTA 활용

13) KOTRA 뉴스, 「중국의 FTA 체결 동향과 한-중 FTA 활용 시사점」, 2017. 4. 2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8201>(검색일자: 2018. 9. 13)

률은 58%에 달하나 대(對)중 수출 시 FTA 활용률은 34%에 불과하다고 밝힘

- 2016년 한국의 대(對)중 수출 시 광산물 산업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FTA 활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함
- 한-미 FTA의 경우 발효 2년 차인 2013년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이 76%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한-중 FTA 활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치임
 -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것을 감안하여 1년차 통계를 보아도 FTA 활용률이 70%에 달해 한-중 FTA 활용률보다 높은 상태임

〈표 1-III-4〉 2016년 한-중 FTA 수출 활용률¹⁾

(단위: %)

구분	산업별(MT11)	수입	수출
	합계	58.1	33.9
1	화학공업제품	73.8	49.1
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59.9	26.2
3	철강금속제품	64.1	31.4
4	전자전기제품	50.2	15.0
5	잡제품	40.8	9.0
6	섬유류	60.0	21.6
7	생활용품	51.9	17.4
8	농림수산물	54.4	34.6
9	기계류	49.9	27.9
10	광산물	40.8	53.2

주: 1) 2016년 누적

자료: KOTRA 뉴스, 「중국의 FTA 체결 동향과 한-중 FTA 활용 시사점」, 2017. 4. 21.

- 코트라에 따르면 한-중 FTA 수출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FTA 혜택을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회피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적은 관세 혜택을 받을 것이므로

20 제1편 개관

로, 높은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한-중 FTA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보다 기존의 수출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

- 중소기업 주요 품목 중 소비재, 잡화, 생활용품 등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음

○ 또한 중국의 통관 및 원산지 검증절차가 까다로워 중국 현지기업의 과다한 서류준비와 통관시간 지연은 FTA 수출 활용의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됨

□ 코트라는 한-중 FTA 수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기업의 FTA 협정 이해를 위한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한국은 차이나데스크(www.chinadesk.or.kr) 등 한-중 FTA 활용지원기구가 설치돼 있으나, 중국은 전문 자문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IV.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은 2001년 처음으로 아세안(ASEAN)과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7년 현재 24개 국가(또는 지역)와 16개 FTA를 체결하여 시행 중임¹⁴⁾
 - 중국해관총서(GACC)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과 FTA 체결국 간의 교역량은 중국의 대외 무역 총액의 38.8%에 달함
 - 대만,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다면 25.4%에 달함
- 2017년 중국은 조지아, 몰디브와 FTA를 체결함¹⁵⁾
 - 중국-조지아 FTA 협상은 2015년 12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18년 1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됨
 - 중국-조지아 FTA는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원산지 원칙, 세관절차 및 무역편리화, SPS, TBT, 무역구제, 지재산권, 협력분야 등 17개 챕터로 구성됨
 - 발효 후 상품 무역에서 조지아는 중국 수출의 96.5%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중국은 조지아 수출의 90.9%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하며 3% 상품은 순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14) WTO, 2018. 6, p. 34.

15) KOTRA 뉴스, 「중국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_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53(검색일자: 2018. 9. 13)

- 중국-조지아 FTA는 반덤핑 조사 시 제3국 대체가격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양국의 중점 협력분야를 명확히 함
- 중국-몰디브 FTA 협상은 2015년 2월에 협상이 개시된 후로 5번의 협상과 장관급 협상을 거쳤고, 2017년 12월 체결함
- 몰디브 관광객 중 중국이 1/3을 차지하는 만큼 양국은 서비스시장 등 중점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함
- 몰디브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중 해상 실크로드 구축의 핵심 연선국가로서 중국은 몰디브를 발판으로 더 효과적으로 남아시아 및 인도양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표 1-Ⅳ-1〉 2017년 중국의 FTA 추진현황

진행단계	상대국(지역)	추진현황
발효 16건	홍콩	- 04.1월 발효 - 05~14.1월 제1~10차 보충협정 발효 - 15.11월 서비스자유화 협정 서명 - 16.6월 서비스자유화 협정 발효
	마카오	- 04.1월 발효 - 05~14.1월 제1~10차 보충협정 발효 - 15.11월 서비스자유화 협정 서명 - 16.6월 서비스자유화 협정 발효
	아세안(ASEAN)	- (상품) 04.11월 서명, 05.7월 발효 - (서비스) 07.1월 서명, 07.7월 발효 - (투자) 09.8월 서명, 10.1월 발효
	칠레	- (상품) 05.11월 서명, 06.10월 발효 - (서비스) 08. 4월 서명, 10.8월 발효
	파키스탄	- (상품·투자) 06.11월 서명, 07.7월 발효 - (서비스) 09.2월 서명, 09.10월 발효
	뉴질랜드	- 08.4월 서명, 08.10월 발효
	싱가포르	- 08.10월 서명, 09.1월 발효
	페루	- 09.4월 서명, 10.3월 발효
	코스타리카	- 10.4월 서명, 11.8월 발효

진행단계	상대국(지역)	추진현황
	대만	- 10.6월 ECFA 기본협정 서명, 10.9월 발효 - 12.8월 세관협력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 13.6월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 상품 협상 진행 중
	아이슬랜드	- 07.4월 협상 개시 - 13.4월 서명, 14.7월 발효
	스위스	- 11.1월 협상 개시 - 13.7월 서명, 14.7월 발효
	한국	- 12.5월 협상 개시, 15.12월 발효
	호주	- 15.6월 서명, 15.12월 발효
	조지아	- 16.10월 실질타결 - 17.05월 체결 - 18.01월 발효
	몰디브	- 17.9월 타결 - 17.12월 체결
협상 중	RCEP	- 12.11.20 협상 개시 선언 - 17.10월 제20차 협상
	GCC	- 05.4월 협상 개시, 14.1월 Action Plan 서명 - 16.12월 제9차 협상 (*경제 분야 및 교육, 문화 등에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향후 FTA 체결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한·중·일	- 12.11.20 협상 개시 선언, 17.4월 제12차 협상
	스리랑카	- 14.9월 협상 개시, 17.1월 제5차 협상
	노르웨이	- 08.9월 협상 개시, 17.8월 제9차 협상
	이스라엘	- 16.03월 제1차 협상 - 17.12월 제3차 협상
	싱가포르(내용상향)	- 15.11월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17.10월 제4차 협상
	뉴질랜드(내용상향)	- 17.4월 제1차 협상
추진 검토 중	칠레(내용상향)	- 17.8월 제3차 협상
	네팔, 모리셔스, 몰도바, 몽골, 캐나다, 콜롬비아, 파푸아뉴기니, 피지, 스위스(내용상향), 페루(내용상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cn/apply/1/>(검색일자: 2018. 9. 13)

- 2016년 기준 중국기업이 FTA 체결국 기업으로부터 물품 수입 시 면제 또는 경감되는 관세 규모는 약 411억위안 정도이며, <표 1-IV-2>에서 각 FTA 체결 국가별 관세 축소 범위를 정리함

<표 1-IV-2> 2016년 중국 FTA 체결국의 관세 축소 범위

(단위: 백만위안)

	FTA 협정	관세 면제 또는 경감규모
1	중국-아세안 FTA	256
2	경제협력기본협정 ¹⁾	50
3	중국-뉴질랜드 FTA	27
4	중국-호주 FTA	23
5	중국-칠레 FTA	17
6	중국-한국 FTA	8
7	중국-싱가포르 FTA	8
8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7
9	중국-홍콩 CEPA	5
10	중국-스위스 FTA	4
11	중국-파키스탄 FTA	2
12	중국-페루 FTA	2
13	중국-대만 FTA	1
14	중국-아이슬란드 FTA	0.2
15	중국-코스타리카 FTA	0.1
16	중국-마카오 CEPA	4.5
	합계	411

주: 1)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자료: WTO, 2018. 6, p. 35.

-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최근 중국의 FTA 체결 전략 특징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와 협상대상국과의 이익균형을 목표로 함¹⁶⁾

- 2000년대 초기 중국의 FTA 체결 전략은 협상대상국 확대라는 외연적 확장에 치중했고 주로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협상대상 분야도 그리 넓지 않았음
 - 2011년 이후 최근 중국은 FTA 협상대상국 확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FTA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범위와 규모를 확장함
- 또한 2000년대 초기 FTA의 협정내용에 비해 2011년 이후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임¹⁷⁾
- 중국의 초기 FTA 협정내용은 비교적 간단하고 자유무역의 원칙을 나열한 수준이었음
 - 기본항목인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지적재산권보호, 경제협력, 분쟁해결 절차 등 협정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ASEAN, 파키스탄, 칠레와 체결한 FTA와 홍콩, 마카오와 초기단계의 CEPA의 내용이 이와 같음
 - 후기 FTA 협정은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며 무역자유화 정도가 높음
 - FTA 협정의 기본적인 항목 외에 전자상거래, 무역과 환경, 경쟁정책 등 21세기 경제·무역 의제를 포함하며 주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한국, 호주와 체결한 FTA가 이에 해당함
- 2017년 최근 중국은 통상협력 플랫폼인 FTA를 넘어 ‘소지역 협력’을 강화해 중층적 지역경제 중심전략을 구체화함
- 현재 메콩강, 중앙아시아, 두만강 등 주요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소지역 경제협력 통로를 적극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좁게는 동아시아, 넓게는 아시아대륙을 상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FTA, 양자 FTA, 소지역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는 중층적 지역경제 중심전략을 구체화함

16) KOTRA 뉴스, 「중국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_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53(검색일자: 2018. 9. 13)

17) KOTRA 뉴스, 「중국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_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53(검색일자: 2018. 9. 13)

26 제1편 개관

- 또한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제기한 후 연선국과의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며 중서부 아시아, 동유럽과의 연결을 강화 중임
- 일대일로 구상 실현을 위해 이스라엘, 스리랑카, 몽골 등의 국가와 FTA 협상 검토 및 중-조지아 FTA, 중-몰디브 FTA 체결 등을 이루어냄

제2편 통관제도

I. 통관행정 개요

1. 통관 관련 법령

- 중국의 주요 통관 관련 법령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中华人民共和国 进出口 关系件 例)」가 있음
 - 「해관법」은 중국 해관이 출입국 운송수단, 화물, 수출입 물품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주요 법률 근거임
 - 출입국 운송수단(제2장), 출입국 화물(제3장), 출입국 물품(제4장), 관세(제5장), 해관사무 담보(제6장), 법률 집행·감독(제7장), 법률책임(제8장) 등 총 9장 102조로 구성됨
 - 「수출입관세조례」는 「해관법」에 근거하여 수출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임
 - 주요내용은 수출입화물 관세율의 설정과 적용(제2장),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 확정(제3장), 수출입화물 관세의 징수(제4장), 입국 물품의 수입세 징수(제5장) 등의 사항이 있음

- 그 밖에 중국 관세청에서 통관 행정 수행을 위해 규범성 문건으로 발표하는 부서 규정으로 「수출입 물품 신고에 대한 세관 행정 방법(海关总署关于修改部分规章的决定, 海关总署令第103号)」과 「수출입 관세 징수를 위한 세관 행정 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 海关总署令第124号)」 등이 있음
- 해관총서령 제103호와 제124호는 2014년 3월 13일 해관총서령 제128호에서 일부 개정됨¹⁸⁾

〈표 2-1-1〉 중국의 통관절차와 관련한 주요 법령

분류	주요법규	공표일/개정일	명칭(영문)
법률 ¹⁾	해관법	- 1987년 7월 1일 - 2013년 12월 28일	Order No.50 issued in 1987, and amended in 2000 and 2013
행정 법규 ²⁾	수출입관세조례	- 2003년 10월 29일	State Council Decree No. 392, 29 October 2003
부서 규정 ³⁾	수출입 물품 신고에 대한 해관총국령	- 2003년 11월 1일 - 2014년 3월 13일	GACC Decree No.103 of 2004, and amended by No. 218 of 2014
	수출입 관세 징수를 위한 해관총국령	- 2005년 3월 1일 - 2014년 3월 13일	GACC Decree No.124 of 2005, and amended by No. 218 of 2014

주: 1) 전인대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국가주석이 반포하는 규범성 문건을 총칭

2) 국무원에서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 직책범위에서 제정하는 기본 행정관리 규범성 문건을 총칭

3) 국무원 부서에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과 명령에 의해 부서 직책범위에서 발표하는 규범성 문건을 총칭

자료: WTO, 2018. 6, p. 45; 중국해관총서(GACC), <http://english.customs.gov.cn/Legislation/Laws>,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index.html>(검색일자: 2018. 5. 9)

18)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399/info701048.htm>, 중문 공표(검색일자: 2018. 9. 16)

2. 통관 조직¹⁹⁾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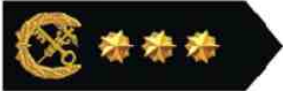
- 중국의 통관행정을 담당하는 중국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hina Customs, GACC)는 중국 세관의 본부로서 국무원 직속의 장관급 기관임
 - 수출입 통관의 감독과 국경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며 그 외에 직속해관과 예속해관의 통제, 관세의 징수, 밀수 방지 및 대외 무역 통계의 산출, 항만 관리, 보세 작업 관리,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국제 관세 협력 등의 업무가 있음
- 2016년 말 기준 중국해관총서(GACC) 아래 18개 일반 행정부서와 북경에 직속 8개 기업사업체를 두며 4개 사회단체를 관리함
 - 2011년 이후 관세행정조직에 퇴직, 휴양 간부의 사무소(Office of retired employees), 수송지원업무부서(Department of logistic support), 그리고 정무실(Office of political affair)이 신설됨
- 해관총서는 전국에 총 47개 직속해관을 두며 직속해관 아래 740개 예속해관을 관장하는 등 전국적으로 모든 관세행정을 관리함²⁰⁾
 - 47개 직속해관에는 광둥성, 천진과 상해에 각 1개씩의 직속해관이 있고, 2개 해관교육기관과 42개 직속해관 등으로 구성됨
 - EU, 러시아, 미국, 홍콩 등에 해외세관이 파견되어 있음
 - 740개 예속해관은 지방관청, 통관신고서 심사기관, 현장세관 등을 모두 포괄한 것임

19) 중국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zsgk93/302254/index.html>(검색일자: 2018. 8. 6)

20) 중국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zsgk93/302251/index.html>(검색일자: 2018. 8. 6)

- 중국해관의 직원 수는 밀수방지를 위한 세관경찰을 포함하여 약 6만명 정도이며 5등 13급으로 구성된 공무원 직급제를 운영 중임²¹⁾
- 1등급은 세관이사과 세관부국장(해관총감과 부총감)임
 - 2~4등급은 관리자로 구성되며 해관업무 감독(監督), 독찰(督察), 독반(督办)이 각 등급당 3단계씩 구성됨
 - 5등급은 상급과 중급 실무자로 구성됨

〈표 2-1-2〉 중국의 세관공무원 직급 표식

분류	표식		
1등급	 海关总监	 海关副总监	
2등급	 一级关务监督	 二级关务监督	 三级关务监督
3등급	 一级关务督察	 二级关务督察	 三级关务督察
4등급	 一级关务督办	 二级关务督办	 三级关务督办
5등급	 一级关务员	 二级关务员	

자료: 중국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zsgk93/302261/index.html>(검색일자: 2018. 11. 21)

21) 중국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zsgk93/302261/index.html>(검색일자: 2018. 11. 21)

- 중국해관조직은 해관총서에서 직속해관을 거쳐 예속세관으로 업무가 하달되는 수직 관리체계 특징이 있음²²⁾
 - 해관총서는 국무원이 설립한 기관으로 전국해관을 통일 관리하며, 국가는 대외 개방항구 및 해관관리감독이 집중되는 지역에 해관을 설립함
 - 해관의 예속관계는 행정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즉 해관은 법에 의거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이는 해관총서가 책임을 짐
 - 해관총서가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직속해관은 일정 행정구역의 해관업무를 담당하며 예속해관은 직속해관의 지도하에 구체적인 해관업무를 처리함

- 중국해관의 주요업무는 출입국 관리감독, 관세와 기타세금의 징수, 밀수의 단속, 그리고 세관통계의 작성 등임²³⁾
 - 중국해관은 국가의 입출입 관리감독이며 법령에 따라 입출국 운송수단, 화물, 여행자물품, 우편송달물품 및 기타물품등을 관리감독함
 - 수출입 허가물품이나 입출국 물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며 납세의무자의 확정과 물품의 과세가격을 심사하여 관세를 결정함
 - 중국해관총서 내부에 밀수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공안기구를 설립하여 밀수전담 경찰을 배치하고 관할구역의 밀수범죄사건을 주국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함
 - 수출입신고서 등의 수집과 정리를 통해 수출입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등 각종 정보를 통계 및 분석하고 이를 대외무역지표에 반영함

2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2017. 2, p. 60.

2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7. 2, pp. 60~61.

나. 부서별 업무²⁴⁾

- 중국해관총서 총괄행정부에는 총 18개 일반부서가 존재하며 이 중 관세징수와 통관절차 수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약함
- 사무처인 국가항만정책조사실은 해관업무의 보안, 기밀유지, 정책의 방침, 발전방향의 기획, 종합적인 개혁 방안, 조직의 추가 설립 등에 관한 입안을 지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 해관총서의 연도별 업무계획을 수립
 - 종합적 지시, 보고, 지도자 연설, 회의 문건 등 중요 문서를 작성
 - 해관체계를 조직하고 정책연구를 담당
- 정책법규사는 해관의 입법기획과 법률 초안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 해관 법률, 부문 규장 및 부서 규칙 초안에 참여
 - 국제 협정, 협약 및 의정서 등의 합법성 검토를 수행
 - 해관 표준화 작업을 수행
 - 행정 심의 및 행정 응소사항을 처리
- 관세징관사(关税征管司)는 수출입 조세정책과 세칙세율조정 연구에 참여하여 관세입법에 대한 조사연구와 세법집행 과정 중 일반적인 해석 작업 등을 수행함
 - 관세·수입과징금 등 세비 징수·감면·환급관리규칙제도 연구 및 조직적 감사실행
 - 국가 수출입 관세와 수입과징금 감면의 각종 정책과 규정 연구 및 실행
 - 관세평가방법, 품목분류(세칙분류)연구, 원산지 규칙 연구, 반덤핑조사와 조치 등 참여

24) 중국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zsgk93/jgzn95/jgzn5/2011776/index.html>(검색일자: 2018. 11. 2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7. 2, pp. 63~70.

- 감관사는 수출입화물, 여행자휴대품 등 특수통관물품, 각종 면세품 등 통관관리와 운송수단과 운송인 관리, 그리고 통관신고서 서식 관리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수출입화물 통관과 통관감독관리규정제도 연구 및 실행, 통관데이터뱅크 관리
 - 운송수단과 그 운송인, 수출입화물 컨테이너와 수출입화물 운송업체 통관감독관리규정제도 연구 및 조직적 실행
 - 해관신고서 서식·규정에 맞는 작성기입·신고서 심사와 합리적 자료·증거제시에 관한 관리 규정제도와 조직적 실행의 연구 제시
 - 일반적인 각종 수출입화물, 여행자물품, 우편물, 특송품, 면세품 등 각종 특수물품의 감독관리, 세금징수 관리, 감면 규정제도 연구 및 실행

- 가공무역 및 보세감관사는 가공무역, 보세구역과 수출가공구 무역 등을 관리감독하고 해당 구역의 신청과 설립을 심사하는 등 종합적 관리 업무를 수행함
 - 보세창고·보세공장·수출관리창고 등 보세관리장소의 해관심사비준과 수출입화물 보세관리의 규칙제도 연구 및 실행
 - 해관의 보세구역·수출가공구역 등 특수관리구역과 그 보세화물 관리규정제도 연구 및 실행
 - 가공무역계약서 심사접수와 가공무역보세수출입화물 국내 판매 시 품목분류, 가격심사 업무관리 작업 처리
 - 가공무역 단위당 원재료 소비에 대한 전문기술관리기구 업무관리 실행

- 종합통계사는 수출입무역통계작성, 수치 발표, 대외무역통계 관리 등 통계자료 보관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수출입무역통계작성, 수출입무역통계수치 관리, 해관통계 간행물 편집
 - 수출입무역통계분석과 통계감독진행, 대외무역지수 작성, 해관통계관리감독, 법집행 평가 실시
 - 해관업무통계 분석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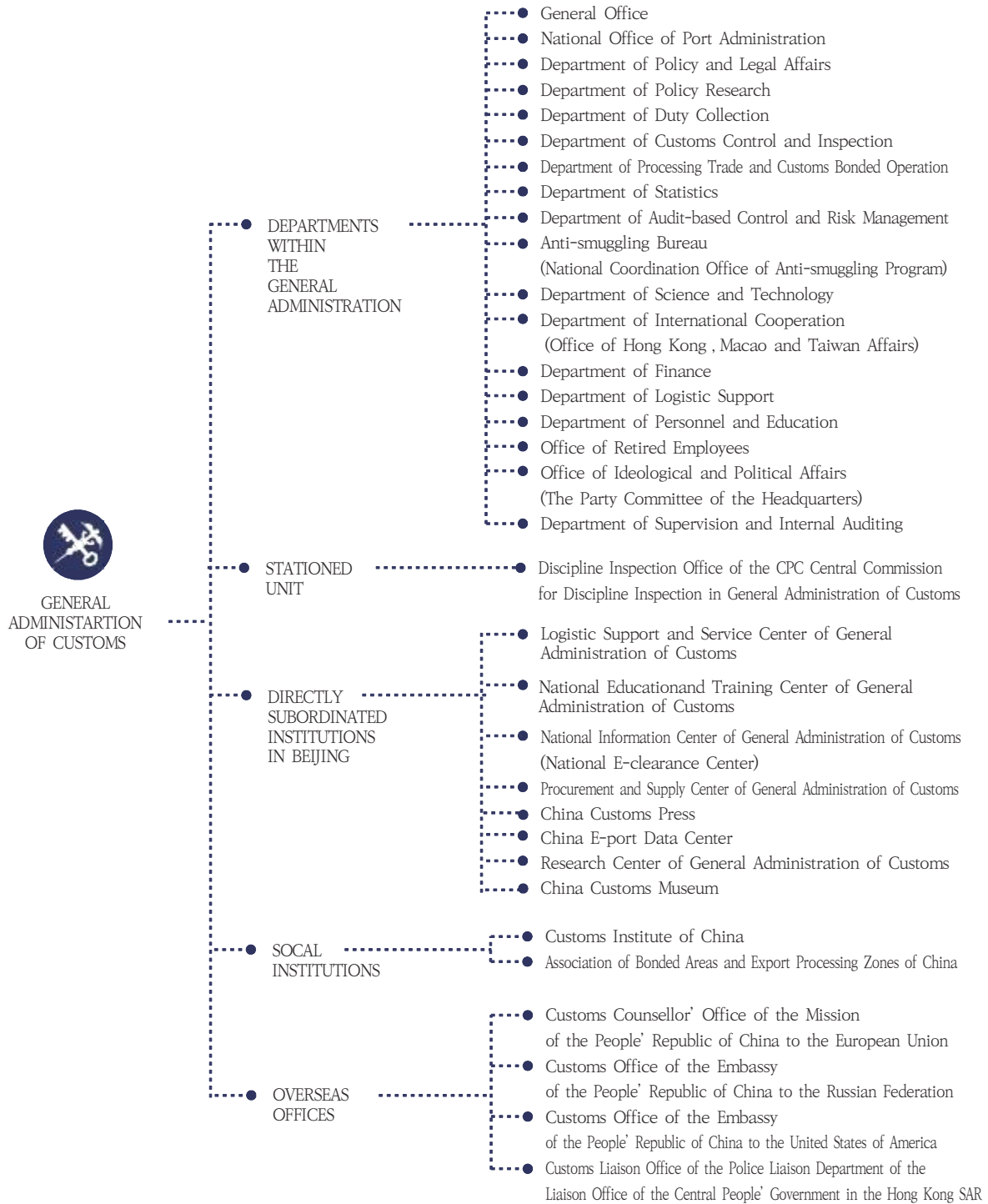
- 해관신고서 데이터베이스 표준체계 연구 및 조직적 실행, 해관신고서 데이터베이스 수치질량과 일상 업무 관리 책임
 - 전국해관신고서와 수시 서류의 문서 업무 관리
 - 모든 해관신고서 데이터의 사용 안전관리 작업 처리
- 계찰사는 사후심사부서로 일반물품, 가공무역물품, 감면물품 등의 납세 후 조사와 해관 위험관리제도를 연구하는 업무를 수행함
- 무역조사·시장조사규정제도 연구 및 실행
 - 관세법인·관세사 관리 및 관세사자격 처벌 규정제도 연구 및 실행
 - 기업의 수출입행위 규범과 기업에 대한 분류관리 실행에 관한 규정 연구 및 실행
 - 세관의 조사와 위험 관리 수단의 사용규정에 대한 연구 및 규정 실행
- 집사국은 전국 밀수단속 종합관리 사무소로 밀수단속 업무계획과 조직의 실행방법을 규정하고 전국 해관의 반밀수 정황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함
- 밀수범죄 조사업무, 해관밀수단속부서의 행정과 집행업무를 관리
 - 해관총서 관할의 밀수 형사소송사건을 처리
 - 밀수단속과 밀수 정보에 대한 연구
- 과기발전사는 해관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기술 개발, 기획, 해관정보화 표준규범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전국해관업무정보화시스템의 개발, 응용을 위한 보급, 운용조직을 관리, 해관업무데이터 대외연락망(엑스트라넷) 교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수행 등
 - 전국해관정보센터와 중국전자해안데이터센터 연계를 지도함
- 국제합작사는 해관의 국제협력업무 발전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주관함
- 해관 대외업무 규정제도 연구 및 실행, 총서 대외업무·응대업무 담당
 - 국제해관조직 및 관련 국제기구 교류·협력, 해관국제공약 및 법률문건의 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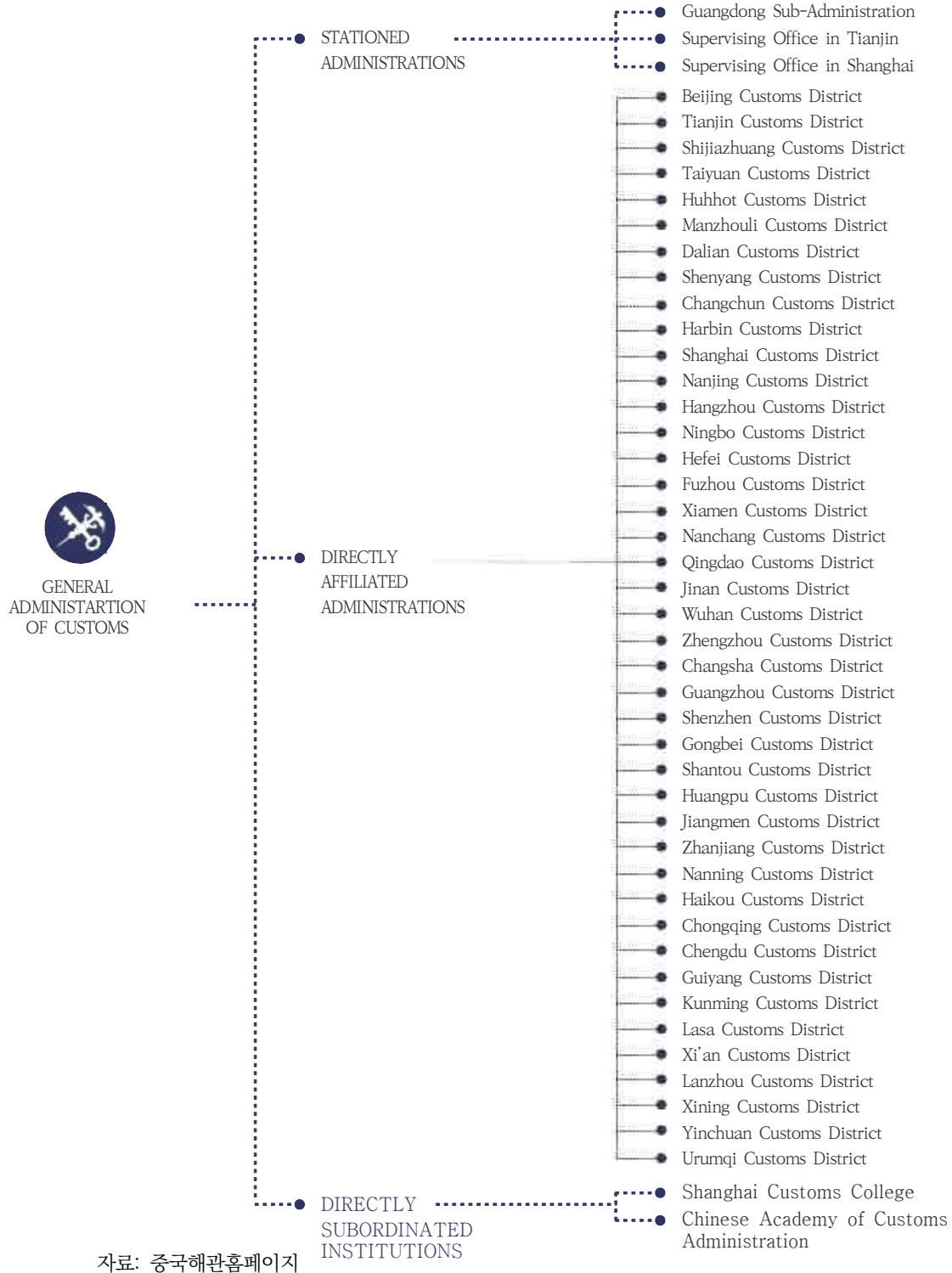
참여, 가입처리 또는 수속 접수 및 협조; 관련 국제협상에 조직적 협조, 제후협약체결 관련 절차 처리 및 협조

- 외국,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등의 해관과 교류·협력, 국제해관기술협조와 해관 상호간 공조협약체결의 양자 협상에 조직적 협조, 협약체결 관련 절차 처리 및 협조
- 해관업무관련 WTO 등 다자간 경제무역협상 활동에 참여, 관련 승낙의무를 이행하며 다자간협상을 실시

□ 주요 직속해관인 광둥분서, 북경해관, 그리고 상해해관의 업무와 특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약함

- 광둥분서는 광둥성 인민정부의 감독과 지도를 받으며 해관총서의 파출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
 - 광둥분서는 총 14개 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직원 수는 총 192명임
- 북경해관은 해관총서의 정국급 해관으로 수도해관이며 2016년 통관일체화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을 선도적으로 수행함
 - 주요업무는 해관법과 기타법률에 근거하여 북경지역의 입출경 운송수단, 화물, 여행자 물품 등의 관리감독, 관세 등의 징수, 밀수 조사, 그리고 해관통계의 작성 등임
 - 북경세관 관할 구역 내에 4개 직속해관이 설립되었으며 9개 파출기구, 21개 내부설립기구가 있는 등 규모가 상당함
 - 직원 수는 총 1,808명이며 이 중 242명은 밀수경찰임
- 상해해관은 중국정부가 상해항에 설립한 입출경 감독관리기관으로 1685년 청나라가 상해에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31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해관임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1. 관세의 신고와 납부

- 중국의 관세신고방법은 2017년 7월 1일 통관일체화 정책 이전 부과지제도 이후 신고납부제도로 구분됨
- 본 장에서는 기존의 부과지제도 내용을 중국 「해관법」에서 발췌 및 요약하고, 추가로 통관일체화 정책에 따른 신고납부제도 변경 내용을 정리하였음

가. 관세의 신고와 납부 방법

- 「(신고·납부)수출입관세조례」 제29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운송기구의 국내 입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수입물품 도착 전 세관의 승인을 얻어 사전 신고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는 법에 따라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세관 규정에 따라 세금 완납가격의 확정·품목분류·원산지과 반덤핑 또는 보조금 해당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은 필요 시 보충신고를 요구할 수 있음

- 「(과세표준)수출입관세조례」 제36조에 따라 수입물품 관세는 총가액계산 징수방식인 종가세, 총량계산 징수인 종량세, 그리고 기타 혼합세 방식으로 징수함
 - 종가세방식은 납부할 세액이 $\text{세금완납가격} \times \text{관세세율}$ 로 이뤄지며, 종량세방식은 납부할세액이 $\text{물품수량} \times \text{단위세액}$ 으로 이뤄짐

- 「(납세의무자)해관법」 제54조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화주와 국경출입 물품의 소유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관세의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야 함
 - 「해관법」 제9조에 따라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인가를 받아 등록한 통관대행업체 또는 수출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가 통관과 납세수속 처리를 맡음

- 「(세율적용시기)수출입관세조례」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은 반드시 세관이 해당 물품 수입신고를 접수받은 날의 세율을 적용함
 - 수입물품 도착 전 세관에 신고하여 심사승인을 받은 것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운송기구가 국경통과를 신고한 날의 세율을 적용함

- 「(납세기일)해관법」 제60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세금고지서를 발부한 다음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함
 - 납부기일을 넘기면 세관은 체납일부터 일수에 따라 체납세액의 5/10,0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
 - 3개월을 경과하여 납세인이나 보증인이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직속 세관장은 세수확보를 위한 다음의 조치를 강제할 수 있음
 - 구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담보인이나 납세의무자의 예금 범위 안에서 공제함
 - 세금납부 대상물품을 매각하여 세금으로 충당함
 - 세금에 상당한 가치의 물품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하고 법에 의거하여 이를 매각해 매각소득을 세금으로 충당함

- 「(납세기한연장)수출입관세조례」 제39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불가항력이나 국가의 세수정책 조정상황 때문에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관총서의 승인을 받아 최장 6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관세 등의 추징)해관법」 제62조에 따라 수출입화물 등이 통관된 후 세관이 부족세액이나 세금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세금납부일 또는 물품 통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추징함
 - 만약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부족세액이나 누락세금은 3년 이내로 확대함
- (과다환급액 청구권)세관이 발견한 과다납부된 세금은 납세의무자에게 반환수속을 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된 세금을 발견한 경우 세금납부일로부터 1년 내에 과다납부된 세금과 같은 기간 은행 일반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
 - 세관은 반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반환수속 처리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함
 - 납세의무자는 통지수령일로부터 3개월 내 반환수속을 처리해야 함

나. 통관일체화 정책에 따른 변경사항

- 2017년 7월 1일 통관일체화 정책으로 중국은 원칙적인 관세의 신고와 납부 방식을 기존 부과지 방식에서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함
 - 해관총서 2016년 제62호 공고에 따라 해관은 2016.11월부터 “자진신고납부”를 시범 실시함
 - 통관일체화 시행 전에는 세관이 과세가격을 심사하고 이를 확정하여 기업의 납부세금을 결정 및 통지하던 방식이었으나, 정책 이후 기업 스스로 과세가격의 신고와 관세를 납부하면 세관은 이를 수리함으로써 수입통관을 완료하게 됨²⁵⁾

- 또한 ‘선 통관 후 심사’제도에 걸맞게 세관의 기업심사 방식을 사후심사 방식으로 전환함
 - ‘선 통관 후 심사’란 화물의 수출입 통관 시 해관이 화물의 안전여부, 합법적 수출입 여부 등 중요 위험에 대해서만 판별한 후 대부분의 화물을 우선 통관시키고, 통관 후 세수관리요소의 위험은 사후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함²⁵⁾
-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중국기업은 자진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징수관리 방식으로 처리됨
 - 기업은 신고단계에서 “자진신고납부” 형식을 선택하여 한 번에 세관신고, 세금 계산 및 세금납부를 완료할 수 있음
 -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에 근거해 규범에 맞춰 해관 신고서 항목을 작성하고 사전신고 시스템의 세금계산(비용)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를 계산할 수 있음
 - 시스템에 나타나는 세금계산 액수를 확인하고 해관 신고서 입력 내용과 함께 해관에 제출해야 함

2. 수입물품에 추가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 관세 이외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증치세(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와 소비세(Consumption Tax)가 있음
- 수입물품에는 국내 생산품과 마찬가지로 증치세(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25) KIEP, 「중국세관, 전국범위 “통관 일체화 조치” 시행」, <https://csf.kiep.go.kr/file/download.do?fileId=9319>(검색일자: 2018. 8. 7)

26) 코트라, 「중국 전국 통관 일체화 실무 FAQ」,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2866>(검색일자: 2018. 8. 7)

42 제2편 통관제도

- 수입물품에 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는데, 증치세 계산산식은(수입가격(CIF 가격)+수입관세+소비세)×증치세율임
- 수입 증치세율은 보통 11%(2017년 7월 1일 이전 13%) 또는 17%이며, 증치세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은 증치세 면세 품목임
- 소비세(Consumption Tax)는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세율로 담배, 주류, 화장품, 귀금속, 폭죽, 휘발유, 자동차, 오토바이, 골프용품 및 고가의 손목 시계 등 14가지 특정 소비재에 부과되는 간접세임
 - 소비세율은 최저 1%에서 최고 56%까지 13단계로 나뉘어져 있음
 - 소비세 계산은 소비세=(CIF value+수입관세)/(1-소비세율)×소비세율로 하며 종량세인 경우, 소비세는 수량×단위당 세액으로 구함
- 소비세율은 <표 2-II-1> 대상품목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또는 혼합세 형태일 수 있음
 - 2015년 이후 소비세 적용 대상품목에 화장품과 고급 승용차를 추가함
 - 2016년 10월에 일반 화장품의 소비세 부과가 폐지되었고 2017년부터 고급화장품에만 소비세가 부과됨

<표 2-II-1> 2017년 중국의 소비세 대상품목

구분	적용품목	2017
1	담배	
1-1	시가	36%
1-2	궈련	
	갑류 궈련	56%+0.003위안/개비
	을류 궈련	36%+0.003위안/개비
	전체(wholesale)	11%+0.005위안/개비
	잘린 담배	30%
2	주류와 음료	
	백포도주	20%+0.5위안/500ml(g)
	막걸리	240위안/톤

구분	적용품목		2017
	갑류 맥주		250위안/톤
	을류 맥주		220위안/톤
	기타 발효주류		10%
3	특정 화장품		15%
4	귀금속류		
	금, 은, 백금 및 다이아몬드		5%
	진주, 옥 및 기타 보석		10%
5	폭죽과 불꽃놀이 제품		15%
6	휘발유		
	자동차 또는 항공 가솔린		1.52위안/리터
	경유		1.2위안/리터
	항공등유		1.2위안/리터
	나프타(Naphtha)		1.52위안/리터
	용제(Solvent)		1.52위안/리터
	윤활유(Lubricants)		1.52위안/리터
	연료유(Fuel oil)		1.2위안/리터
7	승용차		
	9인승 미만 승용차	1,000ml 미만	1%
		1,000ml 이상 1,500ml 미만	3%
		1,500ml 이상 2,000ml 미만	5%
		2,000ml 이상 2,500ml 미만	9%
		2,500ml 이상 3,000ml 미만	12%
		3,000ml 이상 4,000ml 미만	25%
		4,000ml 초과	40%
	상업용 중간크기 승용차		5%
최고급 차량		10%	
8	요트		10%
9	고급 손목시계		20%
10	골프용품		10%
11	원목마루		5%
12	일회용 젓가락		5%
13	건전지		4%
14	도료		4%

- 주: 1) 보루(200개비)당 70위안 이상은 갑류, 미만은 을류로 구분
 2) 맥아로 만든 맥주로써 톤당 공장가격이 3,000위안 이상은 갑류, 미만은 을류로 구분
 3) 고급화장품에 대해서만 부과
 4) 1리터당 0.013g 미만의 리드
 5) 9인승 미만 승용차 중 실린더 용량에 따라 나뉨
 6) 1만위안 이상

자료: WTO, 2018. 6, pp. 5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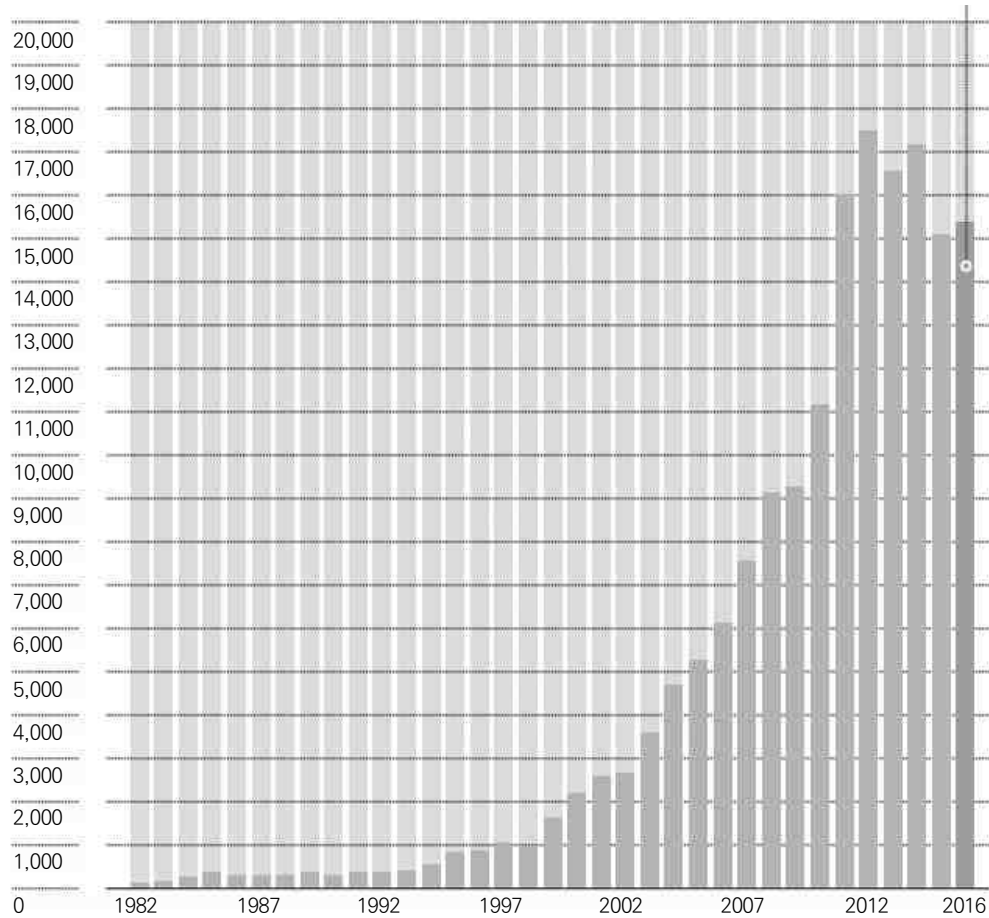
3. 관세 및 기타 세금 징수 규모²⁷⁾

-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의 관세 및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95% 증가한 1만 5,388.14억위안화임
 - [그림 2-II-2]를 보면 2011년부터 관세 등 세금징수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2년에 약 1만 7,500억위안화를 기록하였고 이후 징수 성장세가 둔화됨
- 중국 관세청의 2017년 계획은 수입물품의 부과·징수를 우선적 처리하는 정책 시행과 FTA 협정에 따른 특혜 이행을 목표로 함
 - 효과적인 세금징수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관세와 기타 세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세금징수 위험 관리 방법을 취하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징수를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 또한 FTA 특혜를 위한 원산지규정 협상 주도, FTA 체결국과의 협력도모 및 FTA 협정 품목의 적절한 특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27) 중국해관총서(GACC), 『China Customs Story』, 2017. 7, pp. 21~22.

[그림 2-II-1] 1982~2016년 중국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수 규모

(단위: 억위안화)



자료: 중국해관총서, 『China Customs Story』, 2017. 7, p. 23.

III. 관세평가제도

1. 개요

- 중국의 관세평가방법은 2006년 시행 이후 큰 개정 없이 유지 중임²⁸⁾
 - 중국의 관세평가방법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1방법이 우선이며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WTO 관세 평가 협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 2014년 2월 1일부터 관세평가방법이 수출입물품과 보세물품에 각각 적용되도록 규정이 개정됨

2. 관세평가방법

가. 일반적인 관세평가방법

- 「해관법」 제55조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관이 동 물품의 거래가격을

28) WTO, 2018. 6, p. 48.

기초로 심사 및 확정하며 거래가격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해관에서 법으로 결정함²⁹⁾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1방법은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이며, 수입물품에 대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다음의 가산·공제 요소를 조정한 금액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거래가격 불인정 시 2~6방법에 의거하여 과세함
- 무상물품 또는 유상물품 중 1방법의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되면 다음 2~6방법을 순차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표 2-III-1〉 중국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평가방법

구분	내용	비고
1방법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가격	
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수입국의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원가관련 비용 및 관세 등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국판가격에서 제외)	5방법 우선적용 가능
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조원가 + 수출국의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6방법	상기 방법으로 관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공평, 통일, 객관의 평가원칙에 따라 객관적 수량화한 데이터를 기초로 수입화물 관세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제도연구: 중국』, 2013. 12, p. 45.

- 「수출입관세조례」 제18조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서 해당 물품의 중국 국경 내 수입지까지 운송하여 하역하기 전까지 운송비와 부대비용, 그리고 보험료를 포함하는 CIF가격으로 심사 및 확정함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란 판매자가 중국 내 해당 물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을 위해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과세가격의

29) 중국 「해관법」 제55조 및 「수출입관세조례」 제3장

가산 및 공제 요소를 차감한 가격 총액을 말하며 직접지급한 대금과 간접지급한 대금을 포함함

- 수입물품 과세가격에서 운송비와 보험료 계산은 <표 2-Ⅲ-2>와 같이 함

<표 2-Ⅲ-2> 중국의 과세가격에서 운송비와 보험료 계산방법

구분	계산방법
운송비	- 실제로 지급한 비용으로 계산 - 자체 동력으로 수입할 경우, 운송비를 계산하지 않음 - 불확정일 경우, 수입 동기에 발표된 운송비로 계산
보험비	- 실제로 지급한 비용으로 계산 - 불확정 또는 실제 미발생일 경우, 보험비=(화물가격+운송비)×3
우송화물 운송비	- 우편료를 운송비, 보험비로 확정
변경항구 운송비	- 경외 변경항구 가격의 1%로 운송비, 보험비로 계산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제도연구: 중국』, 2013. 12, p. 47.

□ 「수출입관세조례」 제18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부합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제한으로 물품의 판매지역 변경에 대한 제한과 물품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한은 제외함
- (거래성립 또는 가격결정에 영향)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끼워 팔거나 기타요인으로 인한 영향으로 결정에 영향이 없는 경우
- (처분 후 수익의 귀속)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 물품 수입 후 판매전환, 처분,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얻어서는 안 되며 수익이 있다 해도 과세가격결정 시 조정이 가능한 경우
- (특수관계)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특수관계여도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수출입관세조례」 제19조 내지 제21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 및 공제되는 요소는 <표 2-III-3>과 같음

<표 2-III-3> 중국 과세가격의 가산·공제요소

구분	세부내역
가산요소	(1) 화물 구매 커미션 외의 커미션과 중개 수수료 (2) 그 화물과 일체로 보는 용기비용 (3) 포장 재료비용과 포장 노무비용 (4) 수입화물 유지비용 (5) 납세할 특허권 사용료(경외 공급업체 또는 제3자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 (6) 경외 공급업체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일부 수입화물이 국내에서 운반, 처분, 사용함으로써 취득하는 수익 (7) 수입화물로 인해 공급업체에 직접 또는 간접 제공하는 협조와 관련된 비용 (8) 수입화물 중에 설치한 재료, 부속품, 부품 및 기타 유사한 항목과 관련된 비용 (9) 수입화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및 유사한 품목(분담) (10) 수입화물의 생산에 소모되는 재료비 (11) 수입화물의 생산에 필요하여 수입국가 외에서 종사하는 공정기술, 개발, 설계, 계획과 관련된 비용
공제요소	(1) 수입화물과 연관되는 할당액, 허가증 및 유사한 비용 (2) 수입관세와 기타 국내 세금 (3) 수입화물과 연관되는 이자 (4) 수입 후의 창고저장과 운송비용 (5) 경외 공급업체에게 지급하는 화물 수입 후의 설치, 시운전, 건축, 기술지원과 연관되는 비용 (6) 경외에서 수입화물을 복제함으로써 지급하는 비용 (7) 국내·외 기술교육 및 경외 고찰비용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제도연구: 중국』, 2013. 12, p. 45.

-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다르게 특수한 무역방식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표 2-III-4>의 각 무역방식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

〈표 2-Ⅲ-4〉 특수 수입물품 과세가격 평가방법

무역방식	화물유형	평가방법	
원료수입가공 (비보세부분)	원료	원료 수입을 신고할 때의 거래가격으로 확정	
원료수입가공 (보세부분)	원료	원료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내수신고 접수 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완제품 (불량품, 부산품)	원료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위탁가공	원료 또는 완제품 (불량품)	내수신고 접수 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수출가공구	완제품, 불량품	내수신고 접수 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조각, 부산품	해관에서 평가하여 확정한 내수가격	
보세구 가공기업	수입원료 또는 완제품(불량품)	내수신고 접수 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원료수입가공 완제품(경내 구매원료 포함)	완제품에 포함된 경외 구입한 원료의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원료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내수신고 접수 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위탁가공 완제품(경내 구매원료 포함)	내수신고 접수 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조각, 부산품	해관에서 평가하여 확정한 내수가격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구, 보세물류센터 입국	조각, 부산품	원료 및 그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경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확정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제도연구: 중국』, 2013. 12, p. 46.

나. 개정된 관세평가방법³⁰⁾

- 2006년 제정되었던 수출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GAC order no. 148-2006)은 2014년 2월 1일부터 수출입물품과 보세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으로 이원화되어 개정됨
 -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방법(GAC order no. 213-2013)과 보세물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관세평가방법(GAC order no. 211-2013)으로 이원화됨
-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방법의 개정 핵심내용은 ① 신고가격 인정 ② 하역 전 관련 수수료 과세가격 포함 ③ 보세창고비용 과세가격 제외 ④ 소프트웨어매체 정의 특정 등 다음 4가지임
 - 수출입 신고자의 신고가격 입증 방법에 대해, 세관은 수입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그것이 상업적인 관행과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신고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정
 - 하역 전 수입물품의 운임·보험료와 별개로 이와 관련한 수수료는 실제 경비에 기초하여 계산하며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비용으로 확정함
 - 보세창고비용이 특정 기준에 충족한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과세대상 소프트웨어매체에 대한 정의를 HS Code 8524에 열거된 물품에서 테이프, 디스크 및 CD로 변경함
- 보세물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관세평가방법의 개정 핵심내용은 크게 ① 세관특별감독 이외의 구역 ② 세관특별감독 구역 ③ 세관특별감독 구역 또는 보세구역 감독지역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상세내용은 <표 2-III-5>와 같음

30) PWC, "Updated customs valuation rules for China", <https://www.pwccustoms.com>(검색일자: 2018. 11. 20)

〈표 2-Ⅲ-5〉 개정된 보세물품의 관세평가방법

구분	화물유형	관세평가방법
세관특별감독 이외의 구역	보세 원료 또는 완제품의 국내 판매(계약 제조)	수입 원료에 대해 지불한 기존 거래 가격 또는 수입 원자재 가격을 가중 평균한 가격
	보세 원료 또는 완제품의 국내 판매(임가공 제조)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보세물품 의 가격
	부산물, 재해로 인해 또는 손상된 물품, 스크랩의 국내 판매	다음의 가격정보를 고려하여 결정 - 국내 판매 가격 - 수입된 보세 원료의 비율 - 경매 가격
	보세구역 내 소유권 이전 물품의 국내 판매	양도된 가격
세관특별감독 구역	자유 무역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보세 완성품 국내 판매	다음 가격 중 하나에 근거하여 결정 - 수입된 외국 원료에 대해 지불된 국내 판매가 - 원 거래 가격 - 유사하거나 동일한 보세품의 수입 거래 가격
	다른 세관특별감독 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보세 완성품 국내 판매	다음 가격 중 하나에 근거하여 결정 - 국내 판매 가격 - 국내에서 판매된 적이 있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보세품의 가격 - 비용, 이익 및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계산된 가격
	스크랩, 폐기물, 결함물품, 부산물의 국내 판매	다음의 가격정보를 고려하여 결정 - 국내 판매 가격 - 수입된 보세 원료의 비율 - 경매 가격
세관특별감독 구역 또는 보세구역 감독지역	보세 물류 상품의 보세구역 보관비용 등	세관특별감독 구역 또는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보험료, 보관료, 운송료 및 기타 관련 비용을 개 별적으로 기재한 경우 등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제외

자료: PWC, "Updated customs valuation rules for China", <https://www.pwccustoms.com>
(검색일자: 2018. 11. 20)

IV. 관세율 및 품목분류제도

1. 관세율제도

가. 관세율의 종류 및 적용 범위

- 중국의 관세는 WTO 가입 이후 최혜국대우 원칙을 토대로 우대세율을 세분화하여 최혜국세율(MFN세율), 협정세율(FTA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기본세율), 잠정세율, 관세할당세율(TRQ세율) 등 6가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³¹⁾
- 최혜국세율은 WTO 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물품, 원산지가 중국과 상호 최혜국 우대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국가나 지역의 수입물품, 원산지가 중국인 수입물품에 적용함
- 협정세율은 원산지가 중국과 관세우대조항의 지역성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수입물품에 적용함
- 특혜세율은 중국과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물품에 적용함
- 일반세율은 상기 우대세율과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에 적용하고 상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

31) 「수출입관세조례」 제9조와 제10조

- 이 외에도 「수출입관세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반덤핑, 반보조금, 보복조치를 취하는 경우 세율 적용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등 별도 규정에 따라 해당 세율을 추가 부과함

〈표 2-Ⅳ-1〉 중국의 수입관세율 종류와 적용 범위

세율종류	적용범위
최혜국세율 (양허세율)	- 최혜국대우조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WTO 회원국 원산지의 수입화물, 중국과 최혜국대우조항을 포함한 양자협정에 서명한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 중국 국경 내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
협정세율 (FTA세율)	- 중국과 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FTA 체결 국가 원산지 수입화물에 적용하는 세율) - 2017년 기준 총 16개 FTA 체결국에 적용됨
특혜세율	- 중국과 특혜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 - 아프타(APTA) 2개국(방글라데시, 라오스), 아세안(ASEAN) 3개국(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최빈국 37개국
일반세율 (기본세율)	-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과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입화물에 적용하는 세율
잠정세율	-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세율
관세할당세율 (TRQ세율)	- 수입관세할당 관리를 받는 수입화물의 관세할당 내 물량에 적용하는 세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제도연구: 중국』, 2013. 12. p.41에서 재인용

나. 관세율 분포

- 2017년 12월 1일 기준(이하 '2017년') 중국의 양허세율(최혜국대우 관세율; Most favored nation, MFN)을 적용받는 전체 수입물품의 약 99.6% 정도가 운송·보험료 포함 가격조건(Cost Insurance Freight, CIF)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종가세

(ad valorem tariffs) 적용 대상이며 약 0.04%의 물품이 종량세(specific rates) 적용대상임³²⁾

- HS Code 8자리를 기준으로 총 8,547개 품목 중에 8,513개 품목이 증가세를 적용받으며 34개는 종량세를 적용받음³³⁾

□ 2017년 평균 양허세율은 9.3%이며 농산품의 평균 양허세율은 14.6%, 비농산품의 평균 양허세율은 8.5%로 2015년에 비해 소폭 하락함

〈표 2-IV-2〉 2013~2017년 중국의 관세율 구조

(단위: %, 개)

구분	양허세율(MFN effective applied rate)			기본관세율 (current bound ¹⁾)		
	2013	2015	2017			
단순평균 양허세율	9.4	9.5	9.3	9.8		
WTO 농산품	14.8	14.8	14.6	15.1		
WTO 비농산품	8.6	8.6	8.5	9.0		
무관세품목 비율	9.8	9.7	9.8	7.5		
국제관세정점 ²⁾	14.4	14.4	13.9	15.6		
구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총 관세적용품목	8,238	100	8,285	100	8,547	100
증가세적용품목	7,385	89.65	7,437	89.76	7,669	89.73
무관세품목	810	9.83	806	9.73	840	9.83
특정관세율품목	35	0.42	34	0.41	34	0.40
대체관세율품목	3	0.04	3	0.04	3	0.04
기타품목	5	0.06	5	0.06	1	0.01

주: 1) 중국 관세율표 2017에 수록된 최종적용관세율임

2) 국제관세정점(international tariff peaks)은 1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율로 정의됨

자료: WTO, 2018. 6, p.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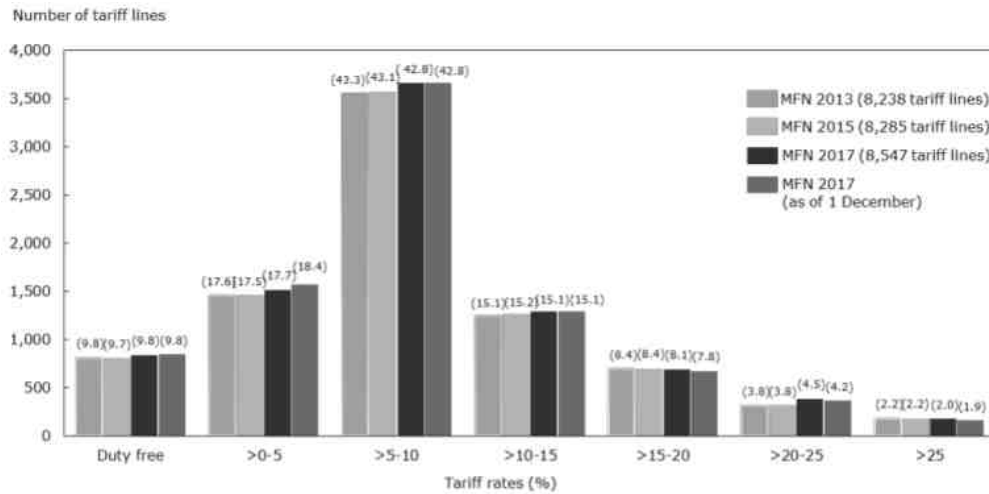
32) WTO, *Trade Policy Review-China*, WT/TPR/S/375, 2018. 6. 6, p. 47.

33) 조건부 증가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만약 해당품목의 수입 가격이 통상적인 가격보다 낮거나 같으면 증가세가 적용되고 이 외에는 종량세와 증가세를 혼합한 세율이 적용됨

- 2017년 실행 중인 양허관세율 적용 범위는 0~25%까지이며 전체 품목 중 42.8%가 5~10% 사이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약 29%가 1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 받음
- 2017년 실행관세율 분포도는 2013년과 2015년을 각각 비교 시 큰 차이 없이 유지됨을 알 수 있음

[그림 2-Ⅳ-1] 2013~2017년 중국의 양허세율 분포

(단위: 개수/관세율)



주: 괄호의 숫자는 전체 관세적용품목 중 해당 구간의 관세율 적용 비율을 나타냄
 자료: WTO, 2018. 6, p. 48.

- 2017년 전체 관세적용품목 중 WTO 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단순평균 양허세율 품목은 설탕과 제과제품으로 30.9%이고, 가장 낮은 품목은 목재, 펄프, 제지 및 가구로 3.9%임
- HS Code 중 부(Chapter)기준으로 본다면 제5부 광물성 생산품(Mineral products)의 단순평균 양허세율이 3.0%로 가장 낮으며, 제4부 조제식료품(Prepared food, beverages and tobacco)이 17.3%로 가장 높음

- 적용가능한 관세율 범위는 0~65%로 중국의 HS2017 관세율표와 WTO 기준 간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운영 중임

〈표 2-Ⅳ-3〉 2017년 중국의 품목별 관세율 구조

(단위: %, 개)

구분	개수	단순평균 관세율	관세율적용범위		무관세비율
			WTO	관세율표	
총합계	8,547	9.5	0~65	0~65	9.8
HS 01~24류	1,410	13.7	0~65	0~65	8.7
HS 25~97류	7,137	8.6	0~50	0~50	10.0
WTO 분류 기준					
농산물	1,171	14.8	0~65	0~65	8.0
동물 및 동물성 생산물	170	12.7	0~25	0~25	18.2
낙농품	21	12.1	2~20	6~20	0.0
과일, 채소 및 비식용 식물	391	13.8	0~30	0~30	6.1
커피와 차	31	14.9	2~32	8~32	0.0
곡물 및 곡물조제품	127	23.3	0~65	0~65	7.9
채유용 종자, 지방 및 관련 조제품	108	10.5	0~30	0~30	12.0
설탕과 제과제품	19	30.9	8~50	8~50	0.0
음료, 주류 및 담배	66	21.5	0~65	0~65	1.5
면(목화)	5	22.0	10~40	10~40	0.0
기타 농산물	233	12.0	0~38	0~38	6.4
비농산물	7,376	8.6	0~50	0~50	10.1
어류 및 어류조제품	348	10.1	0~23	0~23	8.3
광물 및 금속	1256	7.5	0~50	0~50	8.8
화학조제품 및 사진용품	1421	6.2	0~47	0~47	5.3
목재, 펄프, 제지 및 가구	421	3.9	0~20	0~20	40.6
식물	521	9.6	2~38	2~38	0.0
의류	299	15.6	7~25	14~25	0.0
가죽, 고무, 신발 및 여행용품	226	12.4	0~25	0~25	0.4

구분	개수	단순평균 관세율	관세율적용범위		무관세비율
			WTO	관세율표	
비전자 기계	1040	7.5	0~35	0~35	13.6
전자 기기	467	8.1	0~35	0~35	26.8
운송수단	412	15.1	0~45	0~45	0.2
기타 비농산물 제품	615	10.6	0~35	0~35	14.1
석유	20	4.8	0~9	0~9	15.0
HS 부(Chapter)기준					
01 동물성 생산물	529	11.4	0~25	0~25	12.5
02 식물성 생산물	515	14.1	0~65	0~65	10.9
03 동식물성 지방	56	12.6	2~30	5~30	0.0
04 조제식료품	310	17.3	0~65	0~65	0.3
05 광물성 생산물	201	3.0	0~11	0~12	27.4
06 화학공업 생산물	1345	6.3	0~50	0~50	5.6
07 플라스틱과 고무	279	9.2	0~25	0~25	0.4
08 원피·가죽·모피	106	11.7	3~20	5~23	0.0
09 목재와 그 제품	235	3.9	0~20	0~20	42.1
10 펄프·종이·인쇄서적	161	5.2	0~7.5	0~7.5	21.7
11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1147	11.3	1~40	3~40	0.0
12 신발·모자·우산·가발	73	17.1	10~25	10~25	0.0
13 석·도자·유리제품	204	13.0	0~28	0~28	0.5
14 진주·귀석·귀금속	90	10.0	0~35	0~35	38.9
15 비금속과 그 제품	770	7.0	0~30	0~30	3.1
16 기계류·전기기기	1542	7.7	0~35	0~35	18.5
17 수송기기	427	14.9	0~45	0~45	0.3
18 광학·측정·의료기기	335	9.0	0~30	0~30	10.1
19 무기	21	13.0	13~13	13~15	0.0
20 잡품	191	10.5	0~25	0~25	35.1
21 예술품·골동품	10	7.1	0~14	0~14	20.0

자료: WTO, 2018. 6, p. 189.

다. 협정세율 구조

- 중국의 총 15개 자유무역협정 중 칠레와 뉴질랜드의 평균 협정세율이 0.4%로 가장 낮고, 코스타리카와 아이슬란드가 0.7%, 아세안(ASEAN)이 0.8% 순으로 낮음
 - 이들 국가의 전체 품목 중 면세품목의 비율(면세선)은 각각 97.2%, 97.4%, 93.8%, 95.7% 및 94.4%로 타 FTA에 비해 월등히 높은 면세 비중을 보임
- 반대로 호주의 평균 협정세율은 9.1%로 가장 높고, 아프타(APTA)가 8.9%, 대만이 8.8% 순으로 높음
 - 이들 국가의 면세선은 각각 9.8%, 10%, 17.1%로 협정세율이 높으면 면세선이 낮고, 반대로 협정세율이 낮으면 면세선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중국 FTA의 경우 평균 협정관세율은 6.7%로 양허세율(MFN)인 9.5%에 비해 2/3 수준이며 면세 비중은 전체 품목의 20.1%로 타 FTA에 비해 면세비중이 낮은 편임
 - 농산물의 평균 협정관세율은 11.4%이며 면세선은 19.1%이고, 비농산물의 평균 협정관세율은 6%이며 면세선은 20.3%임

〈표 2-IV-4〉 2017년 중국의 협정세율 구조

(단위: %)

구분	총합계		WTO 농산물		WTO 비농산물	
	평균	면세	평균	면세	평균	면세
양허세율(MFN)	9.5	9.8	14.8	8.0	8.6	10.1
협정세율						
APTA	8.9	10.0	13.8	9.0	8.1	10.2
ASEAN	0.8	94.4	1.7	93.6	0.7	94.5
홍콩-중국 CEPA	7.0	31.8	12.3	22.8	6.2	33.3

구분	총합계		WTO 농산물		WTO 비농산물	
	평균	면세	평균	면세	평균	면세
마카오-중국 CEPA	7.2	27.3	10.0	36.0	6.8	26.0
대만-중국 ECFA	8.8	17.1	14.6	9.3	7.9	18.4
파키스탄-중국 FTA	6.0	35.4	11.4	23.6	5.1	37.2
칠레-중국 FTA	0.4	97.2	2.0	94.8	0.2	97.6
뉴질랜드-중국 FTA	0.4	97.4	2.0	94.5	0.2	97.8
싱가폴-중국 FTA	4.7	43.2	8.7	41.9	4.0	43.4
페루-중국 FTA	1.9	73.0	4.5	46.6	1.4	77.2
코스타리카-중국 FTA	0.7	93.8	3.0	85.0	0.3	95.2
아이슬랜드-중국 FTA	0.7	95.7	2.9	91.2	0.3	96.4
스위스-중국 FTA	4.8	23.6	9.2	15.5	4.1	24.9
호주-중국 FTA	9.1	9.8	13.7	8.0	8.4	10.1
한국-중국 FTA	6.7	20.1	11.4	19.1	6.0	20.3

자료: WTO, 2018. 6, p. 49.

2. 품목분류제도

가. 개요

- 「해관법」 제42조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국가의 관련 품목분류규정인 수출입세칙에 따라 확정함
 - 세관은 수출입물품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품목분류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화학검사나 분석 기구를 둘 수 있고, 세관이 인정하는 검사와 분석결과를 품목분류의 근거로 할 수 있음

- 「해관법」과 함께 품목분류와 관련한 중국 법률은 2001년 해관총서가 부서규정으로 발행한 「행정적 관세통칙 임시조치(Order of the GAC No.92, 2001)」임
 - 해당 부서규정은 해관총서가 국가적 품목분류체계의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최초로 발행한 행정규정(Administrative Classification Ruling)이며, 정부정책과 일관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품목분류 통칙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2007년에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체계를 보다 표준화하기 위해 「수출입 품목분류 행정절차에 관한 관세조항(Order of the GAC No.158, 2007)」으로 개정함

- 2015년 6월, 해관총서는 품목분류 규정이 발표된 이래 최초로 HS Code 9001. 2000 편광판에 대한 품목분류 판정결과를 공식 발표함³⁴⁾
 - 중국에도 품목분류 사전판정신청제도가 존재하지만 해관총서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어 HS code 확정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저하되었음

- EY에서는 해관총서의 이러한 행보가 상해자유무역지대(FTZ)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향후 상해진출 기업들이 품목분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³⁵⁾
 - 해당 판결문은 2015년 현재 상해자유무역지대에 등록된 기업과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나, 해관총서는 향후 판결문에서 법적 구속력을 모든 수출입품목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국 세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해관총서의 품목분류 사전판정 신청 및 절차는 아래와 같음³⁶⁾
 - 수입자는 수입하기 3개월 전 품목분류와 관련한 정보 등 관련 서류를 해관총서에 제출해야 함

34) 중국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9/309790/index.html>(검색일자: 2018. 11. 22)

35) EY, *Trade Watch*, Volume 14, Issue 3, 2015. 9, pp. 20~21.

36) EY, 2015. 9, p. 21.

- 관련 서류는 수입자와 수입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제품사양, 사진, 샘플, 분석보고서 등).
- 해관의 품목분류 신청승인까지 약 1~2주 소요되며, 승인이 완료되면 완료일부 터 60일 내로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함
-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HS Code 또는 상품명으로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어 해당 방법을 부록에 실음³⁷⁾

나. 품목분류 사전판정제도³⁸⁾

- 「해관법」 제43조에 따라 세관은 수출입업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을 사전에 품목분류 하는 등 행정상 결정할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판정 제도를 운영 중임
- 세관은 동일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동일한 품목분류 행정 결정을 적용해야 하며 결정한 품목분류에 행정 결정을 공표해야 함
- 2017년 12월 12일, 「해관사전판정관리잠정방법」이 통과되어 2018년 2월 1일부 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전면 폐지되고 사전판정제도로 흡수됨
- 기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해당 사전심사 결정을 내린 직속 해관에서만 법률적 효력이 있고 당사자가 신청한 해당 물품에만 적용 가능했으나, 신설된 사전판정제도는 신청인의 물품 수출입 전 곧 시행될 수출입활동과 관련된 해관 업무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는 점과 법률상 모든 해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이며 당사자가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등 납세자 편의가 증폭됨

37) 중국 관세청, <http://online.customs.gov.cn/static/pages/taxRateQuery.html>(검색일자: 2018. 9. 16)

38) 코트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7010&searchNationCd=101046>(검색일자: 2018. 9. 4)

V. 감면 및 환급제도

1. 감면제도

- 중국의 관세 감면제도는 「해관법」 제56조나 제58조에 따라 법정 감면, 특정 감면, 그리고 임시 감면으로 나누어짐³⁹⁾
 - 법정 감면이란 별도의 감면 신청 및 화물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무조건 감면을 말함
 - 특정 감면이란 특정 지역과 기업 또는 특정 용도 물품에 감면세 혜택을 직접 부여하여 통관 전 별도 감면세 신청에 대해 해관의 심사 및 타 용도 전용을 금지하는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조건부 또는 정책성 감면을 말함
 - 임시 감면이란 국무원이 특수 상황과 수요에 근거하여 임시적,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감면을 말함
-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무조건 감면인 법정 감면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은 다음과 같음⁴⁰⁾
 - 관세가 50위안화 이하로 추정되는 단일 위탁물품
 -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물 및 샘플

39) 강성훈·김다량·노영예·양지영, 『주요국의 재수입면세제도 비교연구』, 2016. 12, p. 43; 중국 「해관법」 제56조(감면세); 제57조(특정 물품 감면세); 제58조(임시 감면세 결정)

40) WTO, 2018. 6, p. 50.

-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기증한 물품
 - 통관 전에 손상된 물품
 - 중국에서 운송 중인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등
 -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고 1일 1인당 8천위안화 미만으로 관세 평가되는 물품
- 특정 감면과 임시 감면은 신청자의 감면신청으로 해관의 심사와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조건부 감면세임
- 중국은 특정 감면과 임시 감면제도의 실무적 운영방법지침을 「해관총서령 제 179호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으로 별도 규정함
- 특정 감면은 산업진흥 등의 특정 목적이 부여된 중국의 특정 지역과 기업 또는 특정 용도를 가진 물품에 적용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음⁴¹⁾
- 외상투자 프로젝트의 투자한도에서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 외에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 국내투자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
 - 대출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물자
 - 특정 지역 물자
 - 과학교육용품
 - 과학기술 개발용품
 - 무상원조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물자
 - 장애인용품
 - 원양어업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자체 어획 수산물
 - 원양선박 및 설비부품 프로젝트
 - 집적회로 프로젝트
 - 해상 석유, 육상 석유 프로젝트

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p. 55.

- 대출 낙찰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부품
 - 구제, 기증 물자
 - 자선, 기증 물자
- 특정 감면 적용을 위해 해당 기업은 물품 수입 전 해관에 먼저 신청해야 하며, 해관은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함⁴²⁾
- 해관은 관세감면 관련 정책에 부합될 경우, 관세감면 증명을 발급하고 업체는 관세감면 증명 및 관련 통관서류를 해관에 제출하여 관세감면 수입화물의 통관 수속을 밟음
- 임시 감면은 수출입 세수 우대정책 규정적용 등 국무원이 특수상황과 수요에 근거하여 임시적으로 부여하는 감면임⁴³⁾
- 임시 관세면제 화물은 단위, 품목, 기한, 금액, 수량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어 시효가 비교적 짧고 혜택정책이 집행되면 종료됨
 - 신청기업은 소재지 해관에 신청하고 해관은 사실을 심사한 후 해관총서에 보고하며, 해관총서 또는 해관총서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하고, 해관총서는 관련 해관에 관세감면 수속을 밟도록 통보함
- 중국의 관세감면물품의 통관행정 절차는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124호) 제5장에 규정되어 있음⁴⁴⁾
- (감면심사승인)납세자가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에 관련 문서를 소지하고, 세금 감면심사승인 수속을 진행하여야 함⁴⁵⁾

42) 상동

43) 상동

44) 중국해관총서, 「海关总署令124号(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518/info4487.htm>(검색일자: 2018. 8. 20)

45)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72조; 제74조

-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한 뒤 세금감면증명서를 발행해야 함
- (감면심사 제외물품)세금 감면 대상 수출입화물은 세금 감면심사승인 수속 없이 수출입할 수 있으며 승인제외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⁴⁶⁾
 - 감면심사가 제외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음
 - 관세,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이 인민폐 50위안 이하인 물품
 -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제품 및 샘플
 - 세관 통관 이전에 파손되거나 손실된 물품
 -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운송 도구에 적재되고 운송 과정에 필요한 연료, 자재, 식품 및 음료 등
 - 기타 세금 감면 심사 수속이 필요하지 않은 세금 감면 대상 물품
 - 납세자는 수출입 신고 시 또는 세관의 화물 통관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세관은 필요 시 납세자에게 자격요건을 갖춘 검사기구가 발행한 파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파손 정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함
- (특정감면관리대상)특정 지역과 기업 또는 특정한 용도를 가진 특정 세금 감면 대상 수입물품은 반드시 세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며, 감독 기한은 물품의 수입 통관일로부터 기산하여 물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이함⁴⁷⁾
 - 선박과 항공기: 8년
 - 자동차: 6년
 - 기타 화물: 5년
- (납세자 보고의무)특정감면대상 수입물품의 감독 관리기간 동안 납세자는 해당 물

46)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72조 내지 73조

47)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75조

품의 통관일로부터 매년 1회 관할 세관에 해당 물품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해야 함⁴⁸⁾

- (특정 감면물품의 양도)세관의 승인을 받아 감면물품과 동등한 세금 우대를 받는 항목 단위에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고 감독 관리 해제 수속을 마친 후에만 양도 또는 기타 처리과정을 진행할 수 있음⁴⁹⁾
- (특정 감면 관리 해제)특정감면대상 수입물품의 감독 관리 기한이 만료되면 세관의 감독 관리는 자동으로 해제됨⁵⁰⁾
 - 납세자가 세관의 감독 관리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독 관리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명세서를 소지하고 세관에 감독 관리 해제 증명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음
 - 세관은 납세자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 관리 해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2. 환급제도

- 중국에서의 관세 환급은 수출한 물품이 원상태로 재수입되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짐⁵¹⁾
 - 이미 수입관세를 징수한 물품이 품질이나 규격 때문에 원상태로 외국 수출국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환급함
 - 이미 수출관세를 징수한 물품이 품질이나 규격 때문에 원상태로 중국에 반품되거나 또는 수출과의 반환으로 국내부분의 관련세수를 새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48)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76조

49)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76조

50)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77조

51) 「수출입관세조례」 제50조

에는 수출관세를 환급함

- 수출관세를 이미 징수한 물품이 일정 사정으로 수출하지 못하여 수출철회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환급함
-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환급해야 하는 관세는 해관이 유관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환함

□ 중국 「해관법」 또는 「수출입관세조례」에는 품질 또는 규격 상이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실무적으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함⁵²⁾

- 수출물품이 해외에서 품질적합 여부 테스트 결과 불합격하는 경우
- 수출물품이 실제 모델과 구매계약서 내용 간 차이가 있는 경우
- 오(誤)선적으로 실제 수출물품이 계약 수량과 상이한 경우
 - 벌크 상태의 수출물품이 계약보다 부족한 상태로 통관되어 당해 물품의 출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이미 부족 부분에 상응한 물품대금을 환급 또는 배상한 경우
 - 수출물품이 파손, 품질불량, 및 규격 미달 사유로 실제 계약수량보다 부족하여 수출물품의 출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배상한 경우
- 중국 해관에서 국가규정에 따라 반품을 명한 경우
- 수출물품이 연고로 인해 수출되지 못하고 해관에 통관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 계약 이행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된 경우로써 계약물품 손상, 수량 부족 및 품질 등급이 떨어지는 물품 등이나 당해 계약상 페널티 규정으로써 배달 지연으로 인한 벌금 등이 반품 재수입 사유에 해당됨
 - 물품 생산설비 가동의 문제로 인한 계약 이행 지연 등 간접적인 반품 사유는 적용되지 않음

52) 강성훈 외 3인, 2016. 12, p. 45.

□ 세관은 「수출입조례」 제50조에 따라 과다 징수한 세액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환급해주어야 하며 납세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내에 세관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⁵³⁾

□ 납세자의 관세 환급신청 및 세관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음⁵⁴⁾

- ① 서면형식으로 세관에 상황을 설명
- ② 납세증명서 원본 및 관련 자료를 세관에 제출⁵⁵⁾
- ③ 세관은 운송하지 않은 화물의 관세 환급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상황 조사
- ④ 세관은 관세 환급이 타당한 경우 납세자에게 환급수속 처리를 통지
- ⑤ 납세자는 환급수속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환급을 받아야 함⁵⁶⁾

□ 납세자는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 환급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각각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수입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아래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⁵⁷⁾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선하증권(B/L) 등 무역계약 기본서류
 - 원 수출신고필증, 환급단 및 수출제반서류
 - 서면으로 서명한 반품합의서
 - 반품사유서
 - 외화핵소단(外汇核销单, 이미 수출대금을 받은 경우 “已核销”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일 것)
 - 국세국 발행 〈수출상품 반품 기보세증명〉 혹은 〈미환급증명〉
 - 필요한 경우 공인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규격 부적합 또는 결손·수량부족

53) 「해관법」 제63조

54) 조선비즈, 「중국에서 수출관세 환급 받는 법」,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0/2018041000882.html(검색일자: 2018. 11. 20)

55) 강성훈 외 3인, 2016. 12, p. 46.

56) 「수출입관세조례」 제50조

57) 강성훈 외 3인, 2016. 12, p. 46.

사실 증명서

- 수출관세의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⁵⁸⁾
 - 환급신청서
 - 원 수출신고필증, 세액 납부서, 상업송장
 - 물품 재반입에 의한 수입신고서
 - 쌍방이 작성한 반품협의서, 세무기관에서 발행한 재납부 증명서
 - 환급 또는 배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 필요한 경우 품질 불량 및 규격 부적합 사실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 실무상 납세자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항은 수입통관 시 세관의 실수로 인한 경우이거나 수출이 철회되어 수출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등 아래 3가지임⁵⁹⁾
 - ① 세관의 잘못된 징수로 인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 ② 세관의 검사면제로 수입한 화물의 세액을 완납한 후 화물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세관의 심사를 거쳐 인가된 경우
 - ③ 이미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어떠한 이유로 수출 운송되지 못하고, 수출 철회를 신청한 후 세관이 심사한 결과 사실에 속한 경우

- 중국의 수입관세와 수출관세 환급 신청서 양식을 [부록Ⅱ]와 [부록 Ⅲ]으로 실음

58)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62조

59) 조선비즈(검색일자: 2018. 11. 20)

VI. 원산지제도

- 본 장은 중국의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표기를 포함한 원산지규정과 한-중 FTA상 원산지규정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함
 - 다국의 원재료 사용, 생산 공정의 글로벌화로 원산지 결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제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한-중 FTA상 원산지규정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산지규정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

1.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판정기준

가. 원산지규정

-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생산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의 법률, 규정, 행정절차로 정의됨
- 중국의 원산지규정은 「대외무역법」, 「해관법」을 최상위법으로 하며, 구체적인 시행규정은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를 근거로 함
 - 「대외무역법」 제22조는 원산지관리 방법에 대해 규정하며, 「해관법」 제41조는

수출입화물 원산지관리에 대해 규정함

-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는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각종 무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며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됨
 - 동 조례 제2조는 적용범위 규정으로 비우혜적 무역조치,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등의 활동 시 수출입화물 원산지확정에 적용한다는 내용임
 - 비우혜적 무역조치는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조, 보장조치, 원산지표기관리, 국별 수량제한, 관세쿼터 등을 의미함
 - 한편 우혜적 무역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수출입화물 원산지확정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제정함을 밝힘
- 중국의 원산지제도 역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관세율이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과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혜원산지규정으로 나눌 수 있음
-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중국의 「대외무역법」, 「해관법」,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등에서 규정함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대외무역법」 제22조 「원산지관리의 방법」, 「해관법」 제41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관리」,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원산지표기관리규정」, 「원산지표기관리규정실시방법」, 「비특혜원산지규칙의 실질변형기준에 관한 규정」, 「제조 또는 가공공정절차 및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상품목록」 등임
-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최혜국대우, 반덤핑 및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원산지표기관리, 국가별 수량제한, 관세쿼터 등 비우대성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 수출입 원산지 확정에 적용함
 -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 이외에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하는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WTO의 비차별대우에 입각하여 적용됨

- 특혜원산지규정은 중국이 기타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FTA의 원산지관련 조항을 통해 규율함
 - 주로 특혜무역협정을 통해 특정국가 간에 관세혜택을 부여하는데 적용되며, 실무에서는 중국이 당해 FTA 내용에 근거한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함⁶⁰⁾
- 중국은 2001년 WTO 회원국이 되면서 특혜원산지규정을 시행함
 - WTO 가입 전까지 모든 국가에 대해 차별 없이 비특혜원산지규정이 적용되었음
- 중국은 2018년 9월 현재 16개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함
 - 중-ASEAN FTA 원산지규정
 - 중-칠레 FTA 원산지규정
 - 중-파키스탄 FTA 원산지규정
 - 중-홍콩 CEPA 원산지규정
 - 중-마카오 CEPA 원산지규정
 - 중-대만 CEPA 원산지규정
 - 중-뉴질랜드 FTA 원산지규정
 - 중-싱가포르 FTA 원산지규정
 - 중-페루 FTA 원산지규정
 - 중-코스타리카 FTA 원산지규정
 - 중-아이슬란드 FTA 원산지규정
 - 중-스위스 FTA 원산지규정
 - 중-한 FTA 원산지규정
 - 중-호주 FTA 원산지규정
 - 중-조지아 FTA 원산지규정
 - 중-몰디브 FTA 원산지규정

60) 마광, 『중국의 원산지 법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8, p. 25.

나. 원산지 판정기준

- 원산지 판정기준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원산지규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
 -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성장, 제조, 가공된 지역 혹은 국가를 구별하는 기준을 의미함
- 중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에 근거함⁶¹⁾
 - 원산지 판정기준은 동 조례 제3조~제6조에서 규정함
 - 중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으로 구분됨
 - 원산지 판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세관총서에서 상무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함께 제정함⁶²⁾
- 동 조례에 따라 중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으로 나눌 수 있음⁶³⁾
 - 완전생산기준은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이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이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해당국(지역)임⁶⁴⁾
 - 실질변형기준은 2개국 이상에 걸쳐 제품이 생산, 가공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최종적으로 실질인 변경을 완성한 국가(지역)임⁶⁵⁾
- 완전생산기준은 주로 당사국 안에서 당사국의 원자재만으로 물품을 완전히 생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⁶⁶⁾

61)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1조~제6조에 해당함

62)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6조

63)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은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기준이며 실질변형기준을 보충한 미소기준, 누적기준, 불인정공정, 직접운송원칙, 역외가공인정 등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사용하기도 함

64)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3조

65)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3조

- 해당국(지역)에서 출생하고 아울러 사육한 산 동물
 - 해당국(지역)의 야외에서 포획, 어획, 수집한 동물
 - 해당국(지역)의 살아 있는 동물에서 채취한 가공하지 않은 물품
 - 해당국(지역)에서 수확한 식물과 식물제품
 - 해당국(지역)에서 채굴한 광물
 - 해당국(지역)에서 취득한 본 조 제1항~제5항 범위 외의 기타 천연으로 생성된 물품
 - 해당국(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정 중 발생한, 폐기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 또는 회수하여 재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폐품
 - 해당국(지역)에서 수집한, 복원 수리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당 물품 중에서 회수한 부속품 또는 재료
 - 합법적으로 해당국 깃발을 건 선박이 그 영해 이외의 해역에서 취득한 해양 어로물과 기타 물품
 - 합법적으로 해당국 깃발을 건 가공선에서 본 조 제9항에 열거된 물품을 가공하여 취득한 제품
 - 해당국 영해 이외의 전문채굴권을 가진 해상 또는 해상하층토에서 취득한 물품
 - 해당국(지역)에서 완전히 본 조 제1항~제11항에 열거된 물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 실질변경기준을 통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세번변경기준, 주요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이 있음⁶⁷⁾
- 실질변경기준을 통해 원산지를 결정할 때는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세번변경이 실질변경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주요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을 보충기준으로 함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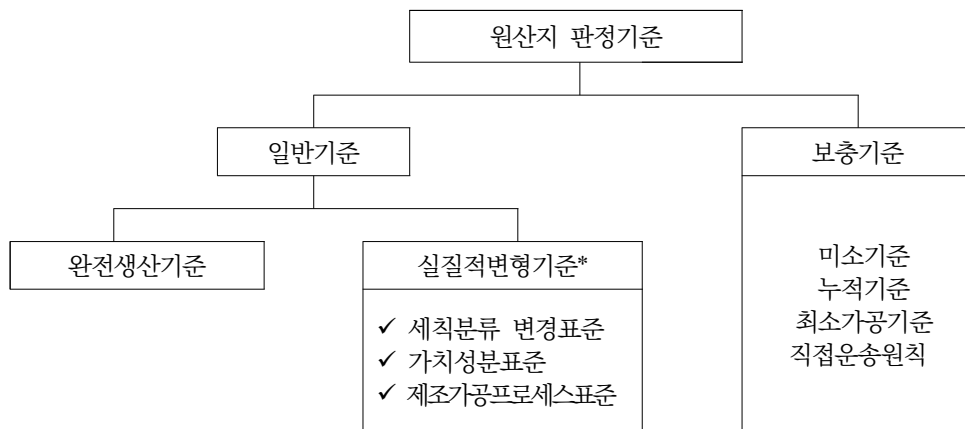
66)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4조 제1항~제12항

67) 실질변경기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비특혜원산지의 실질적 변경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며 주요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화물 목록은 〈부록 IV〉를 참조

68)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6조, 「비특혜원산지의 실질적 변경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중국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위의 3가지 방법을 따름. 이외에도 실질적 변형기준이 갖는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미소기준(De Minimis Rule), 누적기준(Accumulation Rule), 불

- 세번변경기준은 어떤 한 나라(지구)에서 동 나라(지구)의 원산지가 아닌 재료로 제조, 가공 후 얻어지는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의 HS 4단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함⁶⁹⁾
- 주요공정기준은 어떤 한 나라(지구)에서 진행되는 제조, 가공 후 얻어지는 화물에 기본특성을 부여하는 주요공정을 의미함⁷⁰⁾
- 부가가치기준은 어떤 한 나라(지구)에서 당해 국가(지구)가 원산지가 아닌 재료로 제조, 가공 후 얻어지는 부가가치부분이 화물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함⁷¹⁾

[그림 2-VI-1] 중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주: * 중국 법령상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제조가공공정기준에 해당하는 용어
 자료: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제4조~제10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인정공정 및 최소공정기준, 세번변경기준 특례, 직접운송법칙 등 다양한 형태의 보충기준이 있음
 69) 「비특혜원산지의 실질적 변경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70) 「비특혜원산지의 실질적 변경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71) 「비특혜원산지의 실질적 변경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식

2. 원산지표기

- 중국은 원산지표기제도를 통해 원산지표기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원산지표기를 규범화하며 생산자 및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⁷²⁾
 - 원산지표기는 화물이나 포장에서 해당 화물의 원산지를 명시한 문자와 도형임⁷³⁾
 - 구체적으로 판정된 원산지를 상품에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인쇄, 주조, 라벨링 등을 포함함
- 원산지표기 관련법은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원산지표기관리규정」, 「원산지표기관리규정실시방법」에 근거하여 제정함
 - 중국의 원산지표기 관련법은 중국 국내법과 WTO 원산지협정 등의 국제조약과 협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함
 -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는 제15조, 제26조에서 원산지표기를 규정함
 - 「원산지표기관리규정」은 원산지표시의 신청과 심사 및 등록 등 원산지표기의 인증과 관리업무에 적용함⁷⁴⁾
 - 「원산지표기관리규정실시방법」은 원산지표기 적용대상물품에 대해 규정함
- 원산지표기가 필요한 적용대상상품은 (1)류와 (2)류가 있음⁷⁵⁾
 - 원산지표기 적용대상상품(1)⁷⁶⁾
 - “중국제조/생산” 문구가 있는 상품의 표시
 - 명품, 특산품과 전통수공업품
 - 원산지인증표기를 신청한 상품
 - 안전, 위생, 환경보호 및 반사기행위와 관련된 물품

72) 「원산지표기관리규정」 제1조

73)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26조

74) 「원산지표기관리규정」 제2조

75) 분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76) 「원산지표기관리규정」 제5조

- 원산지표기를 해야 하는 서비스무역과 정부조달에 관한 상품
-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상품
- 원산지표기 적용대상상품(2)⁷⁷⁾
 - 생산국에서 취득한 순수 원제품
 - 수입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산지자격을 취득한 제품
 - 원산국표기가 있는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에 관한 수입제품
 - 외국생산자가 원산지표기보호를 신청한 상품
 - 반덤핑, 반보조금과 관련된 상품
 - 서비스무역과 정부조달 중의 원산지표기 상품
- 지역토산품, 전통수공업품, 우수한 브랜드제품에 대하여 신청인은 원산지표기신청을 하고 검험검역기관의 심사 및 등록 후 원산지표기를 사용함⁷⁸⁾
- 검험검역기관은 원산지표기에 대한 등기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⁷⁹⁾
 - 단 안전, 위생, 환경보호 및 반사기행위와 관련하여 반입하는 제품과 중국의 법률법규, 양국협약 등 원산지표기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품·서비스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함
- 원산지인증등기를 취득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원산지인증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검험검역기관은 원산지인증표기 제품에 대해 검험검역, 통관 등에 있어 편리를 제공함⁸⁰⁾
 - 검험검역기관은 원산지표시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평가·심사한 후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등록을 인준함⁸¹⁾

77) 「원산지표기관리규정실시방법」 제5조

78) 「원산지표기관리규정실시방법」 제16조

79) 「원산지표기관리규정」 제6조

80) 「원산지표기관리규정」 제8조

81) 「원산지표기관리규정」 제7조

- 원산지인증표기 형식 및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음⁸²⁾
 - 원산지인증의 표기도안은 검험검역국(CIQ-Origin)으로 함
 - 표기도형은 타원형으로 바탕은 남색, 글자는 백색으로 하되, 표기재료는 종이이며 필요 시 알루미늄박 사용 가능함
 - 표기규격은 5호로 나누며 각종 규격의 외부 사이즈는 1호 60밀리미터, 2호 45밀리미터, 3호 30밀리미터, 4호 20밀리미터, 5호 10밀리미터임
 - 표기도안의 長, 短반지름 비율은 1.5:1로 함
- 원산지인증표기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제품이나 포장에 매달거나 직접 붙임
 - 금속, 플라스틱 등의 제품이나 포장물에 도안을 코팅함
 - 원산지표기증서
 - 라벨 또는 포장물에 직접인쇄
 - 신청인의 요구 또는 실제상황에 맞추어 알맞은 표시방법을 사용함
- 원산지표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원산지표기보호에서 제외된 제품⁸³⁾
 - 원산지표기의 보호대상 제외 상품
 - 규정된 원산지표기와 지리적 표시에 맞지 않는 제품
 - 도덕이나 공공질서를 위반한 표기, 특히 상품의 품질, 산지, 제조방법, 특징 또는 용도 등에서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표기
 -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되었거나 대중이 인지할 정도로 공용된 원산지표기
 - 미등록 상태이거나 임의로 “중국제조”라는 표기를 사용한 것
 - 원산지표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원산지표기관리규정실시방법」 제18조)
 - 거짓, 속임수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원산지표기를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82) 「원산지표기관리규정실시방법」 제14조

83) 「원산지표기관리규정실시방법」 제17조

속임수에 의한 설명으로 원산지 명칭을 위조한 것

- 원산지표기에 “류”, “형”, “식” 등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원산지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
- 원산지표기와 실제 상품이 맞지 않을 때
- 원산지표기를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위조하였을 때

3. 한-중 FTA 협정상 원산지규정

- 원산지규정은 FTA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양자 간 특혜관세를 부여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임
 - FTA가 체결됐더라도 협정문상 해당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특혜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FTA 협정문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과 중립적인 특혜원산지규정에 합의함
 - 중립적인 특혜원산지규정이란 양국의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특혜원산지 규정을 의미함⁸⁴⁾
 - FTA 협정문상 원산지규정은 제3.1조~제3.28조까지로 구성됨
- 협정문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5,205 개임
 - FTA 특혜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 및 절차는 협정문에서 규정하며, 개별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roduct-Specific Rules, 이하 PSR)은 부속서에서 규정함⁸⁵⁾
 - 협정문상 PSR은 개별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적용하며 특정품목군에 국한하여 공

84) 채형복·황해률, 『한EU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2010. 2, p. 1.

85) FTA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면서도 국내산업에 대한 적절한 보호도 고려해야 하는데 당사국에 민감한 산업과 관련된 품목은 원산지규정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협정관세가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PSR을 활용함

통적으로 적용하는 공통기준과 품목별로 적용하는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함⁸⁶⁾

- 품목별로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이 다른데, 주로 농수산물에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며 공산품에는 실질변형기준을 적용함
 - 중국은 우리나라뿐 아닌 기체결 FTA 협정문상 원산지부문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채택함
 - 단 실질변형기준에 있어서 중국-홍콩, 마카오 간의 CEPA에서는 특정공정, 세번변경, 부가가치, 기타, 혼합 등 5개 세분기준을 선택했으며, 중국-아세안 FTA는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공정 3가지 세부기준을 두는 등의 차이는 있음
- 협정문상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은 육류, 채소, 과일, 곡물류 등 총 715개이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10가지임⁸⁷⁾
 - (가)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 (나) (가)호에 규정된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다)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 채집 또는 수집한 식물 또는 식물 상품
 - (라) 당사국 영토,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수렵, 낚시, 어로, 양식, 수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한 상품
 - (마)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하거나 취득한 상품으로써 (가)호 내지 (라)호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다른 자연 발생 물질
 - (바)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취득한 상품
 - 다만 당사국은 그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 대하여 자연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서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광물 상품

86) 품목별 PSR에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규정됨

87) 완전생산기준은 주로 1차상품 및 이를 이용한 가공물품에 적용됨

- (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제양한 선박의 선상공장에서 가공한 상품
 - (마)항에 규정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또는 가공한 상품
 - (자) (1)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공정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2) 당사국 영역에서 소비되고 수집된 중고품
- 협정문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주로 가공식품,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 철강, 기계 및 전기·전자, 광학·의료·정밀기기, 자동차 등임
-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며, 세번변경기준은 HS 품목분류 구조상 단위가 낮아질수록 원산지요건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음⁸⁸⁾
 - 커피추출물, 효모, 수프, 아이스크림, 맥주는 HS 4단위 기준(CTH)이 적용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HS 2단위 기준(CC)이 적용됨
 - 협정문에서는 보존처리 식품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며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FOB(본선인도가격)에서 공제하는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근거함⁸⁹⁾
 - RVC는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인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함
 -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경우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직접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한-중 FTA에서는 공제법에만 근거하여 평가함⁹⁰⁾
 - 석유화학제품은 대부분 품목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중심으로 설정함
 - 섬유 제품은 주로 세번변경기준(예외기준 포함)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이며, 의류 제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임
 - 철강은 도금, 선재, 일차재료 등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며, 냉간압

88) 강문성, 『한-중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엄격성 지수에 대한 연구』, 2015. 6. 세번변경기준에서 HS 2단위 변경이란 원자재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했을 때 완제품의 HS코드 2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HS 2단위 세번변경이 HS 4단위 세번변경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되고, HS 6단위 세번변경보다 HS 4단위 세번변경이 더 엄격한 기준이 됨

89) 부가가치기준에서 부가가치란 대체로 원산지 결정대상인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 가격임

90) RVC 방식은 그 계산방식에 따라 다시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 등으로 구분됨

연 제품은 재료인 열간압연 제품을 역내산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는 예외기준을 포함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ex.from)임

- 기계 및 전기·전자 대부분 품목에 4단위(CTH) 또는 6단위(CTSH)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되, 양국 산업상 민감성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함
- 광학·의료·정밀기기는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중심으로 설정하되, 일부 양국의 민감 품목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함
- 자동차는 양국의 산업 민감성을 고려하여,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60%)을 모두 충족 시 원산지를 인정하며, 기타 완성차는 단일 부가가치기준(RVC 50%)이고, 자동차 부품은 단일 부가가치기준 50%로, 그 외 새시·차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임

□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도 원산지 지위를 인정함⁹¹⁾

- 북한지역에서 운영되는 공업지구를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함⁹²⁾
 - 단 총가치가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최종 상품의 FOB 가격 40%를 초과하지 않고, 해당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을 가공하는데 사용한 재료의 총가치 60% 이상이어야 함⁹³⁾

□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협정에서 정하는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함

- 한-중 간 원산지증명서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기관발급 방식을 적용함
 - 2018년 8월 20일부터 출입국 검사·검역 업무가 해관총서로 이관됨에 따라

91) 여타 FTA와 동일

92) 협정문 제3.3조 제1항 전문 「양 당사국 영역 밖의 지역(이하 역외가공지역이라고 한다)에서 한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재료에 작업 또는 가공을 수행하고 이후에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기로 규정함」

93) 협정문 제3.3조 제1항 제가호, 제나호

한-중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도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AQSIQ)에서 해관총서(GACC)로 변경됨⁹⁴⁾

- 중국 정부 사이트에서 원산지증명 번호가 조회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에 정 부기관 도장이 찍혀 있어야 수입신고 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과 함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양식 또한 변경 됨⁹⁵⁾

- 기존 양식과 겉보기에 달라진 것은 전혀 없으나, 자외선 불빛을 비추면 원산지 증명서 우측 상단에 붉은색으로 된 해관총서의 로고(마크)를 확인할 수 있음
- 기존에는 질검총국의 로고(마크)가 있었음
- 로고의 크기는 12.5mm(가로)×12mm(세로)이며, 로고의 위측 여백은 3mm, 우측 여백은 3mm임

□ 전자적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상 기재 품목수를 현행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함

- 양국은 전자적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입국 FTA 특혜신청 시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면제 및 신속한 특혜적용이 가능해짐
- 그동안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수가 최대 20개로 제한돼 있어 수출품목이 20개를 넘을 경우 2개 이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기재품목수가 확대되면서 편의가 증대됨

□ 통관물품의 가치가 700달러 이하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됨⁹⁶⁾

94) 중국 국무원의 조직개편에 따라 질검총국(AQSIQ)이 담당하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출입국검사·검역 업무가 해관총서(GACC)로 이관됨. 결과적으로 출입국 검사, 검역 집행기구 및 인력도 모두 해관총서로 통합됨

95) 한국전기산업진흥회, http://www.koema.or.kr/koema/report/stats_view.html?intNo=76134&condi=&s_word=&page=1(검색일자 2018. 9. 3)

96) 협정문 제3.19조

4.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유의사항

- 2018년 10월 기준, 미국은 자국법인 미국 「무역법」 제301조를 통해 중국산 물품에 대해 보복관세 조치하고 있음⁹⁷⁾
 - 미국 「무역법」 제301조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s)에 대한 보복조치 법규임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對중국 관세부과 품목은 중국의 핵심수출품목으로 구성되며, 수입물품 기존관세에 25%가 추가로 과세됨⁹⁸⁾
 - 보복관세 적용 품목은 2018년 10월 기준 약 7100여개 품목이며, 총 3차례에 걸쳐 발표함
 - 1차는 2018년 7월, IT 및 기계류 818개 품목, 2차는 2018년 8월 설비·장치 등 279개 품목에 25% 보복관세가 발효 중이며, 3차는 농축산물 등 6,031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미국의 중국산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기준은 수출지가 아닌 원산지임
 - 즉, 한-중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보복관세 부과대상 품목이 결정됨
 -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국산 원자료와 부품을 재가공해 완성품으로 만들면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율은 한-미 FTA에 따라 영세율 또는 저세율 등 협정세율을 적용했음
- 따라서 한-중 연결공정 제품이 제301조 제재품목인 경우 원산지가 중국산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수출제품이 보복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함⁹⁹⁾

97) The section 301 duties currently only to products of China, and based on the country of origin, not country of export 규정에 따라 중국산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임

98) USTR 홈페이지>Issue Areas>Enforcement

99) USTR 홈페이지>Issue Areas>Enforcement>Section 301 Investigations에서 보복관세 적용품목 확인 가능

- 한-중 연결공정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음
 - 중국에서 제조·가공 등 일부 공정을 거치고 우리나라에서 추가 공정을 거쳐 중국산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 완제품에 중국산 부품이 탑재된 경우
- 제조 및 가공이 중국과 연결되어 생성된 한-중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규정이 중요해졌으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업체의 주의가 필요함
- 보복관세 부과 피해축소를 위해 수출 전에 중국산으로 판정되는지에 대한 원산지 판정인 미국의 사전판정 및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원산지 사전판정 및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는 미국 관세청(CB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 신청은 www.cbp.gov → Trade → eRuling Requirements → eRulings Template → Begin Application → Ruling Requester Information → Questions 작성 → Description 작성 → Attach 첨부 → Submit 순서임
- 원산지규정기준 상담지원은 각 지역의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가능함
- 예를 들어 서울본부세관의 경우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센터장(1명), 관세행정관(9명)으로 구성되어 FTA 활용, 원산지관리, 통관애로 해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 https://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34&layoutMenuNo=10080

VII. 보세제도

- 본 장에서는 재수출을 전제로 세금납부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보세화물과 보세구역의 제도적 특성을 중국 국내법령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 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현황(2018), 보세제도 개혁사례(2015) 등 비교적 최신 정보를 반영함

1. 보세화물

- 보세화물은 해관비준을 받고 납세 수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여 국내에서 장치·가공·조립 후 재수출하는 화물임¹⁰⁰⁾
- 해관의 감관하에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외국으로 재수출하는 화물을 의미함
- 중국의 보세화물의 통관절차는 계약등록 → 화물수입 → 장치 또는 가공 → 재수출 → 계약말소 종결의 순서임¹⁰¹⁾
- 계약등록은 보세화물 경영회사가 허가서·계약서·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100)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1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중국(2011) (2013)』

관할해관에서 계약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로 해관심사가 끝나고 등록을 마치면 등기수첩을 발급받게 됨

- 해관에 기등록한 계약상의 보세화물이 실제로 반입되었을 경우, 경영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이 발급한 등기수첩과 기타 증빙자료를 가지고 입항지 해관에 가서 신고하고 수입절차를 진행함
- 보세화물이 국내에 반입되면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장치하거나 또는 해관에서 허가한 가공생산기업에 교부하여 제조, 가공을 진행함
- 계약등록 만료 또는 가공제품 수출 후에는 일정기한 내에 경영회사가 가공무역 등기수첩과 수출입화물신고서 그리고 관련자료를 가지고 계약등록해관에 가서 등록말소 수속을 해야 함

2. 보세구역

- 보세구역은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구역을 의미함
 - 보세구역에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상태로 외국 물품의 장치, 검사, 제조 가공, 전시, 건설, 판매 등이 가능함
-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세구역을 지정하여 관세면제와 자유수출입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¹⁰²⁾
 - 국내외 수출입 업체의 보세구역 내에서 무역과 가공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보세구역의 수입화물과 보세구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입관세를 면제함
 - 보세구역에서 수출입되는 화물은 국가관리규정과 정상적인 세관 수출입 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대폭 간소화한 수출입 통관절차 및 세관관리방법을 적용함

102) 이성우, 「중국 세관특수구 제도 특성 분석」, 『해양물류연구』, 제5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1, p. 43.

- 중국의 보세구역은 보세감독관리장소와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海關特殊監督管理區域, 이하 해관특수구)으로 분리되어 설치·운영함¹⁰³⁾
 - 보세감독장소는 기업의 신청으로 해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한 보세창고, 수출감독창고, 보세물류센터(A형, B형)를 지칭함¹⁰⁴⁾
 - 해관특수구란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중국 국경 내에 설립되며 보세구, 수출가공원구, 보세물류원구, 보세항구, 과경공업원구, 종합보세구로 나뉨

- 보세구역 관련 법률은 보세구역 유형에 따라 다름
 - 보세창고는 「중국어관 보세창고 및 장치화물에 대한 관리 규정(中華人民共和國海關對保稅倉庫及所存 貨物的管理規定)」에서 규정함
 - 수출감독창고는 「중국어관 수출감독창고 및 장치화물에 대한 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對出口監管倉庫及所存貨物的管理方法)」에서 규정함
 - 보세물류센터는 「중국어관 보세물류센터(A형)에 대한 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對保稅物流中心(A型) 的暫行管理方法)의 수정을 관련 결정」 및 「중국어관 보세물류센터(B형)에 대한 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對保稅物流中心(B型) 的暫行管理方法)의 수정을 관련 결정」에서 규정함
 - 보세구는 「보세구 해관 관리·감독방법(保稅區海關監管方法)」에서 규정함
 - 수출가공구는 「중국어관 수출가공구에 대한 관리·감독의 잠행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對出口加工區監管的暫行方法)」에서 규정함
 - 보세물류원구 「중국어관 보세물류원구에 대한 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對保稅物流園區的管理方法)」에서 규정함
 - 과경공업구는 「중국어관 주오과경공업원구에 대한 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珠澳跨境工業園區管理方法)」에서 규정함
 - 보세항구 및 종합보세구는 「중국어관 보세항구에 대한 잠행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保稅港區暫行方法)」에서 규정함

103) 김영수·현인규·주엽, 『한중 보세구역제도 비교분석』, 한국물류학회, 2010. 12, p. 2.

104) 통상 보세감독관리장소는 보세감독장소로 축약해서 부름

〈표 2-VII-1〉 중국의 보세구역 유형

보세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보세창고
		수출감관창고
		보세물류센터 A형
		보세물류센터 B형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구
		수출가공원구
		보세물류원구
		보세항구
		과경공업원구
		종합보세구

- 보세창고란 세관에서 비준하여 설립하고 전문적으로 보세화물 및 기타 세관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의미함¹⁰⁵⁾
- 보세창고는 사용대상별로 공용 보세창고와 자사용 보세창고로 구분할 수 있음
- 공용 보세창고는 보관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국경내 독립기업법인에서 경영하고 전문적으로 일반인에게 보세창고 서비스를 제공함
 - 자사용 보세창고는 특정한 중국경 내 독립기업법인이 경영하고 단지 본 기업의 자사용 보세화물을 보관함
-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화물은 다음과 같음
- 가공무역수입화물
 - 보세화물
 - 국제항행 선박과 항공기에 공급하는 유료 및 물품과 정비용 부품
 - 외국 제품 정비에 공급하기 위해 수입한 우편송부(寄售) 부품
 - 외국인이 일시 보관하는 화물
 - 세관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일반무역화물

105) 「중국해관 보세창고 및 장치화물에 대한 관리 규정」 제2조

- 세관인가를 거친 기타 세관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화물

□ 수출감관창고란 세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세관수출통관을 완료한 화물에 대한 보관, 보세물류배송, 유통성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관의 전용관리 및 감독창고를 의미함¹⁰⁶⁾

○ 수출감관창고에는 수출배송창고와 국내이전창고가 있음

- 수출배송창고는 국외출국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함
- 국내이전창고는 국내이전에 사용하는 수출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함

□ 보세물류센터는 세관의 관리 및 감독 장소로 세관의 승인을 받은 중국 기업법인이 경영할 수 있음¹⁰⁷⁾

○ 보세물류센터의 기능은 유통성 단순가공, 부가가치 서비스, 국제중계무역, 국제 구매, 배송 및 국제환적, 검사 및 A/S 등임

○ 보세물류센터는 A형과 B형 두가지 종류가 있음

- A형의 경영기업 조건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구비한 기업, 등록자본금 3천만위안 이상, 전문화물보관 영업장소 및 영업장소의 토지사용권 보유(토지 및 영업장소를 임차한 경우 임차기한 3년 이상), 자사형 물류센터 경영기업은 연간수출입액이 동부지역 2억달러 이상, 중서부지역은 5천달러 이상 등임
- B형의 기업조건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구비한 기업, 등록자본 5천만위안 이상 등임

□ 해관특수구 중 보세구는 지방정부의 신청 및 국무원의 승인으로 설치되며, 반출입 물품, 운송수단 및 인원 등에 대하여 세관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세관 특수감시

106) (사)한국관세물류협회, 『특허보세구역 시설·장비 등 특허 요건 표준화 연구-보세창고를 중심으로』, 2009. 7, p. 99.

107) (사)한국관세물류협회, 2009, p. 97.

구역입

- 보세구 기능은 중계무역, 수출가공, 보세보관, 상품전시 등임
 - 보세구 설치에 대한 특별한 요건은 없으며, 지방정부 등의 설치신청에 대해 세관총서 동의와 국무원 관련기관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¹⁰⁸⁾
 - 2018년 기준 광둥(6), 복건(2), 상해(1), 천진(1), 렬녕(1), 강소(1), 해남(1), 절강(1), 산둥(1) 등 15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15곳은 연해항만지역으로 그중 7개는 경제특구 내에 위치하고 나머지 8개는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위치함¹⁰⁹⁾
- 수출가공원구는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을 하는 곳으로 세관이 관리 및 감독하는 특정구역이며 주로 하이테크 산업이 입주해 있음¹¹⁰⁾
- 세관은 수출가공구 내에 기관을 설립하고 가공구에 반입·반출하는 화물 및 구내 관련 장소를 24시간 관리·감독하여야 함
 -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경제기술개발구 내에만 설립이 가능하고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국무원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 보세물류원구는 국제물류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보세구 내에 또는 보세구의 특정 항구 내에 설치됨¹¹¹⁾
- 보세물류원구 기능은 유통성 단순가공, 부가가치 서비스, 국제구매, 국제배송, 중계무역, 국제환적, 세관 인가를 받은 기타 국제물류 업무 등임
 - 보세물류원구 입주기업은 법인자격을 보유하고 세관에 등록해야 하며, 직속세관이 승인 시 원구 밖의 법인기업이 원구 내에 분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¹¹²⁾

108) 해관특수구는 모두 다 국가소유이며 각급 지방정부의 행정소관임

1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csf.kiep.go.kr/news/M001000000/view.do?articleId=29711>(검색일자: 2018. 9. 3)

110) 중국개발구(中國開發區) 홈페이지: <http://www.cadz.org.cn>(검색일자: 2018. 9. 4)

111) 이성우(2010)

112) 이현찬 KOTRA무역투자상담센터 수출전문위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3006313274287>(검색일자: 2018. 9. 4)

- 보세항구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가 대외적으로 개방한 항구와 상호 연결된 특정구역 내에 설치된 장소로서 항구, 물류 및 가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세관특수관리구역임
 - 보세항구 기능은 통상구, 물류, 가공기능 통합, 창고물류, 대외무역, 국제구매 및 배송, 국제환적/검사 및 AS, 상품전시, 연구개발, 가공, 제조, 항구기능 등임
 - 세관은 보세항구를 반출입하는 운송수단, 화물, 물품, 보세항구 내의 기업 및 장소를 관리·감독함
 - 국외화물이 보세항구에 반입 시에는 보세처리하고, 국내화물이 보세항구로 반입 시에는 수출로 간주하여 환급하며, 국내기업 간 화물이동 시 증치세 등을 부과하지 않음

- 종합보세구는 세관 특수 관할 구역인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센터)의 모든 정책과 기능을 통합한 형태임
 - 종합보세구는 구역 내로 운송되는 외국화물에 대해 보세를 실시하며 구역 내로 운송되는 중국 국내화물은 수출화물로 간주하여 환급세를 적용받음
 - 기업은 종합보세구 내에서 보세창고 이용 및 가공과 제조, 대외무역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가급 종합보세구로 소주공업원, 천진, 북경, 해구, 광서 보세구가 있음¹¹³⁾

- 중국의 보세구역은 경제 및 무역활동을 위해 특별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경제특구, 경제기술발전지대, 항만의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함
 - 다수의 보세구역이 화남 및 화동 지역에 위치해 뚜렷한 지역성을 나타냄

113) 농촌진흥청, 『중국 보세구 활용방안 및 직구시장 현황과 전망』, 2016. 12, p. 11.

〈표 2-VII-2〉 중국의 보세지역 비교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보세물류구역
설립시기	1990년	2002년	2004년
개요	수출입 무역과 가공무역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제무역구역 국외로부터 수입한 원자재, 부품의 관세, 증치세 유보 제품이 수출될 경우 관세와 증치세 면제	가공구역 내에서 가공, 생산된 제품과 과세 대상 노동에 대한 증치세 면제, 브랜드에 따라 특혜 부여	보세구에 인접한 항만에 설치 화물의 반입을 수출로, 반출을 수입으로 인정
설립지역	대련, 천진, 청도, 상해 외고교, 장가항, 닝보, 복주, 하문, 산둥, 광저우, 심천 복전·소두각·염전, 주해, 해구	길림 훈춘, 대련, 북경, 천진, 연태, 위해, 장쑤, 소주, 상해, 쑹쑤, 항주, 샤먼 싱린, 선전, 광저우, 우한, 청두, 삼양, 청도, 제남, 레원강, 우루무치, 난징, 전장, 베이하이, 소주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상해, 칭푸, 자오허징, 상해민싱, 지아싱	상해 오고교, 장가항, 청도, 대련, 천진, 영파, 하문, 심천 염전
화물 대금 외화 결제	해외 조달품의 외화결제 허용 중국 국내 조달품의 외화결제는 각 지역 관리국에 따라 상이 상해지역은 불허	외화결제 허용	외화결제 허용
기업 설립 요건	제조업, 무역, 물류업, 은행, 컨설팅업	제조업, 제조를 지원하는 운수와 창고업	제품 판매에 대한 제한 없음
국내판매 규제	규제 없음	원칙적으로 불가(국내 생산품은 일부 가능) 비국내 생산품은 불가	제품 판매에 대한 제한 없음
중국생산 제품구 내 경유수출	가능	불가능	가능
수출 증치세 환급	해외로 수출이 최종 확인된 경우만 관련서류 발급(환급 신청용 서류) 그러나 실제 발급 어려움	구의 가공기업에서 수출가공구에 수출한 단계에서 환급서류 발급	구 외부에서 물류원구에 수출한 단계에서 환급서류 발급
적합기업	중국 국내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생산 기업과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기업	생산 제품의 대부분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제조 기업	중국 생산 제품을 중국 사용자에게 공급하려는 기업과 중국 생산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 (재고 거점 및 공급기지)

자료: 농촌진흥청, 2016, p. 5.

- 중국 보세감관장소 중 보세창고와 보세물류센터(A형)의 장치기간은 1년 이내(연장 1년)이며 수출감관창고 및 보세물류센터(B형)는 각 6개월 이내(연장 1년)와 2년 이내(연장 1년)임¹¹⁴⁾
- 해관특수구 중 보세항구와 종합보세구 화물의 장치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다만 2년 초과 시 신고해야 함
- 중국 정부는 기존 보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음
 - 보세제도 개혁사례는 보세구역 내에서 선반입·후신고 시행, 구역 내 기업은 화물이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임

〈표 2-VII-3〉 중국의 보세제도 개혁 사례(2015년)

-
- ✓ 선반입·후신고 시행
 - 항만에서 구역 내 창고 반입시간을 평균 2~3일에서 0.5일로 단축, 기업물류원가 평균 10% 하락 효과 예상
 - ✓ 구역 내 기업 화물이동자유화 시행
 - 기업물류원가와 통관시간 대폭절감, 시범운영결과 추산 매회 차량이동 30분 단축으로 기업 1년 물류비 약 20만원안 절감 효과
 - ✓ 임차용자시행
 - 상해모델(항운과금융, 해관보세제도 결합) 타 지역 시험구역 건설에 국내 제일의 임차용자일의 임차용자 특별지역과 금융혁신 특별지역, 금융혁신 실험구 건설지원
 - ✓ 자율반출입 집중신고 시행
 - 기업신고자율권확대, 신고횟수감소로 물류속도제고, 통관비용절감. 실험구 내 기업 “소량 다수신고” 수출입업무 편리를 제공하고 보세전시, 보세유지보수, 외주가공 등 업무에 기업경쟁력 제고
 - ✓ 조건부합창고기업 연합감독 시행
 - 기업신고절차간소화, 상이한 화물동일창고 보관기능으로 물류운영효율화, 기업운영비용절감, 대내외무역 통일관리
-

114) 이성우, 2010, p. 45.

-
- ✓ 보세전시장 교역 시행
 - 시험구 물리적 울타리 외의 장소에서 보세상태 전시 가능으로 기업은 경영수요에 따라 물류배송, 기판매된 화물 규정시일 내 집중신고와 납세 가능해짐. 기업물류비용과 최종 판매가 절감 및 물류운송 속도제고.
 - ✓ 일반 조력기구를 해관 보세관리와 기업심사에 도입 시행
 - 해관감시감독, 기업자율관리, 중간협조관리 및 사회관리 통일화로 기업자율관리지원 등 제3자 조력기구가 해관과 기업 사이에 공평, 공정을 보장하는 중재기구 역할
-

자료: 윤인재, 『중국세관의 통관개혁방향 및 시사점』, 관세청, 2015.

VIII. 수입규제제도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출장벽으로 작용하는 중국의 현행 수입규제실태를 관련법과 규제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보고서는 수입규제 범위를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대외무역장벽조사제도, 국가안보수호제재, 수입금지 및 제한,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 인증으로 제한함
-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주로 반덤핑관세부과,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을 중심으로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반덤핑 조치는 화학분야에, 무역기술장벽은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산업 등 전반적으로 적용되며, 위생 및 검역 조치의 경우 주로 식·의약품 분야에 집중됨

1. 중국의 수입규제제도

- 중국의 주요 수입규제수단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대외무역장벽조사제도, 국가안보수호를 위한 제재,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 인증 등이 있음¹¹⁵⁾

115) 박노성, 『중국의 덤핑, 보조금 조치에 관한 연구』, (사)국제공정무역학회, 2012. 11. pp. 2~22.

- WTO 협정이 승인하는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세이프가드 조치는 「대외무역법」과 「총리령」을 통해 규정함
- 대외무역장벽조사제도는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을 통해 규정함
- 국가안보수호를 위한 제재는 「대외무역법」을 통해 규정함
- 무역기술장벽과 위생 및 검역 조치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총국 TBT/SPS 조치 관련 통보, 평의, 자문 업무규칙」에서 규정함
- 인증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다름

〈표 2-Ⅷ-1〉 중국의 수입규제 관련 법령

수입규제제도	수입규제수단	관련법	해당조항 (법률, 총리령, 부령) ¹⁾
	반덤핑관세부과	「대외무역법」 ²⁾	제41조, 제42조(법률)
		「반덤핑조례」	총 59개 조문(총리령)
	상계관세부과	「대외무역법」	제43조
		「반보조금조례」	총 58개 조문(총리령)
	세이프가드 조치	「대외무역법」	제44조
		「세이프가드조례」	총 34개 조문
	대외무역장벽 조사규칙	「대외무역장벽 조사규칙」	총 37개 조문 (부령)
	국가안보수호제재	「대외무역법」	제3장 화물수출입 및 기술수출입 제17조
	수입금지 및 제한	「대외무역법」	제16조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제2장
	무역기술장벽(TBT)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총국 TBT/SPS 조치 관련 통보, 평의, 자문 업무규칙	-
	위생 및 검역(SPS)		
	인증 ³⁾	「식품안전법」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수출입상품검사법」	품목별로 상이(예 식품의 경우,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보건식품등록관

	수입규제수단	관련법	해당조항 (법률, 총리령, 부령) ¹⁾
		「농산품품질안전법」 「행정허가법」 「표준화법」 「국가배상법」	리방법, 수입식품수출입업체등록관리규정,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 수출입유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보건식품등록 및 비안관리방법, 영유아조제분유제품배합등록관리방법 등이 있음

주: 1) 중국의 법령체계는 법률>총리령>부령 순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해당함

2)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은 2016년 개정본 기준임

3) TBT, SPS 정책 중 인증제도가 포함되나 수입 품목별 인증유형과 절차가 다르므로 보고서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함

자료: 해당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무역구제조치 관련 규정은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 규제에 관한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함¹¹⁶⁾

○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WTO 규정에 따라 미국, EU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서 마련되었음¹¹⁷⁾

- 동법은 1994년 6월 제정하였고, 2004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함

- 제정 당시 무역구제제도의 내용과 집행절차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으로 평가됨¹¹⁸⁾

□ 「대외무역법」은 수입상품의 대외무역조사결과에 따라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대외무역법」은 반덤핑관세부과(제41조 및 제42조) 및 상계관세부과(제43조)에

116)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WTO 규정에 따라 미국, EU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서 마련되었음.

마광, 『중국과 한국의 대외무역장벽조사 법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2007. 6, p. 208.

117) 마광, 2007, p. 208.

118) 한국국제통상학회, 『중국, 인도의 무역구제제도와 한국에의 시사점 연구』, 2016. 10, p. 31.

대해 규정함

-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된 조항은 동법 제8조(무역관련차별조치에 대한 보복조치), 제37조(세이프가드 조사), 제38조(조사방법 및 결과의 공고), 제40조(무역구제조치를 통한 국가이익 보호), 제44조(세이프가드조치), 제46조(제3국 수입규제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제47조(경제무역조약·협정 당사국의 위반에 대한 보복조치), 제48조(대외무역 관련 협상 및 분쟁해결), 제50조(「대외무역법」을 위반한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반회피조치) 등임
-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관련 무역구제제도에 상세내용은 조례를 통해 규정함¹¹⁹⁾
 - 「반덤핑조례」는 총 6장, 59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총칙, 덤핑 및 피해, 반덤핑조사, 반덤핑조치(잠정조치, 가격약속, 반덤핑관세), 기한과 재심, 부칙에 대해 규정함
 - 「반보조금조례」는 총 6장, 58개 조문으로 총칙, 보조금 및 피해, 반보조금조사, 반보조금조치(잠정조치, 가격약속, 상계관세), 기한과 재심, 부칙, 수출보조금 리스트로 구성됨
 -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세이프가드)조례」는 총 5장, 34개 조문이며 총칙, 조사, 세이프가드 조치, 기한과 재심, 부칙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조례의 부칙은 보복 및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규정함
- 중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모두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운영함
 - 상무부 산하의 수출입공정무역국(Bureau of Fair Trade for Import & Export)은 덤핑조사 업무를 담당하며, 산업피해조사국(Bureau of Industrial Injury Investigation)이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를 조사함
 - 상무부는 2003년 3월 설립되었으며 그 전에는 대외경제협력부(MOFTEC)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로 업무가 이원화된 형태였음

119) 중국법 체계상 「대외무역법」은 법률(law), 조례는 행정법규인 총리령(rule), 부문규장은 부령(regulation)에 해당

-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중국의 수입규제 공고, 무역 통계, 외국 투자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http://english.mofcom.gov.cn/Policies>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Tariff Commission of State Council)는 상무부의 권고를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 덤핑, 보조금,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정되면, 수입에 대한 규제조치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짐
 - 덤핑 및 보조금 성립에 대한 최종판정이 확정되면 최종판정 공고일 이후 수입된 제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적용함
 -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확정된 경우 관세율인상, 수량제한 등의 최종조치를 취할 수 있음¹²⁰⁾

나.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은 상위법인 중국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2005년 제정된 부문규장임¹²¹⁾
 - 현행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은 2002년에 제정한 「대외무역장벽조사잠정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2005년 3월 1일에 발효됨
- 중국이 잠정규칙을 제정하고 3년 뒤 개정한 이유는 대외무역장벽규정이 관련 국내법과의 조화 필요성, 현실에서 잠정규칙의 적용상 문제점 및 국무원 산하 대외무역장벽을 주관하는 기관의 개편 등임
- 동 규칙은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 분야의 불합리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자 마련됨

120) 「세이프가드조례」 제19조

121) 상무부령

- 대외무역장벽조사업무를 전개하고 규범화하며 국외무역장벽이 중국 대외무역에 대한 영향을 해소하고 대외무역의 정상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함¹²²⁾
-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에 따르면,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동 규칙을 발동할 수 있음
- 외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 또는 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간주함¹²³⁾
 - i) 동 국가(지역)와 중국이 공동 체결, 공동 참가한 경제무역조약 또는 협정을 위반하거나 협정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ii)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무역 영향들이 발생한 경우
 - 중국 제품 또는 서비스가 동 국가(지역) 시장이나 제3국(지역) 시장으로 진출 하는데 방해 또는 제한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중국 제품 또는 서비스가 동 국가(지역) 시장이나 제3국(지역) 시장에서 경쟁 력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동 국가(지역)나 제3국(지역)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중국으로의 수출에 방해 또는 제한을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외국의 조사대상 조치가 무역장벽을 구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무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양자협약, 다자간 분쟁해결제제이용, 기타 적당한 조치 사용임¹²⁴⁾
 - 동 규칙은 관세 또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으나, 기타 적당한 조치의 사용이 보복조치 건의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음¹²⁵⁾
- 무역장벽조사 및 판정 담당기관은 상무부로 무역구제 담당기관과 동일함

122)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제1조

123)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제3조

124)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제33조

125) 마광, 『중국과 한국의 대외무역장벽조사 법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p. 225.

다. 국가안보관련 제재

- 중국은 「대외무역법」을 통해 국가안보위협을 근거로 수입물품에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해당 조항은 제3장 제17조(화물수출입 및 기술수출입)로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음
 - 국가는 핵분열 융합물질 또는 유도체 같은 물질과 관련한 화물 기술수출입 및 무기 탄약, 기타군용물질과 관련한 수출입에 대해 어떠한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가의 안전을 유지함¹²⁶⁾
 - 전쟁시기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화물 기술수출입 방면에서 어떠한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음¹²⁷⁾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은 있으나, 이를 근거로 무역제재조치를 취한 적은 없음

라. 수입금지 및 제한

-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함
 - GATT 협정에서는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식재산권 보호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입금지를 허용하고 있음
- 중국은 다음의 원인에 근거하여 관련 화물·기술의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¹²⁸⁾
 - 국가안전·사회 공공이익 또는 공중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126) GATT 제21조 제(a)항에 해당함

127) GATT 제21조 제(c)항에 해당함

128)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16조

-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 황금 또는 백은 수출입과 관련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입이나 수출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갈 가능성이 있는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 제한이 필요한 경우
 - 수출대상 국가나 지역의 시장 용량의 한계로 수출 제한이 필요한 경우
 - 수출경영질서가 심각하게 혼란하여 수출 제한이 필요한 경우
 - 국내 특정산업의 육성 또는 육성의 가속화를 위하여 수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 모든 형태의 농업·목축업·어업제품에 대하여 수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 국가의 국제금융지위와 국제수지평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하는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협정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하는 그 밖의 경우
- 구체적으로 중국이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중고 기계전자설비, 무기류, 예술품, 생물, 화학물질, 통화, 위험물, 전자제품, 식품, 가죽, 주류, 기계, 의약품, 기타, 담배, 목재 등임¹²⁹⁾
- 단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이 인정한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은 인정됨

〈표 2-VIII-2〉 중국의 수입금지 및 제한 물품 목록

	카테고리	품목
수입금지	중고품	중고 기계전자 설비
	무기류	총기, 무기, 탄약 및 부품, 군사 장비, 모조 총기, 장난감 총
	예술품	고가의 골동품, 문화 유산

129) 중국해관 홈페이지, <http://english.customs.gov.cn/service/guide?c=e6fb7440-5df2-4e87-bf92-c4eb697324d8>(검색일자: 2018. 9. 4)

	카테고리	품목
	생물	동물제품, 동물성 오일과 지방, 항체, 바이러스, 박테리아, 혈액, 뼈, 살아 있는 동물, 곤충, 어류, 조류, 식물, 씨앗, 곡물 또는 토양 샘플, 각종 곡물류, 말린 과일, 견과류, 가축, 죽은 동물의 사체, 유해 및 유골의 조직
	화학물질	생화학 폐기물, 연료 샘플, 석유 제품
	통화	동전, 지폐 등 현금 및 주식, 채권 같은 현금성 유가 증권
	위험물	폭발물, 가스, 인화성 액체, 배터리, 독성 및 전염성 물질
	전자제품	유해 폐기물
	식품	과일, 야채 같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
	가죽	동물 가죽, 모피
	주류	모든 주류 및 알코올 음료
	기계	레이더 장비
	의약품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 약물 샘플, 사용된 주사기, 피하 주사바늘 등 유해한 의료 폐기물, 의료장비
	기타	분말 또는 액체 형태로 된 모든 제품, 아타카르네 통관이 필요한 제품, 위조 제품, 복권 및 도박 제품, 냉장 보관이 필요한 부패하기 쉬운 제품, 포르노 및 음란물, 보석, 귀금속, 멸종 위기 동물 및 야생 동물로 만든 제품
	담배	전자 담배, 모조 담배 포함
	목재	석탄, 장작, 가공되지 않은 목재
수입제한	예술품	고가의 미술품
	화장품	일반화장품
	통화	수표, 신용카드
	전자제품	휴대전화, 컴퓨터, 데스크 탑 컴퓨터, 노트북, 랩탑
	영상매체	복사본, 마이크로 필름, 네거티브, 슬라이드
	기타	모조 보석을 포함한 보석류, 시계

자료: 중국해관, <http://english.customs.gov.cn/Statics/60bd5834-2a8f-4d60-99bc-210759b7229b.html>; 물류회사, http://www.qxpress.asia/html/prcenter_prohibited_items_view.html?nid=166 참고(검색일자: 2018. 9. 5)

- 수입제한 화물의 경우 국가에서 수량을 제한하는 쿼터관리를 실행하며, 쿼터관리 외의 수입제한화물은 허가증 관리를 시행함

- 정부는 수입제한화물의 쿼터 또는 허가증 관리를 통해 해당 상품의 수입량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상품 수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대외무역법」 제19조 전문: 국가는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하여 쿼터·허가증 등의 실시방식으로 관리한다.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하여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쿼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기술은 국무원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당해 부서와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수입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국가는 일부 화물에 대하여 관세쿼터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수입쿼터 관리품목은 기계, 전기제품, 공업제품 등임
 - 전기제품은 기계설비, 전기설비, 교통운송수단, 전자제품, 가전제품과 계기계량기 등과 관련 부품, 소재를 포함함
 - 공업제품은 석유완제품, 자동차 타이어 등을 포함함
- 기존의 수입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적용 품목이 조정되어 시행함
 - 2017년 수입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을 새로 발표함과 동시에 2016년 목록을 폐지함
 - 2017년 수입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은 화학장비, 금속 및 합금 용행 장비, 건설기계, 리프팅 운송장비, 제지장비, 전기 및 전기장비, 식품가공 포장장비, 농업기계, 인쇄기계, 섬유기계, 선박클래스, 토너 카트리지 등임¹³⁰⁾

130) <http://wms.mofcom.gov.cn/article/zcfb/g/201612/20161202454764.shtml>(검색일자: 2018. 9. 6)

마. 무역기술장벽(TBT)과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¹³¹⁾

-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이하 TBT)과 동·식물 위생 및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TBT/SPS 조치 관련 통보, 평의, 자문 업무규칙」을 근거로 함
 - 동 규칙은 총국 TBT/SPS 조치의 통보, 평의, 자문 등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WTO 관련 협정과 중국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함
- 중국의 TBT 정책은 강제 인증제도, 자발적 인증제도,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를 실시하고 기술규정, 표준, 시험, 인증 등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고 있음
 - WTO 회원국이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 요건 등을 개정할 때에는 TBT 통보문을 통하며, 이는 회원국에게 개정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기술규정, 개정, 추가, 정정 등의 내용을 담음
 - 기술규정이란 적용 가능한 행정조항을 포함하면서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임
 - 표준은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사용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이며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임
 - 적합성평가절차란 기술규정 또는 표준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임
- 2017년 기준 중국의 TBT 통보문의 발행건수는 총 58건임¹³²⁾
 - 주요 통보문 적용 분야는 전기기기, 유·무선통신, 화석에너지, 자동차, 가전기기, 의료기기 등임

131) TBT는 무역상대국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것이며, SPS는 동물과 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의 질병원인체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수입제한 조치임

132)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bt_e/tbt_e.htm, TBT 통보문이 많은 국가일수록 기술장벽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됨. knowtbt, www.knowtbt.kr(검색일자: 2018. 9. 6)

- (사례) 가장 최근인 2018년 7월 발행한 통보문은 미세-선량 X-선 보안검사 장치에 대해 후방산란물체 보안검사장치의 장비 분류, 일반 기술요건, 시험방법, 검사규칙, 포장, 표식, 보관과 운송, 첨부 기술문서에 따라야 함을 명시함

□ 하지만 중국의 TBT상 기술규제는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국제기술수준에 비해 불투명함¹³³⁾

- (사례1) 중국은 자국의 IT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 표준제정을 추진 중임
 - 독자적 무선랜 암호화 표준인 WAPI는 국제표준과 호환성이 없는 암호표준으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한 무선랜 암호표준 802.11을 도입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태롭다는 이유로 독자적 표준제정을 의무화하고자 함

□ 중국의 SPS 조치 유형은 특정 농수산품에 대한 검역기준,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등이 대표적임

- 중국은 특정 비조리·발효식품에 대해 생물 규격이 엄격하며, 특수영양식품과 보건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CFDA) 위생허가를 받아야 함

133) 유왕위, 『중국 기술무역장벽 조사를 통한 중국 수출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7. 2, p. 45.

[그림 2-VIII-1] TBT 통보문 공시 예시

	WORLD TRADE ORGANIZATION	G/TBT/N/CHN/1285
(18-4794)	30 July 2018	Page: 1/1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riginal: English	
NOTIFICATION		
The following notification is being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6		
1. Notifying Member: CHINA If applicable, name of local government involved (Article 3.2 and 7.2):		
2. Agency responsible: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 Name and address (including telephone and fax numbers, email and website addresses, if available) of agency or authority designated to handle comments regarding the notification shall be indicated if different from above:		
3. Notified under Article 2.9.2 [X], 2.10.1 [], 5.6.2 [], 5.7.1 [], other:		
4. Products covered (HS or CCCN where applicable, otherwise national tariff heading. ICS numbers may be provided in addition, where applicable): Micro-dose X-ray security inspection system; Protection against crime (ICS 13.310).		
5. Title, number of pages and language(s) of the notified document: National Standard of the P.R.C, Micro-dose X-ray Security Inspection System Part 5: Backscatter Object Security Inspection System. (33 page(s), in Chinese)		
6. Description of content: This standard specifies the equipment classification, general technical requirements, test methods, inspection rules, packaging, mark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and attached technical documents of backscatter object security inspection system. This standard applies to all kinds of backscatter object security inspection system, the designing, manufacturing, checking and acceptance, and using of these kinds of equipment should be based on this standard. This standard does not apply to the portable backscatter object security inspection equipment.		
7. Objective and rationale, including the nature of urgent problems where applicable: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Quality requirements		
8. Relevant documents: -		
9. Proposed date of adoption: 90 days after circulation by the WTO Secretariat Proposed date of entry into force: 6 months after adoption		
10. Final date for comments: 60 days from notification		
11. Texts available from: National enquiry point [] or address, telephone and fax numbers and email and website addresses, if available, of other body: WTO/TBT National Notification and Enquiry Cent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el.: +86 10 57954629/57954627 E-mail: tbt@aqsiq.gov.cn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8/TBT/CHN/18_4062_00_x.pdf		

자료: WTO 홈페이지,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bt_e/tbt_e.htm
 (검색일자: 2018. 9. 6)

바. 인증¹³⁴⁾

- 수출 품목에 따라 필요한 인증유형이 다르나, 수출자들에게 중국의 인증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CFDA와 CCC 인증임
 -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CFDA) 인증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강제인증임
 - CCC는 공산품에 적용되는 강제인증임

1) 식품

- 중국의 식품인증은 법률, 법규, 규범성 문건, 기술표준 등을 통해 제도를 운용함
 - 법률에는 「식품안전법」,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수출입상품검사법」, 「농산품품질안전법」이 있음
 - 법규에는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보건식품등록관리방법」, 「수입식품수출입업체등록관리규정」,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 「수출입유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보건식품등록 및 비안관리방법」, 「영유아조제분유제품배합등록관리방법」이 있음
 - 규범성 문건으로 「보건식품명명규정」, 「진일보규범보건식품원료관리에 관한 통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라벨관리방법」, 「인삼의 신자원식품 등록」 공고가 있음
 - 기술표준으로 각 제품의 중국 국가표준 및 GB 표준이 있음
- 식품은 분야별로 일반식품, 가공식품, 보건식품, 조제분유, 유기농 인증품으로 분류함
 - 일반식품에는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이 포함됨

134) KITA,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 2016.

- 가공식품에는 전복캔류, 참치캔류 등을 포함한 농·수산 가공식품과, 라면류, 과자류, 빵류, 음료수류, 삼계탕, 김치류, 우유류 등을 포함한 일반가공식품이 있음
 - 보건식품에는 영양소보충제, 기능성 보건식품이 해당됨
 - 조제분유는 영유아 조제분유와 특수조제 영유아분유가 해당됨
 - 유기농 인증품으로 육류가공제품, 수산가공제품, 야채, 과즙, 과일과 견과류 식물성 기름, 곡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등을 포함한 가공식품, 가공사료, 술, 방직용 천연섬유 및 옷이 해당됨
- 인증발행기관으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AQSIQ), 국가위생과계획생육위원회(NHFPC),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가 있음
- CFDA는 중국의 식약처로 식품안전 법률 초안을 작성하고 식품 행정허가 절차의 제정 및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임
 - AQSIQ는 중국의 상품검사, 위생검사, 동·식물검역, 식품안전과 인증인가, 표준화 등을 담당하는 기관임
 - NHFPC는 식품 안전표준을 결정하고 식품, 식품첨가제 및 관련 제품 신원료, 신품목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기관임
 - CNCA는 중국 인증 및 인가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임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산하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단일강제 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를 포함한 중국의 적합성평가업무를 총괄함
- 일반식품, 가공식품의 경우 인증절차가 불필요함
- 인증절차가 없으므로 중문라벨을 부착하고 AQSIQ 전산등록 후 중국에 수출을 진행하면 됨
 - AQSIQ는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되고, 생산기업과 수출기업 모두 등록해야 함
 - AQSIQ 전산등록 여부는 <http://ire.eciq.cn>에서 확인 가능함

- 보건식품 수출 시 CFDA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획득에 최소 6개월~최대 5년까지 소요됨
- CFDA 획득 절차는 보건식품 등록 → 행정수리 → 신청서류 심사평가 → 필요 시 생산현장 심사 → 검사대조 심사 → 행정심사 비준 → 등록증 발급 순서임
- 보건식품 등록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보건식품 등록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청자료 진실성 관련 법률책임 승낙서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인, 연구개발시간, 연구제조 과정, 검증데이터, 목록 외의 원료 및 제품의 안전성, 보건기능, 품질관리에 대한 논증보고서와 과학적 근거, 연구개발 결과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확정한 제품기술 관련 자료 등
 - 제품 배합자료, 원료 및 보조재의 명칭과 사용량, 생산공정, 품질표준, 필요 시 규정에 따라 원료 사용근거, 사용부위에 대한 설명, 검사 합격증명 및 품종 검증보고서 등
 - 제품 생산공정자료, 생산공정 약도 및 설명서
 - 안전성 및 보건기능 평가자료, 목록 외의 원료 및 제품의 안전성, 보건기능 시험평가자료, 복용관련 평가자료, 효능성분 혹은 지표성분의 위생학, 안정성, 균종검증, 균종 독리화시험보고서, 흥분제 및 금지약품 성분에 대한 검사보고서
 - 보건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의 종류, 명칭, 관련 표준 등
 - 제품라벨, 설명서 견본, 제품 통용명칭 중복여부 관련 검색자료
 - 최소포장 샘플 3개
 - 기타 제품등록 심사평가 관련 자료

〈표 2-Ⅷ-3〉 보건식품 CFDA 지정 검사기관(58개소)

1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	30	호남성직업병예방치료원
2	북경시약품검사소	31	사천성식품약품검사소
3	북경시질병예방통제센터	32	사천성질병예방통제센터

4	천진시약품검사소	33	하북성식품약품검사원
5	절강성식품약품검사연구원	34	길림성식품약품검사소
6	절강성질병예방통제센터	35	길림성질병예방통제센터
7	광둥성식품약품검사소	36	흑룡강성질병예방통제센터
8	광주시약품검사소	37	북건성약품검사소
9	심천시약품검사소	38	산둥성식품약품검사소
10	남경의과대학위생분석시험센터	39	산둥성질병예방통제센터
11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	40	하남성질병예방통제센터
12	중국검사검역과학연구원 종합시험센터	41	광둥성질병예방통제센터
13	충후방지원부위생부약품 의료기기검사소	42	광서장족자치구식품약품검사소
14	천진시질병예방통제센터	43	광서장족자치구질병예방통제센터
15	요녕성식품약품검사소	44	하얼빈의과대학위생검사센터
16	요녕성질병예방통제센터	45	산둥대학위생분석시험센터
17	상해시식품약품검사소	46	사천대학화서공공위생학원 분석시험센터
18	상해시질병예방통제센터	47	하북성질병예방관리센터
19	강소성식품약품검사소	48	길림성중의약과학원
20	강소성질병예방통제센터	49	절강성의학과학원
21	안휘성식품약품검사소	50	산둥성의학과학원 의학시험과안전성평가센터
22	북건성질병예방통제센터	51	산서성중의약연구원 식품화장품시험검정센터
23	강서성식품약품검사소	52	중국질병예방통제중심 영양과건강소
24	강서성질병예방통제센터	53	북경연합대학응용문리학원 보건식품공능검측중심
25	하남성식품약품검사소	54	강소출입검험검역국 동식물과식품검측중심
26	호북성식품약품감독검사연구원	55	소주시식품약품검사소
27	호북성질병예방통제센터	56	항주시식품약품검험연구원
28	호남성식품약품검사연구원	57	안휘성의학과학연구원
29	호남성질병예방통제센터	58	하문시약품검험소

자료: CFDA 홈페이지

- 영유아 조제분유의 경우 제품배합 등록관리가 필요하며 보건식품과 같이 CFDA 인증이 필요함
- 유기농 인증은 2014년 4월부터 적용된 것으로 유기농원료 함량이 95% 이상인 제품에만 유기농 상품인증을 부여함
 - 동 인증을 받은 제품만 포장 및 라벨링에 유기(organic)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음
 - 유기농 제품 인증을 담당하는 기구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며, 수입 유기농제품의 경우 인증과 판매를 관리하는 기구는 각 지방의 출입경검험검역기구임
- 유기농식품 인증 대상은 총 127종류 제품이 해당되며, 화장품, 꿀, 구기자, 물, 소금은 유기농 인증 목록에서 제외됨
 - 유기농 인증 목록의 대부분은 유기농 식품이며 일부 식용약재, 의류 및 방직원료, 동물용 사료가 있음
 - 유기농 생산제품에는 야채, 과일, 곡물, 가축, 수산 등이 있음
 - 유기농 가공제품에는 육류가공제품, 수산가공제품, 가공 또는 보관용 야채, 과즙, 야채즙, 가공 또는 보관용 과일과 견과류 식물성기름, 유제품, 곡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전분, 가공사료, 제빵류, 면, 술, 방직용 천연섬유, 옷 등이 있음
- 유기농 식품 인증을 위한 신청자 자격과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신청자 자격 요건은 5가지임
 - 인증 위탁인과 관련된 생산, 가공 제품이 인증위탁 관련 법규와 질량안전위생 기술표준 및 규범의 기본요구에 부합할 것
 - 인증 위탁인은 유기농 제품 관리체계를 운영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신청인증 제품이 국가감찰위원회에서 공표한 <유기농제품인증목록> 내에 있을 것
 - 인증 위탁인에게 「유기농제품 인증관리방법」 제44조에 열거한 사항들이 5년 내에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인증 위탁인은 1년 이내에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증서 취소를 당하지 않아야 함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사업자등록증 부분, 조직대마기구증, 토지사용권증명과 계약서 등 합법적인 경영자격이 있다는 문서 복사본
 - 인증 위탁인 명칭, 주소, 연락방식, 생산지 혹은 가공장소 상황, 신청인증의 제품 명칭, 품종, 생산규모(면적, 생산량, 수량, 가공량 등), 3년간 생산, 가공에 대한 상황을 설명한 자료, 신청하고 획득한 기타인증 상황 등의 설명자료
 - 생산지역 범위 묘사(지리위치, 땅의 분포, 완충지와 생산주변 인근 땅의 사용 상황을 포함), 가공장소 주변 환경 묘사(물, 공기의 무오염 여부), 공장의 평면도, 생산공정도 등
 - 유기농 제품 생산, 가공계획, 생산과 가공환경의 적합평가, 생산방식, 가공공정 및 프로세스 설명과 증명자료
 - 금년도 유기농 제품 생산, 가공계획과 전년도 판매량, 판매액과 주요판매시장 등의 자료

2) 화장품

- 2016년 12월부터 시행한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은 화장품의 위해물질 안전관리와 화장품 감독관리 효율성, 여러 검사 방법 등을 다루고 있는데 해당법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이 불가함
- 동 규범은 2007년 제정한 「화장품 위생규범」의 개정판임
-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CFDA가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취득해야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함
-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CFDA에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발급됨

-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비특수화장품과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며, 해당 품목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 비특수화장품은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제10조에 열거되지 않은 화장품류를 통칭함
 - 특수화장품이란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제10조에 열거된 욱모, 염모, 탕파, 탈모, 미유, 건미, 제취, 거반, 방쇄의 용도로 사용되는 화장품을 말함

- 비특수화장품은 심사허가제로, CFDA가 발급하는 위생허가증이 있어야 수출 가능함
 - 제품 성분이 중국에서 사용 가능한 목록에 포함되는지, 원료의 총 사용제한과 배합제한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 비특수화장품의 위생허가 인증절차는 사전검토 → 재증책임회사 선임 → 접수서류 준비 → 시험 및 검측 → CFDA 행정접수 → 위생허가증 발급 순서임
 - 사전검토 단계는 신청하는 제품의 중국 인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제조자 확인, 위탁생산 시 제조업체에서 ISO/GMP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함¹³⁵⁾
 - 재증책임회사 선임 단계는 제품 판매 시 위생허가증 원본을 소유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중국 회사를 선임하는 단계로 주로 제조판매업자의 중국 지사, 총대리상, 지인의 회사, 대리업체, 혹은 법률사무소 등을 재증책임회사로 지정함¹³⁶⁾
 - 접수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위생허가증을 신청하는 제품이 중국 법규에 부합하는지 확인,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됨
 - 시험 및 검측 단계에서는 중국 기술안전법규에 따라 처방된 성분과 단상자(전개도)로 시험검측을 진행함
 - 인정되는 시험검측 보고서는 CFDA가 공인한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 CFDA 행정접수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CFDA에

135) 사전검토 서류로는 제조판매등록증, 신청제품의 단상자상 제조판매원 표기, 위탁생산 시 제조업체의 ISO 또는 GMP, 제조판매증명서 등이 있음

136) 재증책임회사란 위생허가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중국 내 법인을 말함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44037>(검색일자: 2018. 9. 6)

위생허가증을 정식 접수하는 단계임

- 신청서류는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 제품 증문명칭 명명 근거, 제품처방, 제품 품질 안전 통제 요구, 제품 원 포장, 검측보고서, 안전성 평가지표, 수권서, 수락수권서, 영업집조, 광우병 유발 원료 미첨가 확인서, 제품 생산국 또는 원산국의 제조판매증명서류, 행정허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자료, 생산 공정의 간략한 서술 및 공정도, 화장품 제품기술요구의 문서본과 전산파일임

- 위생허가증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연장 신청은 종료 6개월 전에 가능함
- 발급여부는 <http://www.cnca.gov.cn/bsdt/ywzl/jkspjwscpqzc>에서 확인 가능함

□ 비특수화장품의 위생허가증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8개월 이상임

- 통상 서류준비 2개월+시험검사 3개월+행정심사 3개월임
- 위생허가증은 각각의 제품별로 발급되므로 동일 기업의 동일계열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각각의 허가번호를 취득해야 함

□ 특수화장품은 등록심사제로, 비특수화장품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지만 시험 및 검측 시 특수화장품에 대한 추가 검측과 심사를 거쳐서 비특수화장품보다 엄격한 위생허가증 발급이 이뤄짐

- 시험검측에서는 비특수화장품과 같이 특수화장품 기능성 시험이 추가됨
- 특수화장품 제출서류에는 비특수화장품 필요서류에 인체안전성 검사보고서, 일소방지화장품 일소방지효과 시험 보고서가 추가됨

□ 화장품 인증 발행기관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AQSIQ)임

- CFDA는 화장품의 안전을 감독관리하는 기관으로 화장품 안전 법률법규 초안을 작성하고, 화장품 행정허가 절차의 제정 및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임

- AQSIQ는 수출입 화장품 안전과 인증 인가, 수출입 화장품 및 생산업체의 위생 등록, 수출입 항구에서 화장품의 검사와 검역을 담당함

- 특수화장품의 위생허가증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2개월임

- 서류준비 2개월+시험검사 5개월+행정심사 5개월임

3) 의료기기

- 2014년부터 시행한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를 근거로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품목은 의무적으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 함¹³⁷⁾

- 구체적인 부서규정은 「체외진단시약등록관리방법」, 「의료기기설명서와 라벨관리 규정」, 「의료기기생산감동관리방법」, 「의료기기경영감독관리방법」에서 규정함

- 동 조례는 의료기기의 개발, 생산, 판매, 사용을 규제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임

- 의료기기란 인체에 직·간접 사용되는 기기, 설비, 기구, 체외진단용 시약 및 교정물, 재료 및 기타 관련제품으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개념임

- 질병의 진단, 경감, 예방, 치료 또는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처의 진단, 경감, 치료, 완화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생리구조 또는 생리과정 검사, 대체, 조절 또는 지속
- 생명지속 또는 유지
- 임신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의료 또는 진단 목적으로 인체의 샘플 검사를 통해 정보제공

137) 동 조례는 2014년 제정된 신조례로 구조례는 2000년 제정되어 2014년 5월에 시행종료됨

□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함¹³⁸⁾

- 1등급 의료기기는 위험도가 낮고 통상적인 규정을 통해 그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임
- 2등급 의료기기는 위험도가 중간이고, 엄격한 통제관리를 통해 그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임
- 3등급 의료기기는 위험도가 높고, 특별조치로 엄격한 통제관리를 통해서 그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임

□ 2등급 및 3등급 의료기기 신고 시 1등급 의료기기 신고과정에는 없는 제품시험과 임상시험 절차가 추가됨

- 1등급 의료기기 신고절차는 제품분류확정 → 중국 대리인지정 → 신고서류 작성 → 시험보고서 준비 → CFDA에 심사자료 제출 → 자료보완 통보 → CFDA 신고완료 순서임
- 2등급 및 3등급 의료기기 신고절차는 제품분류확정 → 중국 대리인지정 → 등록서류 작성 → 제품시험(시험샘플준비) → 임상시험 → CFDA 등록자료 제출 → CFDA 기술문서 심사, 보완통보 → 의료기기 등록증 완료 순서임
 - 제품시험은 시험검사 계약서, 제품기술요구, 제품설명서 등 서류와 함께 CFDA에서 지정한 시험소로 샘플을 보내서 진행함
 - 임상시험은 GCP 임상시험품질규범에 부합해야 하고, 임상시험 제출자 소재지 지방식품약품감독부서에 신고해야 함

□ CFDA 심사 단계 조회는 <http://www.cmde.org.cn/schedule/scheduleSearch1.jsp>에서 가능함

- 접수수리번호, 접수일자, 신청기업명, 접수수리통지서에 나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함

138) 의료기기분류목록 확인처, <http://www.sda.gov.cn/gyx02302/flml.htm>(검색일자: 2018. 9. 6)

4) 공산품

- 중국은 공산품에 대한 인증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에서 규정함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14조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에 근거하여 제품의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함
 -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 제14조는 강제성 표준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생산과 판매, 수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함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제24조는 국가상품검사기구인 국내 일률의 인증제도를 기초로 관련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인증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함
- 중국의 공산품 인증은 크게 CCC와 CQC 인증이 있음
 - CCC 인증은 중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강제인증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는 제도임
 - CQC 인증은 중국 제품 임의인증의 한 종류로써 중국 최대 인증기관인 CQC의 제품 임의인증임
 - 임의인증은 수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증은 아니나 소비자의 선호 및 제품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증을 취득함
- CCC 인증의 대상제품은 전기전자, 자동차, 농업기계, 소방 및 방범용품, 유아용품 분야 등 총 21개군 145종이 있음¹³⁹⁾

139) 본 원이 발간한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중국(2013)은 23개 분야 214개 품목이라고 적혀 있으나 2018년 8월 기준 145종으로 변경됨

〈표 2-VIII-4〉 중국의 CCC 인증 대상제품

대분류	정의	해당업종
1	전선 및 케이블(5종)	전기용품
2	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 접속용 전기가구(6종)	
3	저압 전기부품(9종)	
4	소출력 모터(1종)	
5	전동공구(16종)	
6	용접기(15종)	
7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기기기(18종)	
8	음향영상설비(14종)	
9	정보기술기기(12종)	
10	조명기기(2종)	
11	전자통신 단말설비(9종)	
12	무선랜 제품(1종)	
13	안전유리(3종)	공산품
14	인테리어 용품(3종)	
15	완구류 제품(6종)	
16	자동차 및 안전부속부품(17종)	자동차
17	자동차 타이어(3종)	
18	농기구(2종)	소방 방법 농기계
19	소방제품(3종)	
20	안전방법설비(4종)	
21	라텍스 제품(1종)	기타

자료: KBW, <http://www.kbwlabs.com/work/china/ccc.ph>(검색일자: 2018. 9. 6)

□ CCC 인증 관리감독 기관은 AQSIQ, CNCA, 지방품질관리기관 및 검사검역기관이 있음

○ AQSIQ와 CNCA는 CCC 인증 주부처 기관이며 공동으로 CCC 인증의 기본 규범을 제정하며 강제대상품목리스트를 심사 및 승인함

- 지방품질관리기관 및 검사검역 기관은 관할 지역 내의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CCC 인증 제품에 대해 시장추출검사를 실시함
- CCC 인증 획득 절차는 형식시험 → 공장심사 → 인증서 취득의 순서임
 - 형식시험 단계는 인증 신청 수리 및 샘플과 자료 송부 후, 제품에 대한 적합성을 시험하고 시험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임
 - 공장심사 단계는 작성된 레포트와 신청 기업에서 제출한 제품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CCC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시스템 및 동일성검사를 실시함
 - 첫 회 공장심사를 받은 공장에서 동일한 중분류 제품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경우 이전의 공장심사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첫 회 공장심사는 면제됨
- CCC 인증 획득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¹⁴⁰⁾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신청서, 제조상, 생산공장), 기타 인증서 사본, 일치성 증명서(영문), 부품 리스트(CCL), 회로도, 제품 묘사서(필요 시), 조립도(필요 시), 전기 원리도(필요 시), 중문 제품 매뉴얼, 중문 명판, 계측기, 생산 설비 리스트, 공장 심사 조사표(공장 심사 필요 시)
- CCC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90일이며, 신청 제품의 종류나 인증 진행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함
-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 인증은 CCC처럼 필수 인증은 아니나 소비자에게 제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여 국제시장에서 판매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선호됨
- CQC 인증 대상의 유형은 크게 10개 제품분야이며, 500개 이상의 제품군에 적용됨

140) 「품목군별 강제성 제품실시규칙 및 실시세칙」

- 에너지 절약제품, 물 절약제품, 친환경 제품, 저탄소 제품, 철도 제품, 정보보안 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 제품(RoHS), 신재생에너지 제품, 식품 및 농산품, 일반 공산품 등 10개 유형임
- CQC 인증 획득 절차는 샘플시험 → 공장심사 → 인증서 취득 순서로 CCC와 유사함
- CQC 인증 획득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정식 신청서, 신청자 등록증명(영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대리인 위임장(해당 시), 일치성 성명(제조사, 공장, 제품명, 모델명, GB표준의 확인), 상표 등록 증명서, 공장심사보고서(CQC 취득 인증의 경우), 제품에 대한 설명서(묘사), 레포트, 현재 CQC 인증서(변경신청 시) 등임
- CQC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4~6개월이며, 신청 제품의 종류나 인증 진행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함

2.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 중국은 2017년 초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기존 수입규제에 더하여 사드(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보임
 - 화장품 수입 거부 증가, 반덤핑 조치 연장, 반덤핑 재심, 반덤핑 판정 등 수입 규제조치가 개시됨
 -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와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바 있음
- 최근에는 한한령이 철회되고 보복조치가 완화되었으나 반덤핑관세,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 조치 등을 수단으로 한 수입규제는 지속되고 있음

- 2018년 11월 기준,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13건의 반덤핑규제와 1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2018년 11월 기준, 반덤핑규제 중인 품목은 화학, 철강 및 금속, 섬유 등 13건이며, 설탕은 2016년 9월부터 세이프가드 조치 중임
 - 스테인리스압연 및 열연강판, 페놀 등 2건은 반덤핑 조사 중임

-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는 13개 품목 중 9개가 석유화학제품이라는 특징이 있음
 - 해당 석유화학제품은 스티렌, 메틸이소부틸케톤, 폴리아세탈, 테레프탈산, 아디프산, 아세톤, 비스페놀, PVC임

-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월 한국, 미국, 일본, 타이완산 PVC에 대해 반덤핑 일몰재심을 개시한다고 발표함¹⁴¹⁾
 - 중국은 2003년부터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러시아산 PVC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징수해왔으며, 그중 러시아산은 2015년 9월 29일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이번 일몰재심 기한은 2018년 9월 29일~2019년 9월 28일이며, 재심 기간 동안 기존 반덤핑관세 조치는 여전히 유지됨

141) 일몰재심(Sunset Provision)은 해당 반덤핑관세 부과를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임.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http://search.mofcom.gov.cn/swb/iszxls.jsp?url=http://tjtb.mofcom.gov.cn/article/zt_ydyl/lanmuone/201803/20180302726132.shtml&title=%E6%B2%B3%E5%8C%97%E5%94%90%E5%B1%B1%E5%9C%B0%E5%8C%BA%E6%B8%AF%E5%8F%A3%E5%BC%80%E9%80%9A%E9%A6%96%E4%B8%AA%E5%9B%BD%E9%99%85%E8%B4%A7%E8%BF%90%E7%8F%AD%E5%88%97&value=pvc(검색일자: 2018. 10. 24)

〈표 2-VIII-5〉 중국의 반덤핑관세·세이프가드 조치 현황(2018년 8월 기준)

	피소국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규 제 중	한국, 대만, 미국	스티렌(Styrene Monomer)	반덤핑	2017.6
	한국, 일본, 남아공	메틸이소부틸케톤(4-Methyl-2-Pentanone)	반덤핑	2017.3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폴리아세탈 (Polyformaldehyde Copolymer, Polyoxymethylene Copolymer, Copolymer-type Acetal Resin or Acetal Copolymer)	반덤핑	2016.10
	품목규제	설탕(Sugar)	세이프가드	2016.9
	한국, EU, 일본	방향성 전기강판 (GOES: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반덤핑	2015.7
	한국, 일본, 터키	아크릴섬유 (Polyacrylonitrile Fiber or Acrylic Fiber)	반덤핑	2015.7
	한국, 미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Polysilicon)	반덤핑	2012.7
	한국, 태국	테레프탈산(TPA: Terephthalic Acid)	반덤핑	2009.2
	한국, 미국, EU	아디프산(Adipic Acid)	반덤핑	2008.11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아세톤(acetone), Dimethyl ketone 또는 2-Propanone	반덤핑	2007.3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비스페놀A(Bisphenol-A)	반덤핑	2006.8
	한국, 일본, 미국	광섬유 (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	반덤핑	2003.7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러시아	PVC(Polyvinyl chloride)	반덤핑	2002.3
	한국, 일본	니트릴고무(Nitrile Rubber)	반덤핑	2017.11
조 사 중	한국, EU, 일본, 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압연 및 열연강판 (Stainless Steel Billet and Hot-rolled Stainless Steel Plate (Coil))	반덤핑	2018.7
	한국, 미국, EU, 일본, 태국	페놀(Phenol)	반덤핑	2018.3

자료: WTO 홈페이지>Trade Topics>Dispute Settlement,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검색일자: 2018. 11. 23)

-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대외무역장벽조사 또는 국가안보위협 관련으로 규제한 사례는 없었음
 - 다만 WAPI 표준은 국가안보가 위태롭다는 이유로 중국만의 독자적 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음
 - 중국의 무선랜 암호화 표준인 WAPI는 국제표준과 호환성이 없는 암호표준임
- 한편 중국은 최근 인증 및 표준관련 법제도를 강화함¹⁴²⁾
 - 예로 2014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는 의료기기에 대해 CFDA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수입 의료기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정임
- 수입품이 중국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중국으로의 수출과 판매가 금지되므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함
 - 인증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공산품 등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되므로 인증과 표준의 기준강화는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로 작용할 수 있음
- 동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한-중 FTA에서는 TBT 관련 15개 조항의 구체적 이행사항을 협의하는 등 중국의 기체결 FTA보다 세부적이라고 평가됨
 - 협정문에는 TBT 애로완화 방안, 제품안전협력, 시험인증기관, 중국진출 협력 등이 반영된 15개 조항이 포함됨
 - 중국이 기체결한 중·스위스 FTA의 경우 TBT는 11개 조항, SPS는 12개 조항임
-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식품에 대해 중국 규제가 발생함¹⁴³⁾
 - 중국 식품표준의 젓갈, 조미김 등 식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우리나라의 미생물 규격과 상이함

142) 오경수, 『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 산업의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17. 11, pp. 2~11.

14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장벽 보고서』, 2018. 3, pp. 50~51.

- 중국은 젓갈을 수산조미품으로 분류하여 세균수(8,000cfu/g)를 적용했으나, 젓갈은 비가열 제품으로써 원료 유래의 일반세균이 존재하여 수산조미품 규격에 부합하기 어려움
- 조미김의 경우 중국은 해조류 및 해조류 가공품 중 즉석조류제품으로 분류하여 세균수 규격(30,000cfu/g 이하)을 적용, 조미김 원료 및 제조 가공 특성상 일반세균을 완전히 제어하기 어려워 규격에 부합하기 어려움

- CCC 인증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체 품목(104개 품목)은 국내 인증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로 CCC 인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함
- 한-중 FTA 발효 1주년(2016년 12월)을 계기로 한-중 양국 인증기관 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됨
 - 이에 따라 CCC 국내 인증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등에서 발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로 CCC 인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함
 - 2017년 8월에는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LED 조명기기에 대한 CCC 인증서가 발급됨

〈표 2-VIII-6〉 자의적 품목분류로 인한 고관세부과(HDMI 모니터 사례)

HDMI(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모니터는 고품질 영상과 음성을 재생할 수 있는 모니터로, 국가별로 '컴퓨터용' 또는 '기타용'으로 분류하면서 품목분류의 불일치가 발생한 품목임

이에 WCO(세계관세기구)는 품목분류위원회(2014년 9월)에서 HDMI 모니터를 ITA(정보기술협정)에 포함되는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를 결정함

중국은 HDMI 모니터를 기타용으로 분류해서 컴퓨터용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고관세를 적용해왔

하지만 중국은 자의적으로 기존에 기타용으로 잘못 분류되었던 것을 다시 세분화하여 기존의 관세율과 동일하게 되어 있음

▶ HS 85285910 관세율 30%

이처럼 중국의 대응은 WCO 분류의견을 일견 반영한 듯 보이나, 국내법으로 세율구조를 변경하여 과거와 동일한 고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WCO 분류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료: 산업자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무역장벽보고서) 중국편』, 2017.

IX. 행정구제제도

- 본 장은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인 해관구제제도를 행정심판 및 사법심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 행정복의, 행정재심은 행정심판의 수단이며, 행정소송은 사법심판의 수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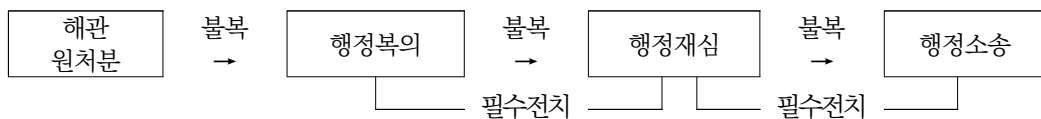
1. 개관

- 중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관구제제도라고 부르는 관세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함
- 동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관세행정상의 처분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경우 관세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해관구제제도는 행정복의, 행정재심, 행정소송, 행정배상의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임¹⁴⁴⁾
- 행정복의란 해관의 원처분을 시정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임
- 행정재심이란 행정복의에 불복해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임
- 행정소송은 사법심판 수단으로 중화인민법원의 판결로써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것임

144) 한상돈, 『중국 행정법의 발전과 최근 동향』, 연변과기대, 2005, p. 31.

- 행정배상은 권익이 침해된 납세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임
- 해관구제제도 관련 법규는 「해관법」, 「행정복의법」, 「수출입관세조례」 등에서 규정함
 - 행정구제와 관련된 조항은 「해관법」 제5장 제64조, 「수출입관세조례」는 제6장 제64조, 「행정복의법」 제62조임
 - 「해관법」에서는 납세쟁의에 관한 총칙규정을, 「수출입관세조례」는 재심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복의법」에서는 이의신청인 행정복의에 대한 총칙에 대해 규정함
- 해관구제를 받으려면 행정복의, 행정재심, 행정소송 순서로 불복신청을 해야 하며 전 단계의 구제제도 전치가 필수임
 - 행정소송을 위해 행정복의, 행정재심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그림 2-IX-1] 중국의 해관구제 순서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행정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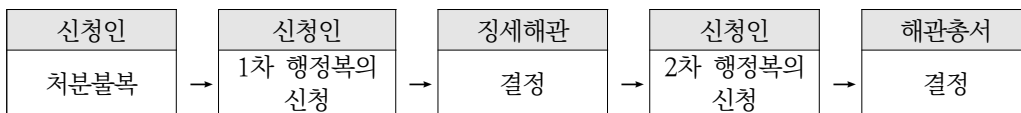
- 중국해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복의(行政复议) 제도가 있으며 2단계의 복의제도를 채택함¹⁴⁵⁾
 - 복의를 직역하면 다시 논의한다는 뜻으로,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에 대해 취소, 변경을 요청하거나 납세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함¹⁴⁶⁾

145)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12조

146) 한국법제연구원, 『중국 행정심판 제도의 주요 내용』, 2016. 2, p. 21.

- 1차 행정복의절차에서 신청인은 국가의 국민이나 법인 및 기타 조직이며, 피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처분한 해관이 됨
 - 이때 피청구인인 해관은 처분 지역 해관을 의미함
 - 다만 해관 이외의 기관의 경우 통상적으로 행정복의 기관을 상급 행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음
- 1차 행정복의제도는 2차 행정재심의 필수적인 전치 절차로 불복신청인은 본 절차를 빼고 불복을 제기할 수 없음
- 납세의무자와 세관 간 납세에 대한 이의 발생 시 세금을 선납한 뒤에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구제제도가 없음
 - 우리나라는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운용하여 납세자가 과세를 납부하기 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 1차 행정복의 신청기한은 해관이 관세납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임¹⁴⁷⁾
 -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진술로 가능하며, 구두진술로 신청이 이뤄질 경우 신청인의 서명이 기재된 행정복의구두신청기록을 작성해야 함
- 2차 행정복의절차에서 신청인은 1차와 동일하나 피신청인은 징세해관의 상위기관인 해관총서가 된다는 차이가 있음

[그림 2-IX-2] 행정복의 진행 과정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47) 전희, 『중국 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2015.

- 행정복의 신청 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청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주소, 소속과 연락방식
 - 행정복의 사건을 일으킨 행정기관의 명칭과 주소
 - 복의 신청의 요구
 - 복의 신청의 주요 사유와 이유
 -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날짜

- 신청인이 행정복의를 신청하면 해관은 신청의 형식요건을 심사하여 접수조건이 맞으면 등록을 수행함¹⁴⁸⁾
 - 다만 신청인이 이미 인민법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복의신청한 경우에는 해관이 이의접수를 거절할 수 있음
 - 해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 복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신청서의 진실성, 정확성, 합법성 등을 조사하여 심리하는 과정임¹⁴⁹⁾
 - 해관은 신청서를 받은 7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복의 인원과 기타 복의 참석자를 확인해야 함
 - 심사는 사건수리범위에 대한 심사와 심사방식을 확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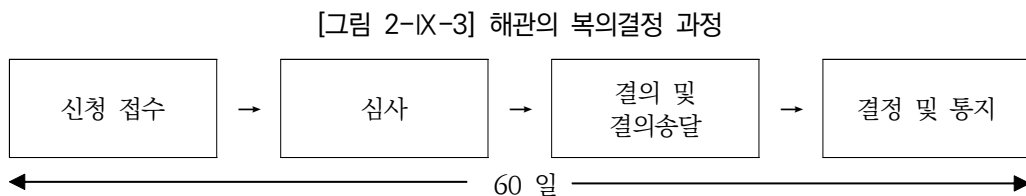
- 행정복의에 대한 해관의 결의는 총 5가지 경우가 있으며, 복의결정을 내린 후에는 해관복의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함
 - 해관결의의 5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원래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 원래 처분을 보충하는 결정

148) 포봉·한상현, 『중국 관세행정구제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2014. 2, p. 26.

149)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2조

- 일정 기한 안에 원래 처분을 이행시키는 결정
- 원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
- 피신청해관이 신청인한테 기한 내에 배상을 이행하는 결정
- 해관복의결정서는 신청인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편이나 공고로 송달하는 방법도 있음

- 행정복의에 대한 결정은 해관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짐
- 사건이 아주 크거나 복잡한 경우, 제3자가 참석하거나 신청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 심의결정일로부터 30일 연장이 가능함



3. 행정재심

- 납세자가 해관에서 내린 해관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재심대상은 다음 18개 경우임
- 해관의 경고, 벌금, 화물, 물품, 운송공구, 특별제조설비 몰수, 몰수할 수 없는 화물·물품·운송수단의 등가대금 추징, 특정 감면세 우대의 임시중지 또는 취소, 관련 업무 또는 자격 정지, 등록 철회, 통관신고 자격 취소 및 기타 행정처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관련 화물, 물품, 불법소득, 운송공구, 특별제조 설비에 대한 압수결정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성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관련 화물, 물품, 운송공구, 장부, 증서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압류, 관련 수출입화물, 장부, 증서에 대한 밀봉 보존 등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담보를 수취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강제 집행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에서 납세 의무자 확정, 과세가격 확정, 상품 분류, 원산지 확정, 세율과 환율 적용, 세금 감면 또는 면제, 세금 보충징수와 환급, 체납금 징수, 징세방식 확정, 납세 장소 확정 등 기타 세금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법정 조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하여 해관에 행정허가사항 또는 행정비준사항을 신청했지만 해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 해관에서 운송공구와 장소를 검사하고 화물, 물품을 검사하거나 기타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 것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반품명령, 통관불가, 시정명령, 해체명령과 매각 등 행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 해관 검사 결정 또는 기타 검사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기업분류 결정과 그 분류 결정에 따른 관리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에서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거나 해관에서 채택한 지식재산권 보호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에서 법에 따라 통신신고, 통관 등 해관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 해관에서 불법으로 신고 지체금 또는 기타 비용을 수취하고 불법으로 기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경우
- 해관에서 법에 따라 인신권리, 재산권리를 보호하는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 해관에서 정부정보 공개업무에서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 해관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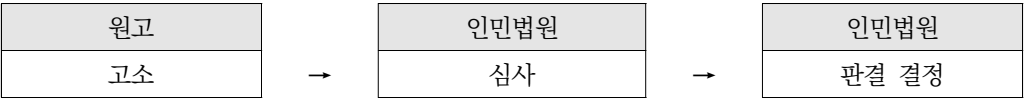
- 재심 신청자인 납세자는 행정복의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관총서에 재심의를 신청함
- 재심 피신청인인 해관총서는 재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재심결정서를 해당 해관과 재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

4. 행정소송

- 관세행정소송은 사법적 판단을 근거로 관세징납 쟁의를 해결하는 방법임
 - 행정복의 또는 행정재심이 처분관청인 해관의 판단에 따라 납세쟁의를 해결하는 것과 달리 행정소송은 인민법원의 사법적 심사와 판결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함
- 원고인의 고소로 관세행정소송이 시작되며 피고인은 해관임
 - 원고는 해관의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합법 공민이나 법인 및 기타 조직임
 - 원고는 인민법원에 관세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복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인민법원은 소송자료를 열람하여 증거를 심사하고 공개적으로 심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고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답변서를 받은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해야 함
-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입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차 판결을 내려야 하며, 판결은 원심유지, 판결취소, 판결변경, 판결집행 4가지 경우가 있음
 - 원심유지는 법원이 원고인의 소송을 각하하는 것이며, 판결취소는 법원심리를

통해 해관 행위들이 위법한 경우 판결을 취소하는 것이고, 판결변경은 해관의 판결이 공정성을 잃은 경우 그 판결을 변경시키는 것이며, 판결집행은 피고인이 법으로 정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집행을 이행시키는 것임

[그림 2-IX-4] 행정소송 절차



자료: 정재호 외 3인, 『주요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 비교』, 2015. 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5. 행정배상제도

- 행정배상이란 해관에서 일하는 자가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납세자에게 경제적 배상을 해주는 법제도를 말함
 - 해관공무원의 처분으로 납세자가 배상청구나 인민법원의 판결로 귀결될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함

- 해관행정배상은 국가배상으로, 배상의무를 감당하는 기관은 해관임
 - 해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납세자의 불이익에 대한 배상은 해관이 감당함
 - 행정배상은 납세자의 청구나 법원 판결로 배상청구가 접수되면서 이뤄짐

- 행정배상을 통해 배상금이 지불되거나, 원래 상태를 회복하거나, 화물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X. 벌칙

□ 본 장은 중국의 관세형벌 관련 규정과 규정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처벌 내용을 다룸

1. 관세형벌 관련 규정

□ 중국 관세형벌규정은 「해관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처벌행위에 대해 규범한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에서 규정함

- 실시조례는 2004년 9월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며, 총 6장으로 구성됨
 - 제1장 총칙 규정, 제2장 밀수행위 및 처벌규정, 제3장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처벌규정, 제4장 세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규정, 제5장 세관행정처벌의 결정 및 실행규정, 제6장 부칙규정임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총칙규정은 총 6개 조항으로 제정목적, 처벌범위, 관할조직 등에 대한 규정임

- 「제1조 전문」 세관행정처벌을 규범화하고 세관에서 법에 따라 관련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며 공민,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이하 「세관법」이라 약칭) 및 기타 관련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본 실시조례를 제정함

- 「제2조 전문」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밀수행위와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행정처벌을 가해야 할 행위에 대한 처리는 본 실시조례를 적용함
- 「제3조 전문」 세관행정처벌은 위법행위를 발견한 세관에서 관할하며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세관에서 관할할 수도 있음
- 「제4조 전문」 세관에서 발견한, 법에 따라 기타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위법행위는 관련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하며 위법행위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세관 밀수범죄경찰공안기관이나 지방공안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제5조 전문」 본 실시조례에 따라 경고, 벌금 등 행정처벌을 가하였으나 출입경 화물, 물품, 운송도구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당사자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수출입 허가증을 제공하며 세관수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¹⁵⁰⁾
- 「제6조 전문」 세관 밀수범죄경찰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반항하거나 방해하였을 경우, 직속 세관, 예속 세관에 설치한 세관 밀수범죄경찰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처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기타 세관 관련 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반항 또는 방해하였을 경우 지방공안기관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2. 관세형벌 종류 및 제재조치

- 중국의 관세형벌에는 벌금, 화물가치 추징, 불법소득 몰수, 화물 몰수 등이며 징역 형은 없음¹⁵¹⁾
- 우리나라의 관세형벌 규정은 「관세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데

150) 허가증이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수령해야 하며 국가 관련 주관부문에서 발급한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하는 증명서류를 가리킴

151) 라공우·김희철, 『한국과 중국의 관세형벌 규정의 비교 연구』, 2017. 2, pp. 77~84.

반해, 중국의 관세형별은 징역형이 없으며 범죄구성 시 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형을 받음¹⁵²⁾

가. 밀수출입행위 및 관련 벌칙

- 「세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세관의 감독관리 회피, 탈세 및 국가의 출입경 금지 또는 제한 관리를 회피하는 다음의 6가지 행위를 밀수출입행위라고 함¹⁵³⁾
 -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허가 없이 세관을 설치하지 않은 지점으로부터 국가에서 출입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물, 물품이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화물, 물품을 운송 및 휴대방식으로 출입경하였을 경우
 - 세관 설치지점을 통해 은닉, 위장, 기만, 허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세관의 감독관리를 회피하여 국가에서 출입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물, 물품이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화물 및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송부방식으로 출입경하였을 경우
 - 위조 또는 변조한 매뉴얼, 서류, 인감, 회계장부, 전자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세관의 감독관리를 회피하고 스스로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 물품, 수입한 경의 운송도구를 경내에서 판매하였을 경우
 - 위조 또는 변조한 매뉴얼, 서류, 인감, 회계장부, 전자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가공무역 완성품의 단위 재료 소모량을 허위 보고하는 등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 물품을 이탈하였을 경우
 - 은닉, 위장, 기만, 허위보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세관의 감독관리를 회피하여 스스로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등 세관의 특수감독관리구역 내 세관 감독관리 하

152) 제26조 이 규정 위반으로 밀수행위, 세관 감독관리 규정위반행위 또는 「세관법」 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 세관이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5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7조

의 화물, 물품을 구역 외부로 운반하였을 경우

- 세관 감독관리를 회피해 밀수를 구성하는 기타 행위

□ 밀수출입행위에 대한 처벌은 벌금, 몰수, 통관업무 대행 자격 취소 등임¹⁵⁴⁾

- 국가의 수출입 금지 화물을 밀수하였을 경우, 밀수화물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가에서 출입경을 금지하는 물품을 밀수하였을 경우, 밀수물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증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탈세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에서 출입경을 제한하는 화물 또는 물품을 밀수하였을 경우, 밀수화물 또는 물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것 외에 밀수화물, 물품과 동등한 가치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탈세하였으나 허가증 관리를 회피하지 않고 법에 따라 납세해야 할 화물, 물품을 밀수하였을 경우, 밀수화물, 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것 외에 탈세액의 3배에 해당되는 벌금에 처함
- 전문 밀수용으로 사용되는 운송도구 또는 밀수행위를 덮어 감추기 위한 화물, 물품은 2년 내에 3차 이상 밀수에 사용된 물품은 몰수해야 하며 밀수화물, 물품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설비, 이중벽, 암격(暗格)은 몰수하거나 명령을 내려 뜯음
- 밀수조직과 공모하여 밀수조직에 대부금, 자금, 계정번호, 영수증, 증명, 세관 증빙서류를 제공하였거나 밀수조직과 공모하여 밀수조직에 밀수화물, 물품의 인출, 발송, 운송, 보관, 송달 또는 기타 편리를 제공하였을 경우, 밀수 공동 당사자로 간주하여 처벌함
- 통관대행 업체, 통관대행 인원 및 세관의 허가를 거쳐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송달, 전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가 밀수범죄를 구성하거나 1년 내에 2차 이상 밀수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세관은 등기등록 증명서류를 철회하며 통관업무 대행 자격을 취소함

154)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9조~제11조

나. 세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 관련 벌칙¹⁵⁵⁾

- 조례상 수출입상 밀수행위를 제외한 행위는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함
 -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별로 벌금, 몰수 등 처벌규정이 다름
- 위반유형 중 국가의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 화물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명령을 내려 반송하도록 하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가의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 화물을 수출입 시 수출입 화물을 통과시키지 않으며 화물가치의 30% 이하 벌금에 처함
 - 국가의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 수출입 허가관리에 속하는 화물을 수출입 시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이 세관에 신고 시 자동허가증명 서류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수출입화물을 통과시키지 않음
- 수출입화물의 허위신고로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모두 몰수함
 - 허위신고는 품명, 세칙번호,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출하지, 도착지, 최종 목적지 또는 기타 신고해야 할 항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임
 - 세관통계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경고 또는 1,000위안 이상~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세관 감독관리 질서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경고 또는 1,000위안 이상~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가의 허가증 관리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화물가치의 5% 이상~30% 이하의 벌금에 처함

155)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12조~제32조

- 국가의 세금징수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탈세액의 30% 이상~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가의 외화, 수출관세환급 관리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신고 가격의 10% 이상~50%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음에 해당하는 세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의 경우 화물가치의 5% 이상~3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함
- 세관의 허가 없이 스스로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을 해체, 인출, 교부, 발송, 교환, 개조, 담보, 저장, 유치, 양도, 표기변경, 타인에게 넘겨 사용하였거나 기타 처분하였을 경우
 - 세관의 허가 없이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을 관리 구역 밖에 저장하였을 경우
 -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관련 화물의 분실, 수량의 부족이나 기록이 진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 보세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 교부, 이월, 확인삭제 등 수속을 밟지 않았거나 관련 계약 해제, 연장, 변경, 양도 시 세관에 수속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 세관에 가공무역 완성품의 단위 재료 소모량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규정한 기간 내에 통과, 중계운송, 통행 화물을 경외로 운송하지 않고 스스로 경내에 남겨두었을 경우
 - 규정한 기간 내에 잠시 수출입화물을 다시 경외나 경내로 운송하지 않고 스스로 경내 또는 경외에 남겨두었을 경우
 -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로 인해 세관에서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행할 수 없게 하였거나 중단시켰을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세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의 경우 경고처분을 주며 물품가치의 20% 이하 벌금에 처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함

- 세관의 허가 없이 스스로 세관에서 통과시키지 않은 수출입 물품을 해체, 교부, 우편송부, 이전 또는 기타 형식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 개인이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한 개인용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송부하여 출입 경 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개인이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국가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송부하여 출입경 시 은닉, 위장 등 방식으로 세관의 감독관리를 회피하지 않았으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인이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송부하여 출입경 시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세관의 등록을 거쳐 잠시 면세 출입경 물품으로 허가받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경외 또는 경내로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 세관의 허가 없이 국경 통과 인원이 그가 휴대한 물품을 경내에 남겨두었을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세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의 경우 경고처분을 주며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함
- 운송도구가 세관설치 지점을 경과하지 않고 출입경하였을 경우
 - 세관의 허가 없이 세관 감독관리 구역 내에 정박한 출입경 운송도구를 스스로 이탈시켰을 경우
 - 출입경 운송도구를 세관설치 지점으로부터 다른 세관설치 지점으로 이동 시, 세관 수속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세관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경외 또는 경내의 세관 미설치 지점으로 이동시켰을 경우
 - 출입경 운송도구가 세관설립 지점에 도착하였거나 또는 이동 시,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여 검사받지 않았거나 제공한 증빙서류가 진실하지 않을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세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의 경우 경고처분 외에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함

- 세관의 허가 없이 출입경 운송도구가 스스로 출입경 화물, 물품을 하역하였거나 출입국 관광객을 오르내리게 하였을 경우
 - 세관의 동의 없이 수출입 운송도구가 스스로 경내 여객운송을 경영하거나 출·입경 운송 이외의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 수속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 출·입경 운송도구가 스스로 경내 운송업무를 경영할 경우
 - 규정한 기간 내에 세관에 선적목록 등 전자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았거나 전송한 전자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규정한 기간 내에 전자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 세관의 감독관리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 출·입경 운송도구는 입경 후 세관에 신고하기 전에, 출국 운송도구는 세관 수속절차를 밟은 후 출경 전에, 교통 주관부문 또는 세관에서 지정한 코스에 따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을 실은 선박, 자동차가 세관에서 지정한 코스에 따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 출입경 선박 및 항공기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세관을 설치하지 않은 지점에 정박, 착륙하거나 화물, 물품을 경내에 하역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근 세관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 특수한 사정 없이 수출입 선박, 기차, 항공기의 도착시간, 정박 지점 또는 변경된 시간, 지점을 사전에 세관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진행하는 출입경 운송도구, 화물, 물품에 대한 검사 및 조사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세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의 경우 경고처분 및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세관의 봉인을 스스로 개봉하거나 훼손시켰을 경우
 - 세관에서 작성 및 발표한 감독관리 증명서류를 분실하여 세관 감독관리에 영향을 끼쳤을 경우

-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로 인해 세관에서 출입경 운송도구, 물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중단시켰을 경우
- 세관 증명서류를 위조, 변조, 매매하였을 경우, 5만원 이상~5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함

다.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벌칙¹⁵⁶⁾

-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침권 화물을 몰수하고 화물가치의 30% 이하 벌금에 처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함
- 세관에 지식재산권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및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지식재산권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함

라. 통관대행업체의 위법행위 및 관련 처벌¹⁵⁷⁾

- 관세처벌에는 수출입자 외에도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도 적용되는 처분이 있으며, 관련 벌칙은 업무정지, 대행자격취소, 벌금형 등임
 - 통관대행 업체·인원 및 관련업에 대한 경고처분 및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
 - 통관대행 업체·인원 및 관련업에 대한 등록 증명서류 철회 및 통관업무 대행자격취소

15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25조, 제27조

157)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16조, 제17조, 제29조~제31조

- 통관대행 업체·인원 및 관련업에 대한 벌금형 및 자격취소
- 통관대행 업체·인원 및 관련업에 대한 경고처분 및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 처벌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됨
 - 세금을 체불하였거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수출입 통관업무 대행업체가 타인에게 수출입화물통관 납세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의를 양도하였을 경우
 - 세관의 감독관리 하의 화물을 손실 또는 분실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 관련 업무 또는 업종에 잠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기타 불법행위
- 통관대행 업체·인원 및 관련업에 대한 등록 증명서류 철회 및 통관업무 대행자격 취소 처벌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됨
 - 1년 내에 3차 이상 세관에 의해 잠시 업무를 중단한 경우
 - 세관에 의해 관련업무 또는 관련 업종을 잠시 정지한 후, 관련 업무를 회복하여 1년 내에 재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기타 등기등록 증명서류를 철회해야 하거나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기타 위법행위
- 통관대행 업체·인원 및 관련업에 대한 벌금형 및 대행자격취소 처벌은 다음과 같음
 - 통관대행 업체, 인원이 불법으로 통관 업무를 대행하거나 세관에서 허가한 업무 종사 범위를 벗어나 수출입 통관수속을 대행하였을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5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6개월 이내에 통관업무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등록등기증명서류를 철회하고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함
 - 또한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통관대행 업체, 통관대행 인원이 세관 관련요원에게 뇌물을 주었을 경우, 등록등기 증명서류를 철회하고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하며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단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통관대행 업체로 재차 등록하지 못하며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세관에 수출입 통관대행 등록을 하지 않고 대행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관업무를 대행할 경우 즉시 단속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가짜 서류를 제공하여 세관에 통관대행 업체로 등록하였거나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등록등기증명서류를 철회하고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하며 3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XI.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¹⁵⁸⁾

- 중국은 AEO 인증 기업에게 우선 통관수속, 검사율 인하, 담보인하 혹은 무담보 등의 혜택을 제공함
- 우리나라는 중국과 2014년 4월부터 AEO 상호인증(MRA)을 체결하고, 양국 기업이 AEO 혜택을 공유하도록 함

1. 관련 법령¹⁵⁹⁾

-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기업신용관리방법」에 근거해 모든 수출입기업을 신용등급별로 분류하여 관리함
- 중국의 신용등급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기업분류관리방법(2011)」, 「세관기업 신용 관리 잠정방법(2014)」을 통해 관리되다가 동법 제정을 통해 현행 체제로 운영됨

158) AEO란 국제관세기구에서 정한 국제무역 안전관리 표준구조(WCO SAFE)의 기준을 도입한 각국 해관에서 심사해 정해진 표준에 도달하면 인증자격을 부여하고, 자국 해관은 안전한 무역 파트너로서 우대하며 수출입 상대국이 해관 간 상호인증(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 있는 경우 신속통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AEO 인증기업이 되면 당장 해관의 검사비율,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자율적인 신고와 납세를 인정함

159) 본원이 발간한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중국(2011), (2013)』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해관기업분류관리방법」의 규정을 수록하였으나 본편에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기업신용관리방법」을 반영함

- 수출입기업의 신용관리는 사회신용체계를 건설하고, 무역 안전과 편이를 촉진하기 위함임¹⁶⁰⁾
 - 사회신용체계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인증기업, 일반신용기업, 신용불량기업으로 등급을 구분해 차등혜택을 제공함을 말함
- 동법에 따라 분류된 등급은 중국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신용등급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을 가진 인증기업은 AEO 인증업체로 인정됨¹⁶¹⁾
 - 중국은 해관 심사를 통해 정해진 표준에 도달하면 AEO 인증자격을 부여하고 신속통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함
 - 해관은 인증을 통과한 기업에게는 《인증기업증서》를 교부하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업체에게는 《인증기업관리부적용결정서》를 교부함
- 해관은 기업의 신용정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아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¹⁶²⁾
 - 기업 등록등기 또는 신고 정보 및 기업 관련 인원의 기본 정보
 - 기업의 수출입 및 수출입관련 경영 정보
 - 기업 행정허가정보
 - 기업 및 관련 인원의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 정보
 - 해관과 국가 유관부문 간에 실시하는 우대와 제재 관련 정보
 - AEO 상호인증 정보
 - 기타 기업의 신용상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정보
- 해관은 기업신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유관기업에 대하여 신용관리를 실시함
 - 기업은 매년 1월 1일~6월 30일에 업체의 신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해관에 《기업신용정보년도보고》를 제출해야 함¹⁶³⁾

160)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기업신용관리방법」 제1조

161)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기업신용관리방법」 제3조

162)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기업신용관리방법」 제6조

2. 인증 기준

- ☐ 중국 세관의 AEO 인증 기준은 내부통제, 재무상태, 준법성 및 규범성, 무역안전 등 4가지임
- ☐ 내부통제를 판단하는 요소는 조직기구 통제, 수출입업무 통제, 내부감사 통제, 정보 시스템 통제로 총 4개임
 - 조직기구 통제 기준은 내부 조직구조와 세관업무 교육에 대해 평가함
 - 수출입업무 통제 기준은 수출입 서류 통제, 수출입 서류 보관, 수출입 활동에 대해 평가함
 - 내부감사 통제 기준은 내부감사 제도, 책임 추궁, 개선제도에 대해 평가함
 - 정보 시스템 통제 기준은 정보 시스템, 데이터 관리, 정보 안전에 대해 평가함
- ☐ 재무상태를 판단하는 요소는 회계정보, 재무건전성, 수익성, 납세능력 등 총 4개임
- ☐ 준법성 및 규범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준법경영, 수출입 업무의 규범성, 해관총서의 관리요구 부합여부, 외부신용 여부로 총 4개임
 - 준법경영 기준은 임직원과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 평가함
 - 수출입 업무의 규범성 기준은 등록정보, 수출입 기록, 신고 규범성에 대해 평가함
 - 해관총서의 관리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관리 요구사항 실행여부로 평가함
 - 외부신용 기준은 외부신용 불량기록의 여부로 평가함
- ☐ 무역안전을 판단하는 기준은 총 8개임
 - 무역안전은 시설 보안, 출입 보안, 인적 보안, 사업파트너의 안전, 화물 안전, 컨테이너 안전, 운송수단 안전, 위기 관리에 대해 평가함

- 기본 인증 기준 4가지 외에 부가 기준(Bonus Item)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점수를 가산할 수 있음
 - 부가 기준은 ① 세관 특수감독 관리구역 내의 기업 ② 국가에서 권장 및 지원하는 기업 ③ 전국적 산업조직이 수여하는 명예칭호 획득 ④ 중국 대외무역 수출 선도지수 기업 ⑤ 세관이 전개하는 수출입신고서류 기업자체보관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기업의 경우 가산 가능하며 중복 가산은 불가함

- 인증 통과 기준은 기준 미달 항목이 없고, 인증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AEO 인증이 통과됨
 - 인증평가 최종 점수는 100+(모든 채점항목 평가점수의 합계)임
 - 기준 충족 항목은 0점 가산으로 채점되며, 기준 미달 항목은 2점 감점됨
 - 부가 기준에 해당하면 최대 2점까지 가산함

- 인증 기업은 지속적으로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재심에서 갱신이 가능함
 - 고급인증기업은 3년마다 재인증이 실시됨
 - 일반인증기업은 비정기적 재인증이 실시됨

3. 등급별 혜택

- 중국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신용등급 제도에 따라 성실 기업에게는 연대 장려 혜택을 제공하고 불성실 기업에게는 연대징벌 정책을 시행함
 - 중국에서는 신용사회 건설을 국가 정책목표로 삼으며, 이를 위해 해관을 비롯한 중국의 정부기관은 기업 신용에 따라 차별적으로 행정 처리되도록 제도화함

- 신용등급은 인증기업, 일반신용기업, 신용불량기업으로 분류함¹⁶⁴⁾

164) 동법 시행 전에는 AA, A, B, C, D 등급으로 운영되었음

- 인증기업은 고급인증기업과 일반인증기업으로 나뉨¹⁶⁵⁾
- 해관에 처음으로 등록등기 또는 신고하는 기업, 신용불량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일반신용기업으로 분류함¹⁶⁶⁾
 - 해관에 처음으로 등록등기 또는 신고하는 기업
 - 인증기업이 《해관인증기업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본 방법 제12조 규정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관이 신용불량기업으로 분류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본 방법 제12조 규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신용불량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음¹⁶⁷⁾
 - 밀수범죄 또는 밀수행위가 있는 경우
 - 비보관(非報關)기업이 1년 내에 해관관리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전년도 세관신고서, 출입경신고목록, 출입경운수적하목록 등 관련 서류 제출총수의 1,000분의 1을 초과하고 해관 행정처벌금액 누계가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보관(報關)기업이 1년 내에 해관관리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전년도 세관신고서, 출입경신고목록, 출입경운수적하목록 등 관련 서류 제출총수의 1만분의 5를 초과하고, 해관 행정처벌금액 누계가 30만위안을 초과한 경우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체납하거나 벌금액을 미납한 경우
 - 이 방법 제8조 제2관 제2항에 해당하여 해관에 의해 신용정보이상기업으로 등재되어 90일을 초과한 경우
 - 해관이나 기타 기업의 명의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해관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신용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관관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저해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 형사범죄로 국가신용불량공동제재명단에 등재하는 경우
 -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65)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기업신용관리방법」 제11조

166)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기업신용관리방법」 제13조

167)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기업신용관리방법」 제12조

- 당해 년도에 등록등기 또는 신고하는 비보관/보관업체가 1년 내에 해관의 관리감독규정을 위반하여, 해관의 행정처벌금액 누계가 각각 100만원안, 30만원안을 초과하는 경우

□ 일반인증기업은 다음의 관리조치가 적용됨

- 수출입화물의 평균검사율은 일반신용기업 평균검사율의 50% 이하임
- 수출입화물의 통관수속 우선 처리함
-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총액 또는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담보 금액으로 담보 가능함
-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기타 관리조치함

□ 고급인증기업은 일반인증업체의 관리조치를 적용하고 추가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적용하며 고급인증기업에 적용되는 관리조치는 일반인증기업보다 우선함

- 수출입화물의 평균검사율은 일반신용기업평균검사율의 20% 이하임
- 담보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기업에 대한 조사, 검사 빈도를 축소함
- 수출화물 통관을 위한 사전신고가 가능함
- 기업을 위한 협조요원을 배치함
- AEO 인증국가 혹은 지역 간의 통관우대조치기 적용됨
- 국가 유관부문 간에 실행하는 신용기업 우대조치가 적용됨
- 불가항력으로 중단된 국제무역의 경우 회복 이후 우선 통관함
-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기타 관리조치함

□ 일반신용기업은 세관의 일반적인 관리원칙과 조치가 적용됨

□ 신용불량기업은 다음의 관리조치가 적용됨

- 수출입화물 평균검사율의 80% 이상임

- 검사 후 이상이 없어 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호이스팅 비용, 이동비용, 보관비용 등 비면제함
 - 일괄징수제도 비적용함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샘플/사진 보관 통관제도 비적용함
 - 가공무역 경영기업은 전액담보로 진행함
 - 기업에 대한 조사, 검사의 빈도가 증가함
 - 국가 유관부문 간에 신용불량업체에 연합제재함
 -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기타 관리조치함
- 인증기업이 밀수혐의로 입안조사 혹은 수사를 받는 경우에 해관은 상응하는 관리 조치를 중단할 수 있으며 관리조치를 중단하면 일반신용기업 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함

4. AEO MRA 현황

- 중국은 2018년 8월 기준 총 7개 국가 및 1개 지역공동체와 MRA를 체결했으며, 6개 국가와 MRA 협상을 진행 중임
- 중국과 MRA를 체결한 국가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뉴질랜드, 이스라엘, 호주와 유럽연합(EU)임
 - MRA 협상국은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고임
- 중국은 2020년까지, AEO 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 상호인정을 원하는 모든 국가와 AEO MRA 체결을 목표로 함
- 2014년 4월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간 AEO 상호인정이 전면 시행됨
- 2009년 8월부터 AEO 상호인정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12년 제도비교와 상호 방문 합동실사를 실시해 2013년 6월,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2014년 4월 시행함

- 한-중 AEO MRA의 주요 혜택은 수입검사율 축소, 수입서류심사 간소화, 우선통관조치, 세관연락관 지정, 비상 시 특혜조치 등임
- 실제로 2017년 1월~3월 조사결과, 중국에 신고된 우리나라 화물의 검사율은 일반 검사율보다 낮으며, 통관시간 또한 일반 소요시간보다 짧았음
 - 2017년 1월~3월 중국 세관이 접수한 1만 7,881건의 한국 AEO 화물 통관 신고 중 실제로 검사가 이뤄진 건수는 352건으로 검사율이 1.97%로 일반 화물 검사율인 4.19%에 비해 낮음
 - 우리나라 AEO 화물의 평균 통관시간은 13.15시간으로 일반 화물 통관시간인 26시간의 절반 수준임
- 수입서류심사 간소화는 수입신고 시 세관직원이 물품의 품명, 규격, 수입요건 및 가격 등 신고 정확성 심사를 사전심사가 아닌 사후심사함
 - 국내 수입기업은 중국 수출자로부터 AEO 공인번호(AEOCN+해관고유번호10자리)를 확인하여 해외거래처부호 발급화면에서 공인번호를 변경신청함
 - 국내 수출기업은 중국 수입기업에게 조합번호를 안내하여 세관신고서 비교란에 입력토록 함
- AEO 업체임을 확인한 경우 우선검사 또는 전용창구를 이용한 신속통관이 가능함
 - 일반창구에서 통관 시 1일이 소요되나 MRA 체결 후 전용창구 이용 시 2시간이 소요됨
- 세관연락관은 공인업체가 통관절차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MRA 혜택이 잘 부여되도록 하는 책임자로 통관지연, 세관검사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도움
- 비상 시 특혜조치는 천재지변, 파업, 테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출이 통관 불가능할 경우 비상 시라도 AEO 공인기업 물품에 대해 상기 우대조치를 지속해서 부여한다는 것임

-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AEO 상호인증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세관에 수입신고 시 AEO 공인기업 코드를 수입신고서 비고란에 입력해야 함¹⁶⁸⁾
- AEO 공인기업 코드는 중국측의 수입업체 또는 그 외 통관대행업체는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AEO 공인기업 코드임
 - 우리나라 AEO 공인기업이 중국으로 수출 시 중국측 수입업체는 우리나라측 수출업체의 AEO 코드를 제공받아야 함

168) AEO 기업은 상대국에 수출 시 자사의 AEO 공인번호(중국기업의 경우) 또는 AEO 조합번호(한국기업의 경우)를 상대국의 거래업체에 통보하여야 함. 상기 번호 활용 시 양국의 통관시스템에서 상대국 AEO 기업 자동인식 및 혜택 부여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I. 수출통관절차

1. 개요

- 수출업자는 세관 신고 전 상무부(MOFCOM)에 대외 무역 운영 업체로 등록해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foreign-invested enterprises, FIE)이 대외 무역 운영 업체로 등록하려면 '외국인 투자 기업 승인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수출신고서는 서면 또는 전자 형식(EDI)으로 수출자(또는 탁송자, consignor) 또는 수출자가 위임한 세관 신고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음
- 수출자는 매년 개정되는 수출입물품 필수검사대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대체로 위험한 화학 물질, 폭발 등 불꽃놀이 제품, 라이터, 장난감과 유모차, 식품 및 희토류와 같은 품목 등이 수출 검사 대상임
 - 수출필수검사대상물품의 검사는 해당 물품의 생산 공장에서 검사해야 하며, 위험한 화학 물질 및 기타 위험물의 수출 포장에 추가 검사 및 테스트를 거쳐야 함

- 수출업체는 세관의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세관 검사와 관리를 받음
 - 고위험 업체의 수출물품은 검사를 받으나 그 외의 물품은 신속통관 또는 간결한 검사를 진행한 후 수출됨
-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의 약 ⅓이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로 통관되었으며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전체 평균 약 1.1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수출관세는 국내환경보호와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을 위해 수출입관세세칙에 따라 지정된 품목에 부과하는데 철강 및 철강제품, 대다수의 기타 금속들이 이에 해당함
 - 수출관세대상리스트는 매년 개정되며 수출관세는 법정관세와 임시관세 2종류로 구분됨
- 수출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출거래가격, 운송비, 보험료 및 수출 관련 수수료를 모두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종가세 적용이 일반적임
 - 2017년 종량세가 적용되는 비료를 제외하고 모든 품목이 종가세를 적용받음
- 물품을 수출한 후 수출자는 증치세(VAT)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납세한 증치세 수준보다는 낮음

2. 수출관세

- 2017년 10월 기준 법정 수출관세 부과품목은 2015년도부터 변함없이 102개임
 - 임시수출관세 부과품목은 179개이며 2015년 314개에 비해 135개가 감소했는데 이는 WTO 분쟁 해결 결정의 이행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임

-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는 품목은 주석 및 정광(HS 제2609호)이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25류 토석류 및 소금, 27류 광물성연료, 31류 의약품 및 44류 목재로 수출관세율이 0%임

〈표 3-I-1〉 2017년 중국의 HS 류(Chapter)별 수출관세율

(단위: 개, %)

HS 부(Chapter)	법정관세율		임시관세율	
	개수	관세율 범위	개수	관세율 범위
합계	102	20~50	180	0~35
3류 어패류	1	20	0	-
5류 동물성생산물	4(1)	40	1	0
25류 토석류 및 소금	0	-	8	10~15
26류 광·슬랙·회	7(2)	20~50	25	0~20
27류 광물성연료	0	-	11	3~15
28류 무기화합품	3(1)	20~30	2	5~10
29류 유기화합품	1(1)	40	1	0
31류 의약품	0	-	6	5~30
41류 가죽	2	20	0	-
44류 목재	0	-	6	10~15
47류 펄프	0	-	16	10
72류 철강	17(5)	20~40	38	10~20
74류 동	32(32)	30	33	0~15
75류 니켈	4(4)	40	5	5~15
76류 알루미늄	24(24)	20~30	24	0~15
79류 아연	4(4)	20	4	0~15
81류 기타 금속	3(1)	20	0	-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법정 및 임시관세율을 동시 적용받는 품목의 개수를 의미함
 자료: WTO, 2018. 6, p. 62.

3. 수출규제

-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라 중국은 아래 물품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인간, 동물 및 식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환경보호, 부족한 천연자원을 보호하거나 기타 효과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수출 경영 조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중국의 국제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법률이나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에 의해 필요한 경우

가. 수출금지품목

- 중국 상무부는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수출제한 또는 금지품목을 작성하고 공표하는데, 2008년 4월 이후 수출금지품목 리스트는 별도 개정이 없었음¹⁶⁹⁾
 - 수출금지품목은 고고학 인공물, 베조아르(bezoar), 사향, 검은 이끼, 특정 식물, 뼈, 상아, HS 25류의 천연 모래, 석면,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HS 제29류의 유기화합물, 화학적으로 처리된 비료, 미 가공 목재 및 일부 백금 제품 등이 있음

나. 수출제한

- 중국의 수출제한의 종류는 수출 승인제(라이선스)와 수출할당제(쿼터제)가 있으며, 모든 수출제한물품은 수출승인대상임
 - 즉 수출할당대상물품은 추가적으로 수출승인을 득해야 함

169) 중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aarticle/b/c/200812/20081205948343.html>(검색일자: 2018. 11. 8) 및 WTO(2018. 6, p. 62) 재인용

- 수출할당물품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물품을 대상으로 하나 특정지역에 한해 지정되기도 함

□ 중국 관세청은 매년 수출승인관리대상 품목 리스트를 공표하는데, 수출할당과 승인대상, 수출할당과 승인대상 입찰, 일반수출 승인대상물품들이 나열됨¹⁷⁰⁾

○ 다음연도에 대한 수출할당대상과 할당량은 해당연도 12월에 공표함

□ 2017년 기준 중국의 수출할당대상물품은 <표 3-I-2>와 같이 HS Code 8자리를 기준으로 약 100개 품목이며 2015년 이후 변경사항이 없음

○ 2015년 이후 활석덩어리(talcum lump), 마그네시아(magnesia), 안티모니와 그 제품(antimony and products thereof), 인듐과 그 제품(indium and products thereof) 등은 수출할당에서 제외되어 수출승인제 대상물품으로 변경됨

<표 3-I-2> 2017년 중국의 수출할당과 승인대상물품 목록

물품	관리 종류	관리 주체 또는 대상
1. 수출할당과 승인대상		
- 쌀, 옥수수, 밀, 면화, 석탄	수출할당과 승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수출할당 상무부(MOFCOM) 수출승인
- 홍콩과 마카오 등으로 수출되는 밀가루; 옥수수 가루, 쌀가루, 톱질한 목재, 살아 있는 소, 돼지 및 닭 - 원유; 정유; 은; 인산염 암석	수출할당과 승인	상무부(MOFCOM) 수출할당
- 매트 러쉬 및 매트 러쉬 제품, 활석 덩어리 분말, 마그네시아, 감초 및 감초 제품	수출할당 입찰과 승인	상무부(MOFCOM) 수출할당

170) 중국 상무부, <http://wms.mofcom.gov.cn/article/zcfb/g/201512/20151201225345.shtml> (검색일자: 2018. 11. 8) 및 WTO(2018. 6, p. 63) 재인용

물품	관리 종류	관리 주체 또는 대상
2. 수출승인대상		
- 살아 있는 소, 돼지 및 닭 - 신선한 냉장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 - 냉동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 - 보크 사이트; 희토류; 파라핀; 텅스텐, 카보 런던, 백금(가공 무역 용), 일부 금속 및 금속 제품; 몰리브덴 및 몰리브덴 제품; 자연 모래 - 석유 제품(오일, 그리스, 윤활기유) - 구연산; 페니실린 공업 소금; 비타민C; 황산, 이 나트륨 황산염(disodium sulphate) - 오토바이(모든 지형 차량 포함) 및 엔진과 프레임 - 자동차(완전히 노크 다운 키트 포함) 및 새시 - 안티몬, 인듐, 주석 및 이들의 생성물	수출 승인	수출 계약서에 서명한 수출업자에게 승인이 부여됨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알루미늄, 코크스, 텅스텐 제품, 탄화규소, 망간 및 형석	수출 승인	수출 승인 신청 전 수출허가 선행필수

자료: WTO, 2018. 6, p. 63.

- 수출할당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수출신고 전 수출할당량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대만, 홍콩 및 마카오 등에 수출허가대상물품을 수출 시 중국 내 지정항구를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함
- 감초(liquorice), 일부 유형의 마그네시아 제품(some types of magnesia products), 희토류(rare earths), 안티몬과 그 제품(antimony and its products) 및 천연 모래(natural sands)등이 해당됨

II. 수입통관절차

- 본 장은 중국의 통관일체화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통관 운용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수입통관절차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음

1. 전국통관일체화에 따른 수입통관절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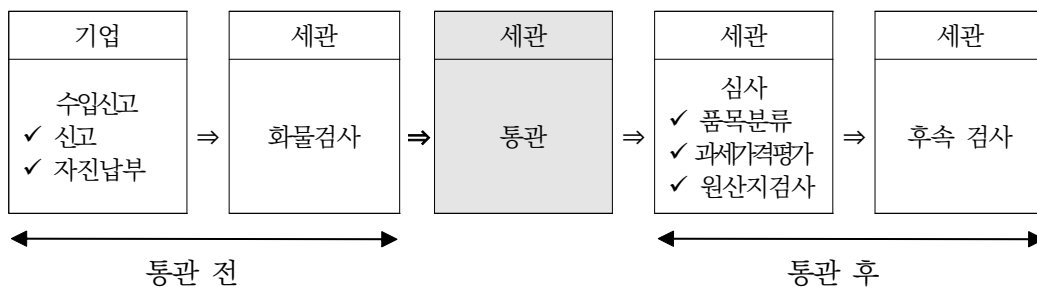
- 중국의 수출입 물량 급증으로 신속한 통관에 대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등 국가적으로 효율적 통관제도의 중요성이 커짐
 - 통관 허가 전의 가격심사, 품목분류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통일되지 않은 세관별 법 집행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함
 - 부서 간, 지역 간 통관에 대한 협력이 원활하지 못함
- 이런 요구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기업이 중국 어떤 도시에서 통관 절차를 받든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식과 기준을 적용하는 전국통관일체화를 시행함¹⁷¹⁾
 - 2016년 4월, 전국세관통관일체화 개혁 실시 방안이 발표되었고 2017년 7월,

171) 「전국해관통관일체화 개혁추진에 관한 공고」 2017년 제25호 공고

전국세관통관일체화가 전면 실시됨

- 통관일체화를 위해 2016년 6월 1일 상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이후 2017년 4월부터 시범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2017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입항지, 운송방식, 상품에 대해 통관일체화 정책을 적용함

〈표 3-II-1〉 현행 수입통관 절차(2018년)



- 통관일체화 후 수입통관 절차상 가장 큰 변화는 선통관 후심사 방식으로 물품을 먼저 통관시켜서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임
 - 2017년 7월 통관일체화 시행 전에는 물품을 먼저 심사한 뒤 통관시키는 선심사 후통관 방식이었다면, 동제도 시행으로 물품 통관을 먼저 시킨 후에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중국의 평균 수입통관 소요시간은 2016년 기준 25.1시간에서 2017년 제도 시행 후 평균 15.9시간으로 36.7% 단축됨¹⁷²⁾
 - 주요 세관의 2017년 평균 통관 소요시간은 티엔진 15.2시간, 상하이 18.8시간, 광저우 12.7시간, 칭다오 16.2시간임
- 또한 통관일체화는 기존에 지역마다 달리 행해지던 통관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으로 지역세관별로 규정과 절차, 비용 등이 달라 발생했던 문제들이 사라지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반영돼 절차의 투명성도 기대할 수 있음

172) 중국해관총서 개혁전면심화영도소조 판공실 발표 자료

- 통관일체화 전 중국의 각 해관은 담당 지역별로 업무가 독립되어 있어 해관별로 다른 규정과 절차, 비용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통관일체화를 시작한 이후 모든 해관에서 동일한 업무가 이루어짐

가. 통관 전

1) 신고

- 신청인은 직접 EDI 센터에 전산입력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며 자체적으로 화물접수지역을 선택할 수 있음
 - 기업은 임의로 통관 혹은 신고 항구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국 어디서든 통관 관련 업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선택지역에 통관신고, 증치세 납부, 통관절차 진행이 가능함¹⁷³⁾
 - 신청방법은 중국해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¹⁷⁴⁾
- 수입신고접수 확인은 세관이 발송하는 신고접수증을 통해 확인 가능함
 - 세관은 수입신고가 완료된 기업에게 신고접수증을 발송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송증을 발송함
-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서류, 특수서류, 예비서류로 구분됨¹⁷⁵⁾
 - 기본서류는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업 및 운송서류 등임
 - INVOICE(운송보험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P/L(산적화물, 단일

173)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Q&A 참조, https://www.kotra.or.kr/kbc/KTMIUI080M.html?TOP_MENU_CD=33695&LEFT_MENU_CD=35347&MENU_CD=35347&PARENT_MENU_CD=&SITE_CD=01005&SITE_SE_CD=1039126&BBS_ID=&VOCNO=VO685061(검색일자: 2018. 8. 1)

174) 중국해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3389/module7219/page1.htm>

175)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21&natnCd=CN>

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 제외), B/L(해운 수출입의 경우), AWB(항공운송의 경우), 소포명세서(우편운송의 경우), 화물수취증(육상운송의 경우), 수출대금영수 신고확인증(수출의 경우), 세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증명 및 보세등기증명서 등임

- 특수서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근거해 취급 품목에 따라 요구됨
 - 쿼터허가증(국가계획 부문의 쿼터증명, 수출입허가증 등), 기타 특수서류(상품검사증, 동식물검역, 약품검사증, 기타 감독조건상의 각종 증서) 등임
- 예비서류는 필요 시 세관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
 - 무역계약서, 원산지증명, 위탁업체의 영업허가증, 위탁업체의 장부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임

□ 신고인은 해관 공공 서비스 조회를 통해 신고서의 처리 단계 및 상태를 알 수 있음¹⁷⁶⁾

- H2010 시스템의 해관 공공 서비스 조회(www.customs.gov.cn), 12360 위챗 공식계정(微信公众号) 등을 통해 해관에 통관신청서를 조회하거나 12360번 전화로 문의가 가능함

2) 자진납부

□ 통관 전, 기업은 수입신고 시 신고와 함께 수입 시 발생할 예상 관세 및 증치세를 선납해야 함

- 통관일체화 후에는 기업이 수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며, 기업의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세금을 계산해 수속에 따라 납부함
 - 수입신고란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관을 신청하는 행위임

176)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2866>

- 관세징수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및 「수출입관세조례」에 근거로 국가의 별도규정 외에 모든 수출입화물은 관세징수대상이며,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기준으로 함
- 수입과정에서 관세뿐 아니라 소비세, 증치세 등 내국세를 징수함
- 해관신고서를 작성하면 사전신고 시스템 세금계산 서비스에서 납부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나타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함¹⁷⁷⁾
 - 예상세액은 중국 세관의 EDI 시스템상 사전입력란의 해관세금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전신고 항목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금이 자동 계산되며, 세금 결과에 대한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세관에서 수출업자에게 세금고지내용을 통보함
 - 중국전자항구QP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하여 사실대로 규범에 맞게 보관단 세수 관련 사항과 각 항목 데이터를 입력함
 - 세금고지서가 필요한 경우 현장세관에 신청하여 출력 가능함
 - 세금계산 시 금액을 잘못 기재할 경우 사후검사로 적발되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적발되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세금 계산이 필요함
- 만약 합산과세 담보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관 통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담보금액에서 세금이 삭감됨
 - 합산과세 담보등록이란 일정 기간 내 여러 차례 수출입을 진행할 경우 매 건 따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여 납부세금은 보증 한도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화물 통관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임¹⁷⁸⁾

177) 상하이 관세관, 「중국해관 통관일체화 개혁 내용과 Q&A」,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r7XTvgt-EAJ:down.mofa.go.kr/cn-shanghai-ko/brd/m_20316/down.do%3Fbrd_id%3D20016%26seq%3D1%26data_tp%3DA%26file_seq%3D1+&cd=1&hl=ko&ct=clnk&gl=kr(검색일자: 2018. 9. 16)

178) 수입신고 시 납부 세금은 보증 한도액에서 공제되고 일정 기간 세금을 합산해 납부한 후 보증 한도액은 회복됨

3) 화물검사

- 기업이 수입신고와 과세납부 수속을 완료하면 화물검사가 진행되며, 통관 전 화물 검사는 간소한 편임
 - 통관 전 화물검사는 화물의 안전여부, 합법적 수출입 여부 등 중요 리스크에 대해서만 판별한 후 대부분의 화물을 우선 통관시킴
 - 화물검사 범위는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 신고 내역과의 일치여부 등임
- 화물검사는 주로 항구 통관현장에서 처리함¹⁷⁹⁾
 - 세관의 화물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또는 화물장치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함
 - 단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컨테이너화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화물은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현장에 세관원을 파견하여 검사함
- 화물검사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해 시행함
 - 화물 안전진입 통제관리는 품명, 규격, 수량, 상표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함
 - 항공·해상·육상운송, 홍콩·마카오 소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를 실시함
- 2017년 7월 이전에는 지역 해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품목분류와 원산지 심사가 이루어지고, 통관 전에 화물검사를 통해 화물과 서류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관세를 징수하면 통관이 완료되었음
 - 통관일체화 이전에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이 정해지다보니 화물통관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함

179) <http://www.itsilkroad.com/tcs/sample/view.html?s=6b48fbd0fd66a2a98cf4bf793b2cf25717>

- 또한 지역별로 제도가 달리 운영되다보니,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나 세율 등도 차이가 있어 비용부담도 발생함
- 리스크예방센터 담당자는 앞 단계의 서류신고, 화물검사, 관세징수 등의 통관절차를 재확인한 후, 확인인장을 찍고 수출입화물 반출을 승인하는 통관처분을 내림
- 단 보세가공무역방식의 수입화물과 사후관리대상인 물품은 세관이 신고 서류의 심사확인 후 화물을 통과시키며, 수출입화물은 후속관리로 전환됨

나. 통관 후

1) 심사

- 통관일체화 개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서류심사가 통관 후에 관리되면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는 반면, 사후심사 및 관리가 더욱 강화됨¹⁸⁰⁾
- 통관 후 심사는 품목분류, 과세가격평가, 원산지에 대한 것으로 신고요소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룸
 - 통관일체화 전에는 통관 과정에 대한 전면 심사와 확정을 통해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등 과세 관련 신고 요소에 대해 세관신고서별로 심사가 확정되었음
- 신고요소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은 조세징수관리센터에서 전국의 세관신고 데이터를 품목별, 산업별로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심사함
 - 심사내용은 세금과 관련한 신고요소인 HS Code 분류, 가격평가, 원산지 확인 등 세수관리요소의 정확성을 심사하고 이를 통해 세수위험을 통제함¹⁸¹⁾
 - 전국의 세관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세징수관리센터(3개)가 심사를 실시하며,

180) 강승익, 중국신화국제물류유한공사 대표 인터뷰, 2018. 8. 3.

181) 세수관리요소는 세금징수요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됨

HS Code 별로 조세징수관리센터가 달리 지정됨

- 상하이(上海)조세징수센터는 주로 기계전기류, 광저우(廣州)조세징수센터는 화공류, 베이징-톈진(京津)조세징수센터는 농림, 식품,약품, 경공업, 잡화, 방직류 및 항공기 등 품목에 대해 세금신고관련 요소의 정확성 검증과 심사를 위한 정보수집과 정보통합이 이뤄짐

○ 사후감사의 결과 또한 소재지 해관에서 센터로 보고해야 함

〈표 3-11-2〉 조세징수센터별 해당 심사 품목

	상하이조세징수센터	광저우조세징수센터	베이징-톈진조세징수센터
담당 품목	기전류 (기전, 계측기, 교통공구)	화공류 (화공원료, 고분자, 에너지, 광물, 금속류)	농림, 식품, 약품, 잡제품, 방직류, 항공기 등 상품
HS CODE 범위	세관책자 중 총 8장 관할 ¹⁾ (제84~제87장, 제89~제92장)	2세관책자 중 총 30장 관할 (제25~제29장, 제31장~제40장, 제68장~83장)	세관책자 중 총 58장 관할 (제1~제24장, 제30장, 제41~제67장, 제88장, 제93~제97장)

주: 1) 세관책자는 중국 관세율표를 뜻함

자료: 외교부, 『중국해관 통관일체화 개혁 내용과 Q&A』, http://down.mofa.go.kr/cn-shanghai-ko/brd/m_20316/down.do?brd_id=20016&seq=1&data_tp=A&file_seq=1(검색일자: 2018. 8. 6)

□ 통관 후 심사대상은 무작위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신용등급, 취급화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조세징수관리센터에서 심사대상을 선정하여 각 소재지 해관에 하달함

□ 통관 후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과 불합치하거나 자진 납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과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

○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해관의 '하이리스크 등급'에 추가되어 중국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일부에서는 중국의 통관제도가 무원칙하며 낙후된 제도라고 알고 있으나, 심사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으므로 합법적인 통관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¹⁸²⁾

-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화물운송의 경로에 따라 관할 조세징수센터가 다른지 유의해 해당 조세징수센터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감독규정을 어긴 위법 행위로 판단되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됨

2) 절차 완료

- 해관의 관리방식이 지방분권에서 중앙집권으로 바뀌면서 리스크관리센터, 조세징수관리센터에서 각지 해관의 데이터를 확인·통제할 수 있음
 - 과거 중국은 판시 등 인맥을 통해 통관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으나 현재는 해관 총서에서 데이터를 관리하여 지역해관의 재량이 대폭 축소됨

182) <http://www.itsilkroad.com/tcs/sample/view.html?s=6b48fbd0fd66a2a98cf4bf793b2cf25717>

참고문헌

- (사)한국관세물류협회, 『특허보세구역 시설·장비 등 특허 요건 표준화 연구-보세창고를 중심으로』, 2009. 7.
- KITA,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 2016.
- 강문성, 『한-중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엄격성 지수에 대한 연구』, 2015. 6.
- 강성훈·김다량·노영예·양지영, 『주요국의 재수입면세제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 곽노성, 『중국의 덤핑, 보조금 조치에 관한 연구』, (사)국제공정무역학회, 2012. 11.
- 농촌진흥청, 『중국 보세구 활용방안 및 직구시장 현황과 전망』, 2016. 12.
- 라공우·김희철, 『한국과 중국의 관세형별 규정의 비교 연구』, 2017. 2, pp. 77~84.
- 마광, 『중국과 한국의 대외무역장벽조사 법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p. 225.
- _____, 『중국의 원산지 법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8.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장벽 보고서』, 2018. 3, pp. 50~51.
- _____, 『한-중 FTA상세 설명자료』, 2014. 11.
- 송기찬·관세관, 『2018년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2018. 5.
- 심영수·현인규·주엽, 『한중 보세구역제도 비교분석』, 한국물류학회, 2010. 12.
- 오경수, 『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 산업의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17. 11.
- 윤인채, 『중국세관의 통관개혁방향 및 시사점』, 관세청, 2015.

- 이성우, 『중국 세관특수구 제도 특성 분석』, 『해양물류연구』, 제5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1.
- 전희, 『중국 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2015.
- 정재호·노영예·박지우·홍원표, 『주요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 비교』, 2015. 12.
- 채형복, 황해률, 『한-EU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2010. 2.
- 최강록, 『2018 중국 투자유치 전략』, KOTRA 청다오무역관, 2017. 12.
- 포봉·한상현, 『중국 관세행정구제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2014. 2.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2017. 2.
- 한국국제통상학회, 『중국, 인도의 무역구제제도와 한국에의 시사점 연구』, 2016. 10.
- 한국법제연구원, 『중국 행정심판 제도의 주요 내용』, 2016. 2.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우리나라의 對(대)중국 투자 현황과 신창타이 시대 우리의 대응방안』, 2017. 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제도연구: 중국』, 2013. 12.
- 한상돈, 『중국 행정법의 발전과 최근 동향』, 연변과기대, 2005.
- EY, *Trade Watch*, Volume 14, Issue 3 , 2015. 9.
- OECD, *Economic Survey of China* 2017.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2018. 6.
- WTO, *Trade Policy Review-China*, WT/TPR/S/375, 2018. 6. 6.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China Customs Story』, 2017. 7.
- 상하이 관세관, 「중국해관 통관일체화 개혁 내용과 Q&A」,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r7XTvgt-EAJ:down.mofa.go.kr/cn-shanghai-ko/brd/m_20316/down.do%3Fbrd_id%3D20016%26seq%3D1%26data_tp%3DA%26file_seq%3D1+%&cd=1&hl=ko&ct=clnk&gl=kr(검색일자: 2018. 9. 16)
- 조선비즈, 「중국에서 수출관세 환급 받는 법」,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0/2018041000882.html(검색일자: 2018. 11. 20)

- 한국무역신문, 「중국 해관의 통관 일체화, 무엇이 달라졌나?」, 2017. 12. 27.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 KOTRA 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7010&searchNationCd=101046>(검색일자: 2018. 9. 4)
- KOTRA 뉴스, 「중국의 FTA 체결 동향과 한-중FTA 활용 시사점」, 2017. 4. 2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8201>(검색일자: 2018. 9. 13)
- KOTRA 뉴스, 「중국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53>(검색일자: 2018. 9. 13)
- KOTRA 뉴스, 「중국 전국 통관 일체화 실무 FAQ」,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2866>(검색일자: 2018. 8. 7)
- KOTRA, [전문가 기고] 中 통관일체화 개혁 우리 기업 대응방안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60419>(검색일자: 2017. 9. 11)
- KOTRA, [전문가 기고] 中 해관 통관일체화, 무엇이 달라졌나?,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60420>(검색일자: 2017. 9. 11)
- KATI, 「중국 통관일체화(通關一體化) 제도 분석 및 시사점」, http://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85587&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검색일자: 2018. 8. 7)
- KTТА, 「중국 통관일체화, ‘득실’ 여부는 기업 하기 나름」, <http://www.textra.or.kr/newsdata/view.htm?t=data&s=6575>(검색일자: 2018. 8. 7)
- KIEP, 「중국세관, 전국범위 “통관 일체화 조치” 시행」, <https://csf.kiep.go.kr/file/download.do?fileId=9319>(검색일자: 2018. 8. 7)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http://www.koema.or.kr/koema/report/stats_view.html?intNo=

- 76134&condi=&s_word=&page=1(검색일자: 2018. 8. 16)
-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h.html>(검색일자: 2018. 9. 11)
- IMF, <http://www.imf.org/en/News/Articles/2018/07/25/na072618-chinas-economic-outlook-in-six-charts>(검색일자: 2018. 9. 12)
- PWC, “Updated customs valuation rules for China”, <https://www.pwccustoms.com>(검색일자: 2018. 11. 20)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
-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 USTR, www.ustr.gov
- 中國開發區(중국개발구), <http://www.cadz.org.cn>.

부록 I. 중국 관세율 조회 방법

① 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의 인터넷+해관(互联网+海关) 접속.



② 인터넷+해관(互联网+海关)에서 세율조회(税率查询)클릭



③ HS코드(税号) 또는 상품명(商品名称) 입력

2017年10月17日 星期二 网上海关AF

互联网+海关

业务办理 首页 办事指南 登录 | 注册 找回密码

进出口商品税率查询

税号 商品名称 查询

税号	商品名称	进口最惠国税率	进口普通税率	进口暂定税率	操作

免责声明：网上公布的税率仅供参考，不作为任何法律依据。海关对公布的税率有修改和调整权。用户应密切关注海关网站，及时了解税率的变化。对于用户使用网站提供的资料和服务可能存在的风险和后果，由用户自行承担。

④ 세율 더 보기(更多税率) 클릭

2017年10月17日 星期二 网上海关AF

互联网+海关

业务办理 首页 办事指南 登录 | 注册 找回密码

进出口商品税率查询

税号 3922 商品名称 查询

税号	商品名称	进口最惠国税率	进口普通税率	进口暂定税率	操作
3922100000	塑料浴缸、淋浴盆、洗澡盆及盥洗盆	10%	80%		更多税率
3922200000	塑料马桶座圈及盖	10%	80%		更多税率
3922900000	塑料便盆、抽水马桶等类似卫生洁具	10%	80%		更多税率

首页 上一页 1 下一页 末页 跳转到 页码

⑤ 협정세율(协定税率)을 클릭



⑥ 중-한자유무역협정(中国韩国自贸协定) 세율 조회

☒ **进口协定税率**

协定名称	进口协定税率
中国-东盟自贸区	0
中新自贸协定	0
中巴自贸区	5% _W
中国韩国自贸协定	7% _W

中国韩国自贸协定

부록 II. 중국 환급 신청서 양식(1)

附件 3

转账退税申请书（格式一）

编号: _____

_____ 海关:

根据你关签发的税款专用缴款书（编号: _____），本纳税人已按规定缴纳税款。按照有关规定，现申请退税（及由此产生的银行利息），请予核准。

1. 已缴税款金额:
关税_____元, 增值税_____元, 消费税_____元, ……
2. 申请退税理由:
3. 申请退还金额:
关税_____元, 增值税_____元, 消费税_____元, ……
4. 申请人名称:
5. 开户银行:
6. 开户银行账号:

申请人签章:
年 月 日

申请人联系地址: _____ 邮政编码: _____

联系人: _____ 电话: _____

注:《转账退税申请书》一式二联, 第一联随原缴款书复印件送国库, 第二联海关留存。

说明: 1. 此申请书适用于以银行划转方式退还税款的情况。

2. “申请退还金额”中所涉及的税种应与原缴款专用缴款书上所列关税、增值税、消费税或其他实际项目一致。

3. 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第 52 条第 2 款规定, 纳税义务人发现多缴税款的, 可自缴纳税款之日起 1 年内要求退还多缴的税款并加算同期活期存款利息。

4. 此申请书需附原缴款专用缴款书复印件各一份。

5. 此申请书需申请人签字并加盖单位公章。

김종환 / 차이나이스트 / 2015-07-14 18:08:49

자료: 강성훈·김다람·노영예·양지영, 『주요국의 재수입면세제도 비교연구』, 2016. 12.

부록 Ⅲ. 중국 환급 신청서 양식(2)

现金退税申请书（格式二）

编号：_____

_____海关：

根据你关签发的税款专用缴款书（编号：_____），本纳税人已按规定缴纳税款，按照有关规定现申请退税（及由此产生的银行利息），请予核准。

1. 已缴税款金额：
关税_____元，增值税_____元，消费税_____元，……

2. 申请退税理由：

3. 申请退还金额：
关税_____元，增值税_____元，消费税_____元，……

4. 取款人姓名：

5. 取款人单位：

6. 取款人有效身份证明号码：

申请人签章：
年 月 日

申请单位联系地址：_____ 邮政编码：_____

联系人：_____ 电话：_____

注：《现金退税申请书》一式二联，第一联随原缴款书复印件送国库，第二联海关留存。

说明：1. 此申请书适用于纳税人以现金方式缴款，现要求直接退付现金的情况。

2. “申请退还金额”中所涉及的税种应与原缴款专用缴款书上所列关税、增值税、消费税或其他实际项目一致。

3. 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第52条第2款规定，纳税义务人发现多缴税款的，可自缴纳税款之日起1年内要求退还多缴的税款并加算同期活期存款利息。

4. 此申请书需附原缴款专用缴款书复印件各一份。

5. 此申请书需申请人签字并加盖单位公章。

김경환 / 차이네트워크 / 2015-07-14 18:08:49

자료: 강성훈·김다람·노영예·양지영, 『주요국의 재수입면세제도 비교연구』, 2016. 12.

부록 IV. 주요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화물목록

세척번호	품목
*03.03	냉동생선알
03.04	신선·냉장·냉동생선포 및 기타어육제품(형태불문)
*03.06	각테일새우·게살
*03.07	냉동 또는 건조된 오징어 및 문어·낙지
*05.04	동물의 내장(腸衣)
*08.01	캐슈너트(cashewnut)
*17.01	굵은 설탕 및 백설탕
18.04	코코아유지·코코아오일
18.05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코코아분말
18.06	초콜릿·기타 코코아 함유식품
*24.02	시가·겔렌
*24.03	기타 담배제품
30.03	2종 또는 2종 이상의 성분이 혼합되어 이루어지고 질병치료 또는 질병방지에 사용되는 약품(세척번호30.02·30.05·30.06불포함), 용량을 배합확정하지 않았거나 소매용 포장하지 않은 약품
30.04	혼합 또는 비혼합제품으로 구성되고 질병치료 또는 질병방지에 사용되는 약품(세척번호 30.02·30.05·30.06불포함), 용량이 배합확정되었거나(피부용패치제품포함) 소매용으로 포장된 제품
제31장	비료
제32장	유펜제엑스(extract)·염료엑스·타닌(tannin) 및 그 유도체;염료·안료 및 기타 착색제;유성페인트및바니시;퍼티(putty) 및 기타 유형의 접합제;수성잉크·유성잉크
제33장	엡센스오일·아로마크림;방향제품 및 클린징제품
제34장	비누·유기표면활성제·세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청결제·양초 및 유사제품·조소용석고·“치과용왁스” 및 치과용 숙성석고(熟石膏)제제
제38장	기타 화학제품
39.17	플라스틱파이프 및 그 부속품(예:접합부·플랜지·엘보(elbow)형 파이프)
39.18	조각 또는 두루마리 형태의 바닥시공용제품, 접착여부불문
39.19	접착식플라스틱판·조각·필름·얇은조각(箔)·벨트·편평한 강판 및 기타 편평한 형태의 재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무관
39.20	기타 비포말형 플라스틱판·조각·필름·얇은 조각·편평한 강판,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강화·압축·지탱되지 않았거나 유사한 다른 방법으로 합성되지 않은 제품

세척번호	품목
39.21	기타플라스틱판·조각·필름·얇은조각·편평한 강판
39.22	플라스틱 욕조·샤워부스용바닥재·세면대·비데·변기·변기뚜껑·변기물통 및 기타 위생용구
39.23	운송 또는 화물포장용플라스틱제품;플라스틱제병마개·뚜껑·기타 유사제품
39.24	플라스틱제식기·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세면용품
39.25	기타 세척번호에 열거되지 않은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39.26	기타 플라스틱제품과 세척번호 39.01-39.14에 열거된 기타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
40.07	가황고무선 및 가황고무줄
40.08	가황고무(경질고무제외)로 만든 판·조각·벨트·자루 또는 型材 또는 이형자재(異型材)
40.09	가황고무(경질고무제외)로 만든 파이프,부속품포함여부불문(예:접합부·플랜지·엘보형파이프)
40.10	가황고무로 만든 전동벨트;가황고무타이어(實心또는半實心)·고무胎面·고무타이어보조 벨트(襯帶)
40.11	고무튜브(공기충전식)
40.12	재생튜브 또는 중고튜브;가황고무타이어·고무胎面·고무타이어보조벨트(襯帶)
40.13	고무튜브
40.14	경화고무(경질고무제외)로 만든 위생 및 의료용품(젓꼭지포함),경질고무로 만든 부속품포 함여부불문
40.15	가황고무(경질고무제외)로 만든 의류제품 및 악세사리(장갑포함)
40.16	가황고무(경질고무제외)로 만든 기타 제품
40.17	각종형태의 경질고무(순수한경질고무등),페비닐포함;경질고무제품
41.04	무두질되고 털을 제거한 소가죽(물소가죽포함)·말가죽 및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딱딱한 가죽, 분할(剖層)여부불문, 그러나 더 이상 가공되지는 않은 상태일 것
41.05	무두질되고 털을 제거한 면양 또는 어린 양의 가죽 및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딱딱한 가죽, 분할여부불문, 그러나 더 이상 가공되지는 않은 상태일 것
41.06	무두질되고 털을 제거한 기타 동물의 가죽 및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딱딱한 가죽, 분할여부 불문, 그러나 더 이상 가공되지는 않은 상태일 것
41.07	무두질 또는 반초(半硝)처리하여 가공한 소가죽(물소가죽포함, 털은 제거)과 말가죽, 지화(紙化) 처리한 양피 포함, 분할여부불문
41.12	무두질 또는 반초처리하여 가공한 면양 또는 어린양의 피혁(양모는 제거), 분할여부불문
41.13	무두질 또는 반초(半硝)처리하여 가공한 기타 동물피혁(털제거), 지화, 분할여부불문
*42.02	피혁 또는 재생피혁·플라스틱박막필름·방직재료·강지(鋼紙) 또는 지판으로 만들어지거 나 100% 또는 주요 부분이 강지 또는 지판으로 코팅된 의류용상자·트렁크·소형상자·문서 가방·서류가방·책가방·안경집·망원경케이스·악기용케이스·카메라케이스·충기보호 용주머니 및 유사제품;지갑·지도함·담배케이스·공구함·운동용주머니·보석함·포크와 나이프 등 의식기 및 유사제품

세척번호	품목
42.03	피혁 또는 재생피혁으로 만든 의류제품 또는 착용액세서리
43.02	봉제되지 않았거나 봉제되고 무두질된 모피
43.03	모피로 만든 의류·액세서리제품 및 기타 제품
*43.04	인조모피제품
48.17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편지봉투·봉합엽서·엽서·통신카드;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상자·봉투·파일·내장용 각종 문구류
48.18	휴지 및 기타 유사제품, 가정용 또는 위생용섬유소퍼프(絮紙) 및 섬유종이, 두루마리 너비가 3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거나 일정한 사이즈 또는 형태를 갖추도록 절단된 것; 종이펠프·종이·섬유소퍼프 또는 섬유종이로 만든 손수건·수건·테이블보·냅킨·기저귀·지혈대·침대시트 및 그와 유사한 가정용 또는 위생용이나 병원용품·의류제품·기타 액세서리
48.19	종이·판지·섬유소퍼프 또는 섬유종이로 만든 상자·케이스·갑·봉투 및 기타포장용기;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파일박스·우편물수납케이스 및 유사제품, 사무실이나 상점 등과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제품
48.20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등기부·장부·공책·구매장부·영수증·편지지·수첩·다이어리 및 유사제품, 연습장·먹지·파일·서류철·파일커버·상업용서식용지·복사지가 가운데 끼여 있는 종이 및 기타 문구용품;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견본장(샘플브로셔)·앨범 및 책표지
48.21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각종 상표, 인쇄여부불문
48.22	펠프·종이 또는 판지(구멍을 뚫었거나 경화되었는지 여부불문)로 만든 통모양의 실패·족자·紵子 및 유사제품
48.23	일정한 크기 또는 형태로 재단된 기타 종이·판지·섬유소퍼프 및 섬유종이; 펄프·종이·판지·섬유소퍼프 및 섬유종이로 만들어진 기타 제품
51.06	거칠게 가공된 양모털실, 소매판매하지 않는 것
51.07	정교하게 가공된 양모털실, 소매판매하지 않는 것
51.08	동물의 가는 털(거칠게 가공되거나 정교하게 가공된 것)로 만든 실, 소매판매하지 않는 것
51.09	양모 또는 동물의 가는 털로 만든 실, 소매판매용
51.10	동물의 굵은 털 또는 말의 털로 만든 실(말의 털을 굵고 성기게 꼬아 만든 색실 포함), 소매판매여부불문
51.11	거칠게 가공한 양모 또는 거칠게 가공한 동물의 가는 털로 만든 기계직조물
51.12	정교하게 가공한 양모 또는 정교하게 가공한 동물의 가는 털로 만든 기계직조물
51.13	동물의 굵은 털 또는 말의 털로 만든 기계직조물
52.04	면사로 만든 재봉용실, 소매판매여부불문
52.05	면사(재봉용실제외), 중량을 기준으로 면화함량이 85% 이상이고 소매판매하지 않는 것
52.06	면사(재봉용실제외), 중량을 기준으로 면화함량이 85% 이하이고 소매판매하지 않는 것
52.07	면사(재봉용실제외), 소매판매용

세척번호	품목
52.08	면방직물, 중량을 기준으로 면화함량이 85% 이상이고 평방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미만인 것
52.09	면방직물, 중량을 기준으로 면화함량이 85% 이상이고 평방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상인 것
52.10	면방직물, 중량을 기준으로 면화함량이 85% 이하이며 화학섬유와 혼방되고 평방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미만인 것
52.11	면방직물, 중량을 기준으로 면화함량이 85% 이하이며 화학섬유와 혼방되고 평방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이상인 것
52.12	기타면방직물
53.06	아마실
53.07	황마사 또는 세척번호53.03기타방직용인피(韃皮)섬유사
53.08	기타식물성방직섬유사:종이실(紙紗線)
53.09	아마직조물
53.10	황마 또는 세척번호53.03기타방직용인피섬유로 만든 방직물
53.11	기타식물성방직섬유로 만든 방직물;종이실로 만든 방직물
54.01	화학섬유장사(長絲)로 방직가공한 재봉용 실, 소매 판매여부불문
54.02	합성섬유장사(재봉용실제외), 소매판매하지 않으며 굵기가 67데니어 이하이고 1가닥으로 이루어진 합성섬유 포함
54.03	인조섬유장사(재봉용실제외), 소매판매하지 않으며 굵기가 67데니어 이하이고 1가닥으로 이루어진 인조섬유 포함
54.04	단면의 직경이 1밀리미터 이하이고 굵기가 67데니어 이상이며 1가닥으로 이루어진 합성섬유;표면너비가 5밀리미터 이하인 합성섬유방직재료를 이용하여 길게 만든 제품과 그 유사품(예:인조풀)
54.05	단면의 직경이 1밀리미터 이하이고 굵기가 67데니어 이상이며 1가닥으로 이루어진 인조섬유; 표면너비가 5밀리미터 이하인 인조섬유방직재료를 이용하여 길게 만든 제품과 그 유사품(예:인조풀)
54.06	화학섬유장사(재봉용실제외), 소매판매용
54.07	합성섬유장사로 방직한 직물, 세척번호54.04에 열거된 재료로 만든 방직물포함
54.08	인조섬유장사로 방직한 직물, 세척번호54.05에 열거된 재료로 만든 방직물포함
55.08	섬유가 짧은 화학섬유로 만든 재봉용실, 소매판매여부불문
55.09	섬유가 짧은 합성섬유로 만든 실(재봉용실제외), 소매판매하지 않는 것
55.10	섬유가 짧은 인조섬유로 만든 실(재봉용실제외), 소매판매하지 않는 것
55.11	섬유가 짧은 화학섬유로 만든 실(재봉용실제외), 소매판매용
55.12	섬유가 짧은 합성섬유로 만든 방직물, 중량을 기준으로 섬유가 짧은 합성섬유의 함량이 85% 이상인 것
55.13	섬유가 짧은 합성섬유로 만든 방직물, 중량을 기준으로 섬유가 짧은 합성섬유의 함량이 85% 미만이고 면과 혼방된 것, 평방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미만인 것

세척번호	품목
55.14	섬유가 짧은 합성섬유로 만든 방직물, 중량을 기준으로 섬유가 짧은 합성섬유의 함량이 85% 미만이고 면과 혼방된 것, 평방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상인 것
55.15	섬유가 짧은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방직물
55.16	섬유가 짧은 인조섬유로 만든 방직물
56.03	방직되지 않은 것, 침지(浸漬)·도포(塗布)·뒤집기(包覆)·층압(層壓) 여부불문
*56.07	마 또는 합성섬유로 방직가공한 실·끈·줄·로프
56.08	실이나 끈 또는 줄을 엮어 만든 그물재료;방직재료로 만들어진 어업용 그물 및 기타 그물
57.01	용단 및 방직재료로 만든 기타 리그제품, 완제품 여부불문
57.02	기계로 직조한 카펫 및 방직재료로 만든 기타 리그제품, 커지 또는 플룩가공하지 않은 것, 완제품여부불문, “開來姆”·“蘇麥克”·“佉拉馬尼” 및 그와 유사한 수직카펫
57.03	커지카펫 및 방직재료를 사용하여 커지가공한 리그제품, 완제품여부불문
57.04	펠트카펫 및 방직재료를 사용하여 펠트가공한 리그제품, 커지 또는 플룩가공하지 않은 것, 완제품여부불문
57.05	기타카펫 및 방직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기타 리그제품, 완제품여부불문
58.01	기용(起絨)가공한 방직물과 승용(絨絨)가공한 방직물, 그러나 세척번호58.02또는58.06에 해당하는 방직물은 제외
58.02	타월방직물 및 그와 유사한 방직물, 그러나 세척번호58.06에 해당하는 폭이 좁은(狹幅)직물은 제외;퍼지가공한 직물,그러나 세척번호57.03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
58.03	사라,그러나 세척번호58.06에 해당하는 폭이 좁은 직물은 제외
58.04	그물눈박사 및 기타 그물눈직물, 그러나 기계직물·뜨개직물·코바늘뜨개직물;두루마리·줄·조각도안의 레이스, 그러나 세척번호60.02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
58.05	“고우벌린직”·“플란더스직”·“오버션직”·“뷰바이스직” 및 유사한 양식으로 수직생산한 장식용카펫, 그리고 손자수로 꽃무늬를 새겨넣은 장식용카펫(예:퍼티포인트나 십자수), 완제품 여부불문
58.06	폭이 좁은 기계직물, 그러나 세척번호58.07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접착제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날줄은 있으나 씨줄은 없는 폭이 좁은 직물(옷감용밴드)
58.07	자수 아닌 방직재료로 만든 상표·휘장·그와 유사한제품, 필(匹)·테이프 또는 일정한 형태나 사이즈로 재단된 제품
58.08	필형태로 가공된 편대(編帶);자수 아닌 방직재료로 만들고 필형태로 가공된 장식용 벨트, 그러나 대바늘뜨개 또는 코바늘뜨개직물은 제외;장식용 술이나 장식방을 및 유사제품
58.09	기타 세척번호에 열거되지 않은 금속기계직물 및 세척번호56.05에 열거되고 금속사를 포함한 기계직물, 의류나 액세서리 또는 그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58.10	필·테이프·작은 조각도안의 자수제품

세척번호	품목
*58.11	한 겹 또는 여러 겹의 방직재료를 사용하여 기본 바탕이 되는 재료와 함께 누빔가공하여 만든 침구류방직제품
59.01	폴이나 전분을 도포하여 가공한 방직물, 서적의 표지로 사용되거나 그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트레이싱천;완제품유화용천;모자 속에 덧대는 땃땃한 천을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방직물
59.02	나일론 또는 기타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또는 접착섬유초강력사로 만든 커튼천
59.03	플라스틱의침지·도포·커버링 또는 층압에 사용되는 방직물, 그러나 세척번호 59.02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59.04	리놀륨(아마오일카펫), 재단성형여불문;직물을 바닥에 깔고 도포 또는 커버링하여 만든 바닥깔개제품, 재단성형여불문
59.05	도배용직물
59.06	고무를 사용하여 처리한 방직물, 그러나 세척번호59.02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59.07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침지·도포·커버링 처리한 방직물;무대·촬영용배경천·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미술용화포
59.09	방직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수도파이프(軟管) 및 유사한 파이프제품, 기타 보충재료를 보조재나 보호재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불문
59.10	방직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전동벨트 또는 운송용컨베이어벨트 및 벨트재료,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침지·도포·커버링 또는 층압하였거나 금속 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재질이 강화되었는지 여부는 불문
59.11	제59장주석7에 규정되고 전문기술용으로 사용되는 방직제품 및 그 제품
제60장	편직물 및 코바늘뜨개직물
61.01	편직 또는 코바늘뜨개로 만들어진 남성용코트·반코트·망토·짧은망토·모자가 달린 방한용 상의(스키복상의포함)·바람막이·바람막이상의 및 유사제품, 그러나 세척번호 61.03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61.02	편직 또는 코바늘뜨개로 만들어진 여성용코트·반코트·망토·짧은망토·모자가 달린 방한용 상의(스키복상의포함)·바람막이·바람막이상의 및 유사제품, 그러나 세척번호 61.04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61.03	편직 또는 코바늘뜨개로 만들어진 남성용양복정장·평상복상하의·재킷·바지·작업용오버올·승마복바지·반바지(수영복제외)
61.04	편직 또는 코바늘뜨개로 만들어진 여성용정장·평상복상하의·재킷·원피스·치마·치마바지·바지·작업용 오버올·승마복바지·반바지(수영복제외)
61.15	편직 또는 코바늘뜨개로 만들어진 팬티스타킹·타이트한 팬티스타킹·긴양말·짧은양말 및 기타 양말류, 정맥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양말과無外鞣鞋底 등의 신발 종류
61.16	편직 또는 코바늘뜨개로 만들어진 손가락장갑·병어리장갑·손가락노출형장갑
61.17	편직 또는 코바늘뜨개로 만들어진 기타 액세서리완제품;의류제품이나 착용액세서리에 사용되는 편직 또는 코바늘뜨개부속품

세척번호	품목
62.01	남성용코트·반코트·망토·짧은망토·모자가 달린 방한용 상의(스키복상의포함)·바람막이·바람막이상의 및 유사제품, 그러나 세척번호62.03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62.02	여성용코트·반코트·망토·짧은망토·모자가 달린 방한용 상의(스키복상의 포함)·바람막이·바람막이상의 및 유사제품, 그러나 세척번호62.04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62.03	남성용양복정장·평상복상하의·재킷·바지·작업용오버올·승마복바지·반바지(수영복 제외)
62.04	여성용정장·평상복상하의·재킷·원피스·치마·치마바지·바지·작업용오버올·승마복바지·반바지(수영복외)
62.05	남성용셔츠
62.06	여성용셔츠
62.07	남성용조끼 및 기타내의·팬티·삼각팬티·파자마·잠옷바지·목욕가운·가운 및 유사제품
62.08	여성용조끼 및 기타내의·긴속치마·속치마·삼각팬티·짧은속바지·잠옷·잠옷바지·목욕가운·가운 및 유사제품
62.09	신생아의류 및 의류용엑세서리
62.10	세척번호56.02·56.03·59.03·59.06 또는 59.07에 해당하는 직물을 사용하여 만든 의류
62.11	운동복·스키복·수영복;기타 의류
62.12	브래지어·웨스트니퍼·체형보정용속옷·바지걸이·양말걸이·양말대님 및 유사제품과 그 부속품, 편직방법불문
62.13	수건
62.14	술·스카프·목도리·면사포·베일 및 그와 유사한 제품
62.15	넥타이·나비넥타이
62.16	손가락장갑·병어리장갑·손가락이 노출되는 장갑
62.17	편직 또는 코바늘뜨개가 아닌 방법으로 만들어진 착용엑세서리와 그 부속품
63.01	담요 및 여행용담요
63.02	침구류·식탁보·세면용·주방용직물제품
63.03	커튼(휘장포함) 및 장막;발 또는 침대커튼
63.04	기타 장식용직물 제품, 그러나 세척번호94.04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63.05	화물포장용봉투
*63.06	천막 및 햇볕가리개(차양);텐트;돛;공기주입식매트리스
63.08	기계직물과실로 구성된 소매판매포장패키지제품, 부속품 구성여부 불문, 소형카펫·장식용카펫·자수로 장식된 테이블보·식탁보
64.01	밑바닥(外底)과 신발등(鞋面)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방수신발, 신등이박음질·리베팅·못질·나사·막음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신발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
64.02	밑바닥과 신발 등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기타 신발

세척번호	품목
64.03	밑바닥은 고무·플라스틱·피혁 또는 재생피혁으로 만들어지고 신발 등은 피혁으로 만들어진 신발
64.04	밑바닥은 고무·플라스틱·피혁 또는 재생피혁으로 만들어지고 신발 등은 방직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신발
64.05	기타 신발제품
65.03	세척번호65.01에 해당하는 모자(帽身)·모자주머니(帽兜)·둥근모자조각(圓帽片)을 사용하여 만든 펠트모자종류, 안감과장식물의 유무는 불문
65.04	편직모자 또는 온갖 재료의 리본을 사용하여 만든 모자종류·안감과장식물 유무는 불문
*65.05	편직이나 코바늘뜨개 또는 레이스나 기타 세밀하게 가공된 방직물을 사용하여 만든 모자제품
*65.06	안전모·고무 또는 플라스틱제모자
66.01	우산·양산(휴대용우산·파라솔 및 그와 유사한 제품포함)
67.02	조화·인조잎사귀·인조과일 및 그 부속품;조화·인조 잎사귀나 과일을 사용하여 만든 물품
*67.04	가발
*70.09	테두리가 있는 유리거울,후시경 포함
*70.18	유리구슬·모조진주·모조보석·모조보석반제품
*71.13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만든 액세서리
*71.16	진주 및 보석제품
71.17	모조액세서리
*73.23	강철제탁자·취사도구 및 기타 가정용제품과 그 부속품
*84.14	선풍기
84.15	에어컨, 팬·온도 및 습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 단독습도조절기능이 없는 에어컨 포함
*84.18	냉동고·냉장고 및 기타냉동이나 냉장설비
*84.23	저울(인체용및기타저울)
84.50	가정용 또는 세탁소용세탁기, 세탁 및 건조가 가능한 다용도 세탁기 포함
*84.52	산업용재봉기계(가정용재봉틀 제외)
*84.67	전기기계가 장착된 전동공구
*84.70	계산기
*85.01	출력37.5와트 이하의 전동기계
85.04	변압기·정지식변환기(예:정류기 및 전자감응센서
*85.09	전자기계가 장착된 가정용 전동기계(진공청소기·왁스칠기계·믹서·녹즙기 등)
*85.10	전기면도기·전기이발기·
*85.12	차량용조명 및 신호장치

세척번호	품목
85.13	에너지를 자체공급하는(예를들어 건전지·충전지·영구자성발전기를 사용하는) 휴대용전 등, 그러나 세척번호85.12에 해당하는 조명장치는 제외
*85.16	전기온수기·전열미용기구(헤어드라이어·헤어롤러 등) 및 핸드드라이어;전기다리미;기타 가정용전열기구(토스터·커피메이커 등)
85.17	유선전화·전보설비, 무선전화기·유선 반송파통신설비·유선디지털통신설비 포함;화상전화
85.18	마이크로폰 및 그 받침대;스피커, 공명상자장착여부불문;이어폰·헤드폰, 마이크로폰장착여부 불문, 마이크로폰과 1개 또는 여러 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시스템;채널확장기;우퍼시스템
*85.19	노래방기계·박스식테이프플레이어·기타 음향설비
85.20	테이프레코더 및 기타 음향녹음설비,음향출력장치장착여부불문
*85.21	비디오레코더 및 플레이어
*85.23	녹음되지 않은 공테이프(오디오·비디오)
*85.24	녹음된 테이프(오디오·비디오)
*85.25	무선전화기·무전기
*85.27	라디오·라디오카세트테이프레코더겸용·차량용수신기·鍾控라디오
*85.28	TV
85.34	인쇄회로
*85.41	다이오드·크리스털관;감광반도체부품;발광다이오드
87.12	자전거 및 기타모터를 장착하지 않은 자전거(운송용삼륜자전거포함)
*87.14	안장
90.04	시력교정용·시력보호용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안경·고글 및 유사제품
90.06	카메라(영화촬영용카메라제외);카메라플래시장치 및 램프, 그러나 세척번호85.39에 해당하는 방전램프는 제외
90.09	광학시스템을 장착하였거나 또는 접촉식감광스캔설비 및 감열식스캔설비를 갖춘 것
*90.19	안마기
*90.28	공업용전기계량기
*90.30	만능시계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기타 시계종류,초시계포함,시계제작용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제작된 것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기타 시계종류, 그러나 세척번호91.0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92.03	내부부품을 조립하여 만든 시계, 그러나 세척번호91.04에 해당하는 시계는 포함하지 않음
92.04	계기판시계 및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되는 시계
92.05	기타 시계

세척번호	품목
92.08	이미 완벽하게 조립되어 있는 시계내부부품
92.07	전기를 통해 음향을 만들거나 확대하는 악기(예를 들어 전자오르간·전자기타·전자아코디언)
*94.04	수면용안대
*94.05	세척번호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조명기구 및 조명장치, 탐조등·스포트라이트 및 그 부속품
95.02	인형
95.03	기타 완구;축소(비율에 따라)모형 및 유사한 오락용모형,동작완구여부불문,각종 지능개발용완구
*95.04	실내용게임용품
*95.05	크리스마스용품
*95.06	실외운동 및 게임용품
*95.07	낚시용품
*96.01	동물성조각재료제품
*96.02	식물성 또는 광물성조각재료제품
96.05	개인용 화장품·재봉·구두나 의류의 청결에 사용하는 여행용패키지용품
*96.06	단추
*96.07	지퍼
*96.13	필러용라이터 및 기타 라이터, 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 여부는 불문
*96.17	외부껍데기가 있는 진공병 및 기타 진공용기

주: 본 <목록>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이하 '세칙')상의 호(HS4단위, 중국은 税目號)의 순
으로 구성

* 네자리 세목 번호 중 특정한 화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자료: 비특혜원산지규칙 중 실질적변형기준에 관한 규정(검색일자: 2018. 9. 3)

부록 V. 중화인민공화국해관 기업신용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기업신용관리방법》 공포령 (해관총서제237호령)

《중화인민공화국해관 기업신용관리방법》을 2018년1월29일 해관총서사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며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2014년 10월 8일 해관총서령 제225호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 기업신용관리잠정방법》을 폐지한다.

서장 위펑쩌우

2018년 3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해관 기업신용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신용체계를 건설하고, 기업수출입신용관리제도를 건립하며, 무역안전과 편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해관심사조례」 및 기타 관련법률·행정법규 및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해관은 등기등록 또는 신고기업 및 기업 관련자 신용정보의 수집·공시, 기업신용상태의 인정·관리 등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해관은 기업신용상태에 근거하여 기업에 대하여 인증기업, 일반신용기업 및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한다. 인증기업은 고급인증기업과 일반인증기업으로 나뉜다. 해관은 성실준법 우대, 불량기업 제재의 원칙에 따라 위의 기업구분에 따른 관리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해관은 사회신용체계건설 요구에 근거하여 국가 유관부문 공동으로 신용유지에 대하여는 우대를, 신용불량에 대하여는 제재를 실시하며, 상호 정보교환·관리감독

상호인정·집행 상호협조(이하 “삼호”(三互)라 칭한다)를 추진한다.

제5조 인증기업은 중국해관의 인증을 받은 경영자(AEO)를 말한다. 중국해관은 관련 국제조약·협정 및 본 방법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 혹은 지역해관과의 AEO 상호인증 업무를 추진하며, 또한 상호인증기업에게는 관련 우대조치를 부여한다. 중국해관은 국제협력 필요성에 따라 “삼호”의 세관협력을 추진한다.

제2장 신용정보 수집 및 공시

제6조 해관은 기업의 신용정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아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기업 등록등기 또는 신고 정보 및 기업 관련인원의 기본 정보
2. 기업의 수출입 및 수출입관련 경영 정보
3. 기업 행정허가정보
4. 기업 및 관련 인원의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 정보
5. 해관과 국가 유관부문 간에 실시하는 우대와 제재 관련 정보
6. AEO 상호인증 정보
7. 기타 기업의 신용상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정보

제7조 해관은 기업신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유관기업에 대하여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기업은 매년 1월1일~6월30일에 업체의 신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해관에 《기업신용정보년도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년도에 등록등기 또는 신고기업은 다음 년도부터 해관에 《기업신용정보년도보고》를 제출한다.

제8조 기업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신용정보이상기업 명단에 등재 한다

1. 규정에 따른 《기업신용정보년도보고》를 해관에 제출하지 않는 기업
 2. 실제조사를 통하여 세관에 등록한 주소 혹은 경영 장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해관 등록 연락방법으로 기업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기업
- 신용정보이상기업 등재기간에는 기업신용등급은 상향조정할 수 없다.

본조 제1호 규정의 정황 해소 후 해관은 관련기업을 신용정보이상기업 명단에서 제외한다.

제9조 해관은 국가기밀·상업비밀 및 개인정보보호의 전제하에 아래 신용정보를 공시한다.

1. 기업이 세관에 등록등기 또는 신고한 정보
2. 해관의 신용상태에 대한 인정결과
3. 해관의 기업에 대한 행정허가 정보
4. 해관의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정보
5. 해관과 국가 유관부문간 실시한 공동우대 및 공동제재 정보
6. 해관신용정보이상기업 명단
7. 기타 법에 따라 공시하는 정보

해관의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정보의 공시기간은 5년이다.

해관은 위의 신용정보 조사방식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연인·법인 혹은 비법인조직은 해관이 공시하는 신용정보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나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해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재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자연인·법인 혹은 비법인조직이 제출한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는 경우, 해관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3장 기업신용상태 인정기준과 절차

제11조 인증기업은 해관총서가 규정한 《해관인증기업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해관인증기업기준》은 고급인증기업기준과 일반인증기업기준으로 구분된다.

제12조 기업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신용불량기업으로 분류한다.

1. 밀수범죄 또는 밀수행위가 있는 경우
2. 비보관(非報關)기업이 1년 내에 해관관리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전연도 세관신고

서, 출입경신고목록, 출입경운수적하목록 등 관련 서류 제출총수의 1,000분의1을 초과하고 해관 행정처벌금액 누계가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보관(報關)기업이 1년 내에 해관관리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전연도 세관신고서, 출입경신고목록, 출입경운수적하목록 등 관련 서류 제출총수의 1만분의 5를 초과하고, 해관 행정처벌금액 누계가 3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체납하거나 납부할 벌금액을 미납한 경우
4. 이 방법 제8조 제2관 제2항에 해당하여 해관에 의해 신용정보이상기업으로 등재되어 90일을 초과한 경우
5. 해관이나 기타 기업의 명의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6. 해관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신용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해관관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저해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8. 형사범죄로 국가신용불량공동제재명단에 등재하는 경우
9.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년도에 등록등기 또는 신고하는 비보관/보관업체가 1년 내에 해관의 관리감독규정을 위반하여, 해관의 행정처벌금액 누계가 각각 100만위안, 3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해관은 신용불량기업으로 분류한다.

제13조 업체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일반신용기업으로 분류한다.

1. 해관에 처음으로 등록등기 또는 신고하는 기업
2. 인증기업이 《해관인증기업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본 방법 제12조의 규정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해관이 신용불량기업으로 분류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본 방법 제12조의 규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기업은 인증기업이 되려면 해관에 《인증기업관리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관은 《해관인증기업기준》에 의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한다.

제15조 해관은 《인증기업관리적용신청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내에 《해관기업인증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상황의 경우 해관의 인증기한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해관은 인증을 통과한 기업에게는 《인증기업증서》를 교부한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업체에게는 《인증기업관리부적용결정서》를 교부한다. 《인증기업증서》《인증기업관리부적용결정서》는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인증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기업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1년 내에 해관에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 인증 신청기간에 기업이 밀수로 입안조사 혹은 수사를 받는 경우에 해관은 해당기업의 인증을 종료하여야 하며, 해관관리감독규정을 위반하여 입안조사를 받는 경우에 해관은 인증을 종료할 수 있다.

인증을 신청하는 기간에 기업가 해관조사, 검사를 받는 경우에 해관은 해당 기업의 인증을 중단할 수 있고, 중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인증을 중단한다.

제18조 해관은 고급인증기업에 대하여 3년에 1회씩 재인증을 하며, 일반인증기업에 대하여는 부정기로 재인증을 한다.

재인증 전에, 해관은 기업에 통지하여야 하고, 기업인증절차를 참조하여 재인증을 진행한다. 재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관은 《기업신용등급인정결정서》를 교부하며, 기업의 신용등급을 조정한다. 《기업신용등급인정결정서》는 업체에 송달해야 하고, 송달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재인증기간에 기업이 인증기업관리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인증기업이 해관에 의해 일반신용기업으로 조정되면 1년 내에 인증기업 신청을 할 수 없다. 인정기업이 해관에 의해 신용불량기업으로 조정되면 2년 내에 일반신용기업 신청을 할 수 없다.

고급인증기업이 해관에 의해 일반인증기업으로 조정되면, 1년 내에 고급인증기업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 해관에 의해 신용불량기업으로 분류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본 방법 제12조의 규정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신용기업으로 조정한다.

신용불량기업이 일반신용기업으로 조정되어 1년 이상 되면, 해관에 인증기업 신청

을 할 수 있다.

제21조 기업이 분할·합병의 경우에, 해관은 기업신용상황 인정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조정한다.

1. 기업이 존속분할 하여, 분할 후 존속하는 기업이 분할 전 기업의 주요 권리무를 승계하는 경우, 분할 전 기업의 신용상태 분류결과를 적용하고, 그 외의 분할기업은 최초로 등록등기 또는 신고하는 기업으로 간주한다.
2. 기업이 해산분할 하는 경우, 분할기업은 최초로 등록등기 또는 신고하는 기업으로 간주한다.
3. 기업이 흡수합병 하는 경우, 합병기업은 해관이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의 신용상태 분류결과를 적용한다.
4. 기업이 신설합병하는 경우, 합병기업은 최초로 등록등기 또는 신고하는 기업으로 간주한다.

제22조 해관이나 기업은 사회중개기구에 위탁하여 기업인증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결론 낼 수 있다.

제4장 관리조치

제23조 일반인증기업은 아래 관리조치를 적용한다.

1. 수출입화물의 평균검사율은 일반신용기업 평균검사율의 50% 이하
2. 수출입화물의 통관수속 우선 처리
3.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총액 또는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담보금액으로 담보 가능
4.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기타 관리조치

제24조 고급인증업체는 일반인증업체의 관리조치를 적용하고 추가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1. 수출입화물의 평균검사율은 일반신용기업평균검사율의 20% 이하
2. 담보면제 신청할 수 있음

3. 기업에 대한 조사, 검사 빈도 축소
4. 수출화물 통관 사전신고 가능
5. 기업을 위한 협조요원 배치
6. AEO 인증국가 혹은 지역 간의 통관우대조치 적용
7. 국가 유관부문 간에 실행하는 신용기업 우대조치 적용
8. 불가항력으로 중단된 국제무역의 경우 회복 이후 우선 통관
9.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기타 관리조치

제25조 신용불량기업은 아래와 같은 관리조치를 적용한다.

1. 수출입화물 평균검사율 80% 이상
2.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호이스팅 비용, 이동비용, 보관비용 등 비면제
3. 일괄징수제도 비적용
4.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샘플/사진 보관 통관제도 비적용
5. 가공무역 경영기업은 전액담보로 진행
6. 기업에 대한 조사, 검사의 빈도 증가
7. 국가 유관부문 간에 신용불량업체 연합제재
8.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기타 관리조치

제26조 고급인증기업에 적용되는 관리조치는 일반인증기업보다 우선한다.

기업신용상태 분류결과 불일치로 인하여, 적용하는 관리조치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낮은 기준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27조 인증기업이 밀수혐의로 입안조사 혹은 수사를 받는 경우에 해관은 상응하는 관리조치를 중단하여야 하며, 인증기업이 해관관리감독규정을 위반하여 입안조사를 받는 경우에 상응하는 관리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해관은 상응하는 관리조치를 중단한 경우에는 일반신용기업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28조 기업이 본 방법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하 조정되는 경우, 상응하는 관리조치를 중단하고 조정 후의 신용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5장 부칙

제29조 밀수범죄를 기업신용상태를 판단하는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관련 법률문서 효력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밀수행위, 해관관리감독규정 위반을 기업 신용상태를 판단하는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해관의 행정처벌결정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업체가 스스로 신고하고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처벌하는 경우에 해관은 이를 기업 신용상태 인증의 참고내용으로 삼지 않는다.

제30조 본 방법의 용어

(기업관련인원) 기업법정대표, 주요책임자, 재무책임자, 통관책임자 등 관리인원

(처벌금액) 해관관리감독규정을 위반하여 처벌하는 벌금과 몰수한 불법소득 또는 몰수한 화물이나 물품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합

(채납금액) 세금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수출입화물이나 물품의 관세 및 수입관련 해관 대리징수 세액의 총액으로써, 해관 관리감독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 이외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포함

(미납벌금) 해관행정처벌결정서에 규정하는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해관 벌금 및 몰수한 불법소득과 밀수화물이나 물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일) 자연일

(1년) 연속 12개월

(년도) 양력 1년

(이상),(이하) 본수 포함

(인증된 경영자 (AEO))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화물국제유통에 참여하며, 본 방법에 규정하는 조건 및 《해관인증기업기준》에 부합하고 해관인증을 받는 업체

제31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책임은 해관총서에 있다.

제32조 본 방법은 201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2014년 10월 8일에 발표한 「해관총서령」 제225호 《중화인민공화국해관기업신용관리잠행방법》을 폐지한다.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중국 편 -

발 행 2018년 12월 31일
저 자 정재현 · 김다량 · 박지우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주)계문사
인 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ISBN 978-89-8191-948-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9 3320

9 788981 919481

ISBN 978-89-8191-948-1